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Measures of Improving the Repair System
for Value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박일향 Park, Ilhyang
이규철 Lee, Geauchul
방보람 Bang, Boram

(a u r i

기본연구보고서 2023-8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Measures of Improving the Repair System for Value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지은이 박일향, 이규철, 방보람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3년 10월 26일, 발행: 2023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425-3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박일향 부연구위원
연구진	이규철 연구위원 방보람 연구원
외부연구진	허유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채우리 뉴캐슬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송양은 조사원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 고주환 새한티엠씨 대표 김기수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미진 이소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이소건축사사무소 부소장 김종현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권기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나창순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송석기 군산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신안준 충청대학교 건축과 교수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상희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위순선 부산근현대역사관 전시TF팀장 허미연 부산근현대역사관 학예연구사 황진하 별터건축사사무소 대표

활용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정체성 형성과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수리 과정에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 및 적극적 활용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관리와 수리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지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수리체계는 미흡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복잡화와 세계유산 제도에의 대응을 위해,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개편한 기본법 및 분야별 개별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행 문화재 체계는 「문화재보호법」 하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정의되나, 기본법 하에는 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어 2024년 시행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보존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2023년 9월 제정 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에 따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 마련 연구 필요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존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환되는 현재 상황에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적합한 수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수리체계의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리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 파악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구체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기술개발, 성능기준 등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관련 개발연구에 앞서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방향 연구의 선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는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한정하며, 보수, 복원, 정비, 손상 방지 등 문화재 수리 행위의 전체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서 ‘수리체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수리체계의 각 단계별로 참여 주체, 수행 업무, 수행 방법, 근거 기준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미비나 적용의 배제로 발생하는 쟁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가치’는 해당 건축물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구조, 재료, 의장 등 건축요소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여 그 한계와 시사점을 파악하고,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의 현황 파악을 거쳐, 수리 사례의 심층조사를 통해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크게 구성된다.

우선 지정문화재와의 비교를 통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수리체계를 기획, 실측설계, 기획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등의 수리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 등 수립에 의해 그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건축법」 적용 예외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법」에 의한 독자적인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하에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국가등록문화재는 활용을 전제로 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보존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수리체계의 미비점이 확인된다. 기획 단계에서는 보존가치의 확인 및 점검의 절차가 미비하며,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으로 물리적 변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존가치가 건축물 내부에 위치하거나 현상변경의 범위가 외관 면적의 1/4 미만인 경우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측설계·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국고보조사업 이외 수리의 관리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근대사적과 국가등록문화재 등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대해 특화된 수리기술 연구가 미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와 비교하여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와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영국의 등재건축물 수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제도는 등록서류

에 기재된 가치요소가 변경되는 것을 현상변경의 기준에 포함하며, 영국의 등재건축물 제도는 등재 시 인정받은 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는지의 여부로 현상변경의 승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등록·등재 단계에서부터 보존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보존관리, 환경보전, 방재방법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이 가지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해당 건축문화유산이 건축물로서 활용되며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리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와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의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문화재 내진보강의 초기 사례에 해당한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근대사적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첫 번째 심의 대상이라는 대표성을 가진다.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수리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보존·활용을 위한 장기계획의 부재,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빈번한 발생, 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라는 쟁점을 도출했다. 또한 실측설계·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부재, 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이해도 저하, 특히 적용의 배제라는 총 11개의 쟁점을 확인했다. 또한 구 군산세관 본관의 수리에서는 실측설계 단계에서 과업 범위의 확장, 수리기술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시공 단계에서는 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을 주요 쟁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 공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설계변경의 발생, 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라는 쟁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두 사례의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단계별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수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관리, 가치요소별 평가 등급화, 내

진설계 등 현행법 적용에 대한 기준 마련, 근대건축 재료 및 기술 연구, 업무절차와 내용 숙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앞서 관련 연구의 선행이 요구되는 중장기적 과제로 판단된다. 한편 수리체계 단계별 주요 과제로는 기획 단계에서 조사 및 계획 단계 의무화, 공사유형별 추진절차 구분 적용, 실측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전문성(책임) 강화, 시공 단계에서 시공의 전문성(책임) 강화, 실측설계·시공 단계에서 수리기술위원회 역할의 확장과 강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으며, 관련 연구의 선행, 수리체계 단계에서의 절차적 보완, 정책의 실시, 제도의 개선 등 과제의 성격을 분류하고, 단기적인 절차적 보완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 도입되는 국가유산 체제하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대안 1), 새로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체계의 규정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대안 2), 근현대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대안 3)을 검토하여 제정 및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으로서 「국가유산수리법」의 개정을 채택했다. 또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절차적 개선 방안으로는 기획 단계에서 수리공사의 조사 및 계획 단계 의무화, 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전문성 강화, 시공 단계에서 수리이력 관리의 체계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과, 건축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리방안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지향점을 반영한 수리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원인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현행 수리체계의 쟁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특성

1.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	13
1)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개요	13
2) 단계별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17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28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개요	28
2) 근대사적 수리체계	29
3)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	30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	39
1)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미비	39
2) 근현대 건축에 특화된 수리기술 연구의 미비	44

제3장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1.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와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수리체계	49
1)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체계	49
2)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수리체계	55
2. 영국의 등재건축물 수리체계	61
1) 등재건축물 제도의 개요	61
2) 등재건축물 수리체계의 주요 특징	62
3.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시사점	72

제4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 심층조사를 통한 쟁점 도출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의 현황	73
1) 조사 개요	73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등록·지정 현황	76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현황	79
4) 소결	94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의 심층조사	95
1) 심층조사 개요	95
2)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97
3)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124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과제	134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134
2)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주요 과제의 선정	150

제5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53
1)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153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61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방안	166
1)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	166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절차 개선	180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8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0

참고문헌

SUMMARY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법률로 관리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분류와 연구의 범위	6
[표 1-2] 국가등록문화재 및 사적의 등록·지정 기준	6
[표 1-3] 「한국원칙」에 따른 보존 관련 용어의 정의	8
[표 1-4] 주요 선행연구	11
[표 2-1]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관련 주요 법령·지침·기준	14
[표 2-2]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기반 구축 관련 주요 법령 내용	16
[표 2-3] 제정 및 현행 「문화재수리 업무지침」의 구성	17
[표 2-4] 지정문화재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 관련 사항	22
[표 2-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업무 범위	24
[표 2-6] 단계별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정리	27
[표 2-7]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관련 주요 법령·지침·기준	28
[표 2-8] 문화재 기본계획(2022-2026) 내 등록문화재 관련 추진 방안	30
[표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내 근대문화재 관련 추진 방안	31
[표 2-10]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수록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2
[표 2-11]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설계승인 및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허가 관련 사항	34
[표 2-12] 단계별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정리	37
[표 2-13] 2022년 정기조사의 구성	42
[표 2-14]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서술의 사례	42
[표 2-15] 현행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	44
[표 2-16]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관련 법률에서의 법령 특례 현황	45
[표 2-17]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구성	46
[표 3-1] 건립시기별 유형문화재(건조물)의 분포(2023.05 기준)	50
[표 3-2]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경비 보조사업의 종류	52
[표 3-3]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보존활용계획의 내용 구성	53
[표 3-4]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	54
[표 3-5]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보존활용계획의 내용 구성(교토시 사례)	57
[표 3-6] 「보존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지침(비목조건축물관)」의 주요 내용(교토시 사례)	58
[표 3-7] 영국의 지정문화유산 유형	61
[표 3-8] 등재건축물의 현상변경 관련 근거법과 그 내용(해당 부분 발췌)	63
[표 3-9] 등재건축물의 전체, 부분 철거 시 보고를 받는 국가어메니티소사이어티	65
[표 3-10] 등재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66
[표 3-11] 보존·수리 작업이 필요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지방 당국의 단계별 조치	68
[표 3-12] 히스토리컬 잉글랜드의 가이드선 사례	69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1] 조사 자료의 목록	75
[표 4-2] 유형(대분류)별 국가등록문화재의 개소	75
[표 4-3] 용도시설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76
[표 4-4] 구조양식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76
[표 4-5] 지역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76
[표 4-6] 소유/관리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77
[표 4-7] 용도시설별 근대사적 현황	77
[표 4-8] 구조양식별 근대사적 현황	78
[표 4-9] 지역별 근대사적 현황	78
[표 4-10] 소유/관리구분별 근대사적 현황	78
[표 4-11] 유형(대분류)별 국가등록문화재의 개소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개소	79
[표 4-12] 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0
[표 4-13] 연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80
[표 4-14] 용도시설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1
[표 4-15] 지역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2
[표 4-16] 건립시대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수리현황	82
[표 4-17] 구조양식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수리현황	83
[표 4-18]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수	83
[표 4-19]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층수별 개소	83
[표 4-20] 용도시설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84
[표 4-21] 지역별 근대사적 수리현황	84
[표 4-22] 건립시대 및 구조양식별 근대사적 수리현황	85
[표 4-23]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근대사적의 연면적	85
[표 4-24] 등록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6
[표 4-25] 소유/관리 주체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6
[표 4-26] 지정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7
[표 4-27] 소유·관리주체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87
[표 4-28] 2017~2023년 사업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8
[표 4-29] 사업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89
[표 4-30] 수리사업의 세부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9
[표 4-31] 수리사업의 세부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90
[표 4-32]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별 국고보조사업 추진 횟수	90
[표 4-33] 국고보조사업 6회 이상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90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34] 국고보조사업 예산 20억 원 이상 투입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91
[표 4-35] 2017-2023년 사업구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92
[표 4-36] 사업구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92
[표 4-37] 근대사적별 국고보조사업 추진 횟수	93
[표 4-38] 국고보조사업 5회 이상 추진한 근대사적	93
[표 4-39] 국고보조사업 예산 10억 원 이상 투입된 근대사적	93
[표 4-40] 주요 쟁점 및 과제 도출의 방법	95
[표 4-41] 심층조사 일정	96
[표 4-42] 수리 담당업체 심층면담 여부	96
[표 4-43]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단계별 주요 수리공사 내역	98
[표 4-44] 구조보강공사를 위해 검토된 대안 및 최종안	101
[표 4-45] 건물 활용을 위해 검토된 대안 및 최종안	102
[표 4-46] 공사 추진 일정	106
[표 4-47] 건축물 현황과 공사 계획 및 현상변경 허가 검토 대상	109
[표 4-48]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 관련 쟁점	112
[표 4-49] 공사 설계변경 현황	117
[표 4-50]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지침 예시	121
[표 4-51] 구 군산세관 주요 수리공사 내역	125
[표 4-52] 구 군산세관 본관 정비대상 현황	126
[표 4-53] 단계별 정비계획	126
[표 4-54] 구 군산세관 본관 수리 관련 쟁점	131
[표 4-55]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134
[표 4-56] 공사 유형별 수리체계 구분 적용(안)	139
[표 4-57] 현행법 적용에 따라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형 사례	141
[표 4-58] 등록문화재 수리 자격 제한에 대한 문화재수리업자 의견	143
[표 4-59]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재료 및 기술 관련 의견	148
[표 4-60] 수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안)	150
[표 4-61] 수리체계 단계별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안)	152
[표 5-1] 「근현대문화유산법」의 구성	159
[표 5-2] 문화유산의 유형과 등급	162
[표 5-3] 건축요소별 보존의 수준 예시	164
[표 5-4]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개선 방향	166
[표 5-5]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 방안	167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5-6] 「국가유산수리법」의 구성	170
[표 5-7] 대안 1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안	173
[표 5-8] 대안 1의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174
[표 5-9] 대안 2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안	177
[표 5-10] 대안 3의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 구성안	17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개념	8
[그림 1-2] 「한국원칙」에 따른 ‘보존’의 개념	8
[그림 1-3] 연구흐름도	12
[그림 2-1] 단계별 문화재 수리체계 현황	38
[그림 3-1] 통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의 기준	51
[그림 3-2]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유지 조치	51
[그림 3-3]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54
[그림 3-4]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례」 정비를 촉진하는 대상	55
[그림 3-5] 조례 제정에서 보존건축물의 활용까지의 절차	56
[그림 3-6] 보존활용계획 작성 과정 (교토시 사례)	57
[그림 3-7]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등재건축물 승인 절차	64
[그림 3-8] 지방계획당국의 외부(상위) 기관 보고·자문 시스템	64
[그림 4-1] 등록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77
[그림 4-2] 지정연도별 근대사적 현황	78
[그림 4-3] 교부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80
[그림 4-4] 교부연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80
[그림 4-5] 정밀실측조사 시 건물 전경	97
[그림 4-6] 1층 평면도(현황)	100
[그림 4-7] 평면도(복원안)	100
[그림 4-8] 층별 활용계획	102
[그림 4-9] 기둥 및 보 보수·보강공사	104
[그림 4-10] 내진보강공사	104
[그림 4-11] 1층 구조보강 평면도	105
[그림 4-12] 기초 보강공사	105
[그림 4-13] 구조보강 공사 완료 후 내부 전경	106
[그림 4-14]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내부공간 사진기록물	108
[그림 4-15] 공간계획	108
[그림 4-16] 창호 복원 및 엘리베이터·계단실 증축공사	110
[그림 4-17] 정면부의 타일 교체면적(붉은색 상자 표기)	111
[그림 4-18] 외부보수공사 후 외관	111
[그림 4-19] 기록화조사 수행 시 건물 전경	124
[그림 4-20] 구 군산세관 본관 현황도면	127
[그림 4-21] 구 군산세관 본관 지붕	128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22] 교체부재 선정 및 개판 조립	130
[그림 4-23] 기존 창호 및 신규 창호(배면)	130
[그림 4-24] 내진보강 수리보고서의 사례	140
[그림 4-25] 책임설계제도의 개념도	146
[그림 5-1] 문화유산 법체계 개편(안)	154
[그림 5-2] 현행 문화재 체계	155
[그림 5-3] 개편 예정의 국가유산 체계	155
[그림 5-4] 문화재관리 시스템 개편	183
[그림 5-5] 문화재 행정 목표시스템	183
[그림 5-6] 단계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안	18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흐름도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대상으로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중요성 증대

문화재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복잡화와 세계유산 제도에의 대응을 위해,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개편한 기본법 및 분야별 개별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행 문화재 체계는 「문화재보호법」 하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정의되나, 기본법 하에는 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어 2024년 시행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보존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에 따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 마련 연구 필요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점 발생

- 현대적 활용을 위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수요 증가

문화재청은 “밖에서 바라보면 19세기 고풍스러움이! 안으로 들어가면 21세기의 최첨단 시설이!” 등 홍보문구와 학교·창고 등을 박물관·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를 들어, 등록문화재 활용이 소유자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랜드마크·문화관광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부각해왔다.¹⁾ 활용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정체성 형성과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20170904, 2018.12)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발전의 중요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문화경관·산업경관·역사도시경관 및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 세계유산의 보존 대상이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에서는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형보존 원칙의 지정문화재 중심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 완화된 보호조치의 등록문화재 제도의 확장 한계, 긴급 보호조치 규정 미비 등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측면 등,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 상황을 보완,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의 기본 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활용을 전제로 한 등록문화재 제도

현재 법적으로 등록·관리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중 근대사적,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우수건축자산 등이 있다. 이밖에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관리·활용하는 문화유산도 다수 존재한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등록 시 원형유지 및 희소성의 가치를 충족해야 하며 법적으로 소유자·관리자가 원형 보존에 노력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지만, 원형 보존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하지 않아 멸실·훼손 방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편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진흥법으로서 규제 완화 등 지원의 근거가 되나, 건축물 가치 훼손을 막는 법적 수단은 되지 못한다.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

등록문화재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원형 훼손의 원인 중 하나이다. 노후 건축물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건축법」 및 관계법령 적용을 받게 되며, 내진설계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화재안전성능 등 최근 강화된 각종 건축기준에 대해서도 충족해야 한다. 건축허가 기준 충족 및 현대적 활용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등록문화재의 수리 과정에서 원형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과도한 구조

1) 문화재청. (2008). 근대문화유산을 지키는 당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문화재청, pp.16-19.

보강은 소유자가 등록문화재의 수리를 포기하고 철거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에서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리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문화재 중 근대사적 등은 「문화재수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법」은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원형이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었지만, 「문화재수리법」 및 규정, 지침들은 전통 건축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왔기 때문에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원형 유지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문화재청 내부적으로도 국가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등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수리법」을 개정하여 2024년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등록문화재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도 등록문화재의 수리에 대한 규정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유산 체계에서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위치 정립과 수리체계 적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 및 적극적 활용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관리와 수리에 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지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수리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수리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 파악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구체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료, 기술개발, 성능기준 등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관련 개발연구에 앞서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방향 연구의 선행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특성 파악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 검토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 파악
-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시사점 도출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쟁점 도출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의 현황 파악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의 심층조사를 통한 쟁점 파악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주요 쟁점과 과제의 도출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제안

-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도출
- 수리체계 개선 방안 제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

이 연구에서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라는 용어에서 착안한 조어(造語)이다. 해당 법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은 제2조(정의)에 따라 “개항기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근현대부동산유산(건조물, 시설물, 시설, 무덤, 터, 가로, 경관 등) 및 근현대동산유산”으로 폭넓게 정의된다.²⁾ 본 연구에서는 법안의 정의를 따르되, 논의의 대상을 개항기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문화유산 중 건축물로 한정하기 위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등록’된 등록문화유산(현행 등록문화재)를 실질적 관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근현대 문화유산을 법안의 제2조(정의)에서 설명하는 시간적 범위에 따라 생각해보면, 근현대 문화유산에는 등록문화재 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중 근대사적, 시·도지정문화재 중 일부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³⁾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우수건축자산 역시 그 안에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수리 과정에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수리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으로 관리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가운데, 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구축하고 매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수리사업을 지원해온 현행 문화재 제도하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존 수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현행 문화재 제도하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크게 지정과 등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시 지정·등록의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등록 및 시·도지정·등록으로 나뉜다. 이

2) 여기에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가리킨다.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05.16. 제정) 제3조(정의))

3) ‘근대사적’은 문화재청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법적으로는 ‘사적’으로 분류된다. 기념물(절터, 옛 무덤, 성터, 궁터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 중요한 것이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적의 정의와는 별개로 1963년에 서울 독립문(1898년 건립)의 지정을 시작으로, 개항기 전후부터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조물이 2020년까지 총 41개의 근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 수급에 용이한 동시에 제도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시·도지정·등록문화재는 최근 지방분권 시대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업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한계로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표 1-1] 법률로 관리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분류와 연구의 범위

지정·등록 주체	문화재보호법		한옥등건축자산법		
	지정	건수 등록	건수 등록	건수	
국가	근대사적	41 국가등록문화재	491 -		
지자체	시·도지정문화재	미상 시·도등록문화재	66 우수건축자산	16	
문화재수리법 적용 여부	적용	미적용	미적용		

※ 시·도지정문화재 중 건립시기를 기준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통계는 부재함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 (2021.07.31.),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75369&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a%b7%bc%eb%8c%80+%ec%82%ac%ec%a0%81&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1.06.); 문화재청, (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2023.06.30.),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86256&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b%93%b1%eb%a1%9d%eb%ac%b8%ed%99%94%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7.06.); 건축문화자산센터, (2023),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건축문화자산센터 내부자료, p.64.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 다루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는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를 의미한다. 근대사적은 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수리법」을 통해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를 따르는 반면, 국가등록문화재는 그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각각의 수리체계 및 수리 사례의 분석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하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가치’의 정의

국가등록문화재 및 사적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예술적, 지역적 가치, 원형유지 및 희소성 등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여 지정·등록된다. 이는 해당 문화재가 지녀야 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설명이 다소 포괄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를 해당 건축물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구조, 재료, 의장 등 건축요소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국가등록문화재 및 사적의 등록·지정 기준

분류	국가등록문화재	사적
역사적 가치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

분류	국가등록문화재	사적
	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
예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지역적 가치	·지역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출처: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제4조(공통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 ‘수리’의 정의와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수리’는 현행 「문화재수리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재수리’를 따른다. 이 법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의한다.⁴⁾ 하지만 법에서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한 정의는, 향후 문화재청의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하 「한국원칙」)을 참조할 수 있다.⁵⁾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를 ‘보수’, ‘복원’, ‘정비’,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정의한 데 비해, 「한국원칙」은 ‘보존’이라는 상위개념하에 ‘수리’ 및 ‘복원’, ‘정비’ ‘손상 방지’, ‘유지관리’ 등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체계인 「문화재수리법」의 정의를 따라 ‘수리’를 ‘보수’, ‘복원’, ‘정비’,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넓게 이해하고자 하며, 각 행위의 정의는 「한국원칙」을 따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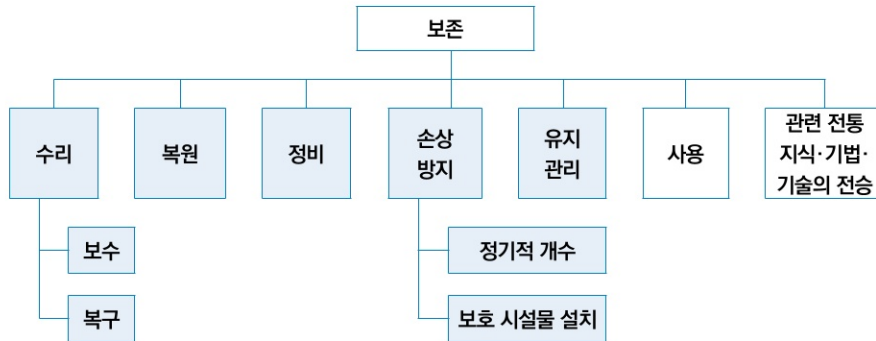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2조(정의)

5) 문화재청이 ICOMOS 한국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2022년 12월에 공동으로 선포한 「한국원칙」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실천기준과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용어의 정의, 보존 원칙, 가치의 이해와 적용, 보존 과정, 보존 조치, 관리와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2022).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선포식 개최. 12월 20일 보도자료)



[그림 1-1]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개념

출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2조(정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1-2] 「한국원칙」에 따른 ‘보존’의 개념

출처: 문화재청.(2022).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심화 연구. 문화재청, p.124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표 1-3] 「한국원칙」에 따른 보존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보존	문화유산이 지속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돌보는 모든 행위
수리	균열, 손상, 처짐 등 물리적 변형을 회복하고 약화된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고증을 바탕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조치
보수	문화유산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조치
복구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
복원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물리적 실체가 거의 소실된 문화유산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
정비	사용에 적합하도록 문화유산에 변화를 주는 조치 -문화유산에 새로운 전시 또는 안내시설, 주차장, 탐방로, 경관조명 등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것 -문화유산의 구성요소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
손상 방지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정기적 개수	내구연한이 짧은 구성체가 훼손되어 다른 중요한 구성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개입하는 조치
보호 시설물 설치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각, 소방, 전기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조치
유지관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지속되도록 일상적으로 돌보는 행위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보호 시설물의 점검·청소, 잔디 깎기 등 일상 관리 행위

출처: 문화재청.(2022).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심화 연구. 문화재청, pp.124~12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수리체계’의 정의

본 연구에서 ‘수리체계’는 보수, 복원, 정비, 손상 방지 등 문화재 수리 행위의 전체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수리체계는 기획부터 실측설계, 시공까지 단계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각 단계의 수리체계는 참여 주체, 수행 업무, 수행 방법,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기준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수리의 단계별로 수리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하며, 제도 등 근거 기준의 미비나 적용 배제로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분야는 ①국가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연구(1)와, 건폐율·용적률 등 특례(2), 구조 안전관리(3-4), 수리체계(5) 등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로 구분된다. ②국가등록문화재 정비방안 마련 연구로는,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6)와 교육시설 국가등록문화재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비방안 연구(7)가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가치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상충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고유한 특성을 연구의 배경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중에 ①의 (1)은 세부적인 보존유형과 보존범위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존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해, 보존방식별 수리 사례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①의 (1)-(3)은 제도 관련 문헌조사 및 소수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1)은 동결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와 비교를 통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방안, (2)는 등록문화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대책, (3)은 등록문화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 (4)는 문화재 135건의 보고서를 통해 근현대 문화재 전반의 모니터링 및 7개 사례의 계측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구조 안전진단과 관리에 한정된다.

한편 ①의 (5)는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법령, 수리체계, 수리기술,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수리체계의 개선분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을 대비하여 수리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 등록문화재 정비방안 마련 연구

정비방안 마련 연구로서 ②의 (6)은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화재 취약성을 밝히고, 화재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방재설비 가이드라인과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7)은 교육시설 등록문화재의 현황을 조사하고 단열재, 창호, 인체유해재료, 열원·급탕·조명·환기설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①과 달리 ②는 등록문화재 전반의 사례조사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이 화재에 치중한 방재와 에너지 효율로 한정되어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과, 건축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리 방안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지향점을 반영한 수리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원인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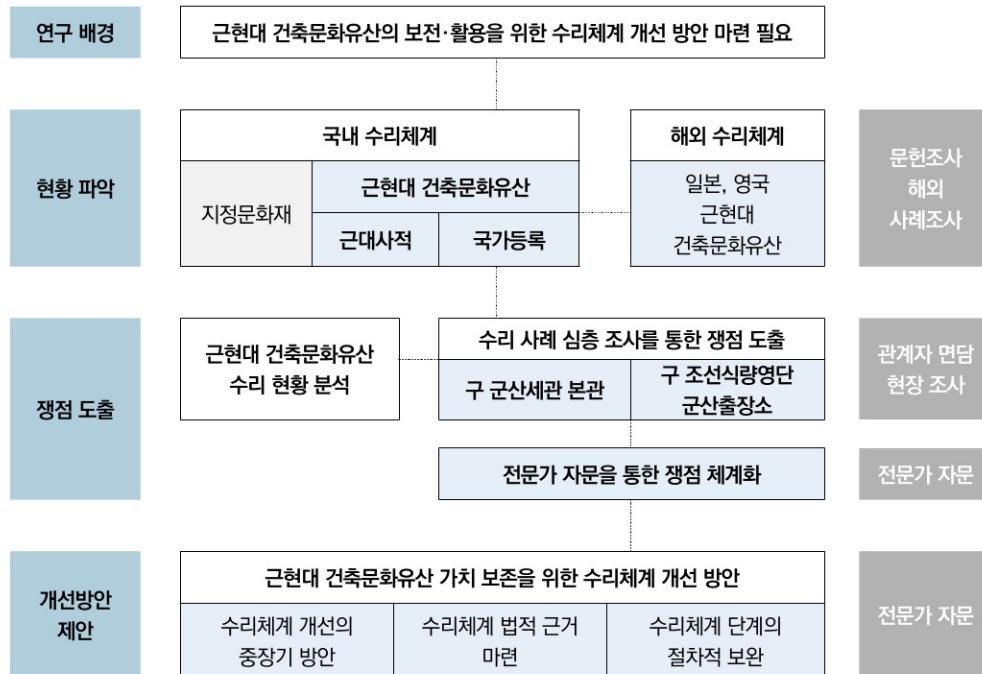
[표 1-4] 주요 선행연구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 -과제명: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신웅주 외(2014) -연구목적: 등록문화재 보존 제도 및 방법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문헌조사	-등록문화재 이론 고찰 -등록문화재 보존 방안 제시
	2 -과제명: 등록문화재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사)도코모모코리아(2006) -연구목적: 민간소유 등록문화재 증진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마련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록문화재 인센티브 비교 시뮬레이션	-인센티브제도 분석 및 기존 특례 분석을 통한 방향 설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검토 -건폐율·용적률 특례규정 적용을 위한 지자체 문화재 보호조례(안) 제시
	3 -과제명: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활용·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 -연구자(년도):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15) -연구목적: 등록문화재 제도의 운영성과의 종합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국내 안전관리 사례 조사	-등록문화재 제도 종합 모니터링 -등록문화재 제도 분석 및 평가 -등록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수립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 전략 및 추진 방안
	4 -과제명: 근대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년도):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16) -연구목적: 근대건축문화재 구조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방안 수립	-문헌조사 -국내사례 현장조사 -해외사례 조사	-근대건축문화재의 현황과 특징 -근대건축문화재 안전관리 제도 분석 -근대건축문화재 구조안전관리 사례 종합 모니터링 -근대건축문화재 구조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5 -과제명: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연구자(년도):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2018) -연구목적: 등록문화재 수리제도 및 수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문헌조사 -국내사례 현장조사 -해외사례 조사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제도 및 수리체계 현황 분석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방향 및 로드맵 제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록문화재 정비방안 마련 연구	1 -과제명: 등록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 보고서 -연구자(년도): (사)도코모코리아(2013) -연구목적: 문화재보호법 상 재해방지 규정이 없는 등록문화재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문헌조사 -국내사례 현장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현황분석 -방재시스템의 기본요소 및 방재체계의 해외사례 분석 -방재구상안 및 방재계획안 제시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계획 제시
	2 -과제명: 국가등록문화재(교육시설 분야) 보존·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연구자(년도):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2021) -연구목적: 국가등록문화재(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친환경 재료 적용 방안, 문화재 및 경관 보존 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교육시설 리모델링 정비 사례, 그린리모델링 정비 사례, 활용 및 운영방안 사례)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국가등록문화재(교육시설) 사용 실태 조사 -교육시설 사례조사 및 종합검토 -문화재 적용시 문제점 파악 -문화재에 적합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친환경 재료,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4. 연구흐름도



[그림 1-3] 연구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특성

1.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
-

1.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

1)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개요

-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

문화재에 관한 모든 사항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왔다.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되었는데,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 확보, 품질 향상 및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0년에 문화재 수리에 관한 별도 법률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⁶⁾ 이에 따라 문화재 지정, 관리 및 보호,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이밖에 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법」에 의해 규정되었다.⁷⁾ 이후 「문화재수리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각종 규정, 지침, 기준 등이 수립되어 문화재 수리체계의 근거가 되고 있다.

6)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공사에서 혼선이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9호, 2010.02.04. 제정) 제정·개정이유)

7) 「문화재수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수리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표 2-1]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관련 주요 법령·지침·기준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정 관리 보호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지정문화재및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수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문화재수리 운영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지침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문화재수리 감리대가기준 ·문화재수리 설계대가기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타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출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리기술 법령·지침·기준. <https://www.kofta.org/technique/laws.jsp> (검색일: 2023.02.06.)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런데 「문화재수리법」의 적용 대상은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 포함)로 한정된다. 따라서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등 등록문화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화재수리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일부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는 「건축법」 적용 제외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지정문화재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문화재와 「건축법」 간의 이러한 관계 설정은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이루어졌다. 1962년에는 ‘국보,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미술품’이 적용 제외되었으며, 1984년부터 ‘지정문화재’ 및 ‘가 지정문화재’(현재의 임시 지정문화재)까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다.⁸⁾ 따라서 지정문화재 수리는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제외되며, 「문화재수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건축법」(법률 제18935호, 2022.06.10. 일부개정) (일부 발췌)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기반 구축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법」에는 문화재 관리 및 수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5년마다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계획’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자원 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문화재 기본계획은 2002년에 처음 수립되었으며, 현재 2022-2026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는 5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법」을 근거로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은 문화재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품질 확보 대책,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은 2014년에 처음 수립되었으며, 현재 2019-2023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는 2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기본계획 외에도 「문화재수리법」에는 계획, 기준, 기술 관리와 관련된 문화재청

8)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건축법」(법률 제3766호, 1984.12.31. 일부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문화재청장은 전통재료의 수급과 관리를 위해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등 전통재료에 대한 사용현황, 예상 수요량, 공급량, 확보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이하 「문화재수리 업무지침」),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각종 지침 및 기준이 수립되었다. 또한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을 위하여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시범사업, 교육 및 전승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표 2-2]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기반 구축 관련 주요 법령 내용

구분	근거 법률	주요 내용
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문화재보호법」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문화재수리기술포럼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전통재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문화재청장은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이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적정 규모의 시설을 준비해야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실태조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전통재료의 비축)	
기준 기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 자재 규격·품질, 대가 지급, 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그 밖에 문화재 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을 위해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시범사업, 교육 및 전승, 생산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전시 및 작품전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출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단계별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지정문화재 수리의 보다 세부적인 절차는 「문화재수리 업무지침」에서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문화재 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되었다.⁹⁾ 지침 제정 당시에는 문화재 수리의 절차를 ‘사전조사-설계-시공’의 순서로 규정했으나, 이후 사전조사(문헌조사와 현황조사) 및 설계를 통합하여 현행 지침에서는 ‘실측설계-시공’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을 기록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제정 지침과 비교했을 때 현행 지침에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검토해야하는 자료를 규정하는 ‘수리 필요성 검토’라는 장이 신설되었다.¹⁰⁾

이 절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법」 및 그 하위 법령 그리고 「문화재수리 업무지침」을 주된 범위로 하여,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를 크게 ‘기획-실측설계-시공’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표 2-3] 제정 및 현행 「문화재수리 업무지침」의 구성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청고시 제2010-130호, 2010.12.22. 제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 제4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 제4조(문화재 시대 적용 원칙) 제5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제2장 사전조사 제5조(사전조사 실시) 제6조(사전조사의 내용) 제7조(조사자료의 활용)	제2장 수리 필요성 검토 제6조(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
제3장 실측설계 제8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제9조(시방서의 작성) 제10조(재료의 표기) 제11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제12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제3장 실측설계 제7조(실측전조사) 제8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제9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제10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제11조(시방서의 작성) 제12조(재료의 표기) 제13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제14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9)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고시 제2010-130호, 2010.12.22. 제정) 제1조(목적)

10)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고시 제2010-130호, 2010.12.22. 제정) 제4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제6조(사전조사의 내용);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제6조(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청고시 제2010-130호, 2010.12.22. 제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3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제14조(구조적 결함에 대한 보수방법)	제15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제16조(설계승인)
제4장 문화재 수리(시공) 제15조(문화재 수리의 시대기준적용 원칙) 제16조(현장조사) 제17조(부재의 해체) 제18조(부재의 보관) 제19조(부재의 교체) 제20조(부재의 가공) 제21조(부재교체의 절차) 제22조(부재의 설치) 제23조(교체부재의 고색처리) 제24조(교체된 부재의 사후관리) 제25조(과학기술의 활용) 제26조(관계전문가 자문)	제4장 문화재수리(시공) 제17조(현장조사)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제19조(부재의 해체) 제20조(해체부재의 보관) 제21조(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제23조(부재의 교체 및 보강) 제24조(신재 및 보강부재의 가공) 제25조(부재의 설치) 제26조(부재의 고색처리)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제5장 기록화 제27조(보고서 작성) 제28조(보고서 작성범위) 제29조(보고서 작성지침) 제30조(보고서의 보관) 제31조(보고서의 공개)	제5장 기록화 제28조(보고서 작성) 제29조(보고서 작성범위) 제30조(보고서 작성지침) 제31조(보고서의 제출) 제32조(보고서의 공개) 제33조(재검토기한)

출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고시 제2010-130호, 2010.12.22. 제정; 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① 기획 단계

□ 조사

• 정기조사

문화재 수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문화재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는 문화재별 보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태에 따라 후속조치를 수행하여 중요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련되었다. 해당 규정이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된 이후 정기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며,¹¹⁾ 노후 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문화재를 6단계 등급(A(양호), B(경미보수), C(주의관찰), D(정밀진단), E(수리), F(즉시조치))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 수리 및 복구 등에 필요한

11) 국립문화재연구원. (2023). 2022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유산 정기조사(국보·보물) 1 서울 인천 경기. 국립문화재연구원, p.8.

후속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¹²⁾

- 국고보조사업 사전조사

「문화재보호법」은 국가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기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⁴⁾ 예산지원 검토, 사업내용 및 지침 확정, 예산 집행 관리, 정산 등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등급으로 판정된 문화재를 포함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¹⁵⁾

- 기초조사

이밖에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장은 직접 기초조사를 시행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조사·발굴 관련 단체 등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은 조사 착수 전 조사계획서, 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⁶⁾

□ 국고보조사업 신청

국고보조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의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12)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44조(정기조사);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문화재청훈령 제516호, 2019.12.17. 일부개정) 제9조(조사결과 등급분류), 제10조(후속조치)

13)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1조(보조금)

14) 보수정비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당 문화재의 복원·보수 등 수리뿐만 아니라 토지·건물의 매입, 기록화 및 연구, 발굴조사, 보호시설·관리시설, 관람편의시설·부대시설 설치, 경관 정비 등을 포함한다.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530호, 2020.01.22. 제정)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15)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530호, 2020.01.22. 제정) 제8조(예산의 신청 권고)

16)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한다.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 등 점검보고서, 간이 또는 정밀 안전진단보고서, 관련 분야 전문가 조사의견서 등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¹⁷⁾ 이후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회의결을 통해 사업 예산이 교부된다.¹⁸⁾

② 실측설계 단계

□ 실측설계 자격 제한

‘실측설계’는 문화재 수리 관련 용어로, 문화재 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해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해 실측도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문화재 수리에 있어 ‘설계’가 설계자 고유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문화재 현황 및 원형을 근거로 수행됨을 나타내는 용어로 판단된다.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제한한다.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시험을 거쳐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측설계기술자가 일정 조건의 기술능력, 시설을 갖추는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될 수 있다.²⁰⁾

□ 조사 및 실측설계도서 작성

• 실측 전 조사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증조사는 문화재 연혁·가치·특성 등에 관한 사료와 문화재의 구조, 양식, 재료 등 특징, 기타 수리 및 관리 관련 자료 등의 조사를, 현황조사는 문화재 퇴락 정도, 보수 부위 상태, 사용재료, 주변 현황, 지형, 진입도로, 배수관계 등 조사를 의미한다.²¹⁾

• 구조 결함 및 부재 상태 조사

17)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1조(보조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6조(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

18) 김재길. (2020).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제도.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교육자료, p.8.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2조(정의)

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7조(실측전조사)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는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현장 및 자료조사, 계측기기 조사, 비파괴시험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부재의 상태를 조사 및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안 조사와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부재의 훼손 현황 및 위험요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²²⁾

- 실측설계도서 작성

실측설계도서는 실측설계도면 및 시방서, 수량산출서로 구성된다. 이 중에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실측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현황 도면 및 보수계획 도면을 의미한다. 지정문화재를 해체 보수하는 사업에서는 부재 실측조사표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수리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공종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은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경우에는 시방서에 표기하도록 한다.²³⁾

지정문화재 수리의 표준시방서인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1994년에 처음 수립되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문화재 수리원칙 등을 담은 일반공통사항 및 공종별 용어·연장·재료의 설명, 절차와 세부 수행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²⁴⁾

□ 설계승인

- 설계심사를 통한 문화재청장(시·도지사)의 설계승인

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설계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전통적 기술과 원래 재료의 사용,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승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조건부 설계승인인 경우,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²⁵⁾

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8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제9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0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제11조(시방서의 작성), 제12조(재료의 표기), 제13조(수량산출서 작성)

24)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 제2023-76호, 2023.06.21. 일부개정)

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이러한 설계승인을 통한 문화재 수리 설계심사 제도는 원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되었다가, 문화재 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지정문화재 수리 전반에 도입되었다. 설계심사 제도 운영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설계심사관을 문화재청 및 지자체에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를 신설했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설계승인 관련 사항 이외에도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 문화재 수리 관련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²⁶⁾

[표 2-4] 지정문화재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 관련 사항

구분	설계승인	현상변경 허가
신청 서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황 사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허가·승인 절차	지자체 경유 신청 → 문화재청(시·도) 접수 → 설계심사(일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 → 설계승인 → 통보	지자체 경유 신청 → 문화재청 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현상변경 허가 → 통보
위원회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기준	-고증자료의 충만한 수집 -실측, 재료 및 구조 현황 조사의 설계 반영 -문화재 보존에 영향 미치는 주변 여건 조사 -형태·재료 변경, 부재 교체의 분명한 사유 -전통 기법·재료의 우선적 사용 -보강 기법·재료의 유효성 입증 -가설구조물, 기반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 계획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 문화재 보호 조치 계획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 -문화재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관련 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출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2021.07.27. 일부개정)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6조(설계승인),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11.21. 일부개정) 서식19(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2021.07.27. 일부개정)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6조(설계승인)

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0호, 2020.06.0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 현상변경 허가

한편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 및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용도변경하는 현상변경을 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는지, 문화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는지를 기준으로 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은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²⁷⁾ 그런데 설계심사 제도 도입 이후에는 문화재 수리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²⁸⁾

③ 시공 단계

□ 시공 자격 제한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록 제한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 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 혹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업자는 일정 조건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된다.²⁹⁾ 한편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으나, 이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³⁰⁾

□ 조사 및 시공

- 착수 신고

발주자는 문화재 수리를 착수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³¹⁾

27)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11.21. 일부개정) 서식19(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0호, 2020.06.09. 일부개정)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별표7(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30) 문화재 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 중학교 이상의 학력, 기능사 자격, 문화재수리기능자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표 2-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업무 범위

구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 포함)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실측설계 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보존과학 기술자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재 제외)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식물보호 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
	종합문화재수리업 (둘 이상의 공사 종류 복합된 문화재 수리)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 나. 위와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문화재 수리)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재 제외)의 시공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목공사업	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	석공사의 시공
	변와공사업	변와공사의 시공
	미장공사업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온돌공사의 시공

출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별표2(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별표8(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전에 현장 상황과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설계 오류 및 누락사항, 문화재의 보호 및 안전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³²⁾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도

발주자는 설계승인 사항과 문화재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새로운 부재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³³⁾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장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해 문화재 고증 및 양식, 수리기법 및 범위, 주요 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등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문화재 수리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³⁴⁾

- 설계변경

「문화재수리법」 및 「문화재수리 업무지침」에서 설계변경 관련 사항을 별도로 다루지 않으나, 국고보조사업 지침에서는 단순한 물량변동으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이외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³⁵⁾

- 부재의 해체·교체·보강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의 문화재 해체 및 부재의 처리, 교체, 보강, 가공, 설치, 고색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기존 양식과 기법을 사용하여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것에 한해서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³⁶⁾

□ 수리현황의 점검

- 수리현황의 검사

문화재청장, 지자체장은 필요 인정 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업무와 수리현황에 관한

3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7조(현장조사)

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0호, 2020.06.09. 일부개정)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제18조의2(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3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35) 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pp.10-11.

3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9조(부재의 해체), 제20조(해체부재의 보관), 제21조(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제23조(부재의 교체 및 보강), 제24조(신재 및 보강부재의 가공), 제25조(부재의 설치), 제26조(부재의 고색처리),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보고와 자료 제출을 명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 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고증, 양식, 기법, 수리범위 및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³⁷⁾

- 문화재 수리 감리

발주자는 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문화재감리업자에게 감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수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감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수리에서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한다.³⁸⁾

- 완료 신고

발주자는 문화재 수리를 완료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³⁹⁾

□ 기록화

-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 현황조사, 작업공정, 수리 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환경,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수리전·후의 사진, 설계도면,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결과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해야 한다. 완료된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전자 문서화한 파일과 수리 정보 등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자(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후 승인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한다.⁴⁰⁾

- 문화재 정보화

3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0호, 2020.06.09. 일부개정)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3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0호, 2020.06.09. 일부개정)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제20조(감리대상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2021.07.27. 일부개정)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3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28조(보고서 작성), 제29조(보고서 작성범위), 제30조(보고서 작성지침), 제31조(보고서의 제출), 제32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기초조사 및 보존·관리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 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⁴¹⁾

④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종합

- 「문화재수리법」 제정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 등 수립에 의한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기반 구축
- 「건축법」 적용 예외 조항에 따라,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제외
- 문화재실축설계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로 수리 자격 제한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통한 문화재 수리에 대한 설계승인 절차 존재
- 시공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표 2-6] 단계별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정리

단계	절차	내용	관련 주체
기획	조사	정기조사, 국고보조사업 사전조사	문화재청
		기초조사	문화재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수리 신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발주자, 문화재청
▼			
실축설계	조사 및 실축설계도서 작성	실축 전 조사	문화재실축설계업자
		구조 결함 및 부재 상태 조사	
		실축설계도서(실축설계도면, 시방서) 작성	문화재실축설계업자
	설계승인	설계심사를 통한 설계승인	발주자, 문화재청 설계심사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시공	조사 및 시공	착수 신고	발주자, 문화재청
		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도	관계 전문가
		설계변경	문화재청, 지자체
		부재의 해체·교체·보강	문화재수리업자
	수리현황의 점검	수리현황의 검사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 수리 감리	문화재감리업자
		완료 신고	발주자
	기록화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	문화재수리업자

출처: 연구진 작성

41)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개요

- 근대사적과 국가등록문화재의 수리체계 분리

이 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정되는 지정문화재 중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를 단계별로 검토한다. 지정문화재인 근대사적은 「문화재수리법」 적용 대상으로서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하지만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만 관리되며,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지침을 따르고 있다.

【표 2-7】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관련 주요 법령·지침·기준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근대사적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 기조사 운영지침		
					·문화재수리 등에 관 한 업무지침 ·문화재수리 표준품 셈 ·문화재수리 기술지 도 운영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위 원회 운영지침 ·문화재보수정비(총 액계상) 국고보조사 업 운영·관리 규정	·전통재료의 실태조 사 및 수급계획 수 립 등에 관한 기준 ·문화재수리감리기준 ·문화재수리설계기준 ·문화재수리 설계도 서 작성기준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국가등록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 기조사 운영지침 ·문화재보수정비(총 액계상) 국고보조사 업 운영·관리 규정	·문화재보수정비 국 고보조사업 지침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출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리기술 법령·지침·기준. <https://www.kofta.org/technique/laws.jsp> (검색일: 2023.02.08.)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근대사적 수리체계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특성에 따라 검토, 심의 주체가 상이함

지정문화재인 근대사적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단계별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다만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 내 단계별 검토 및 심의 주체가 ‘근대문화재과’와 ‘수리기술과’로 구분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재청의 하부조직을 국 단위로 보면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으로 구성된다.⁴²⁾ 문화재활용국에 위치한 근대문화재과는 근현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문화재 가운데에서는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재(근대역사문화공간 포함) 및 민속문화재(고택, 민속마을 등)를 담당한다. 문화재보존국에 위치한 수리기술과는 문화재 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 설계(변경) 검토·승인 및 기술지도를 비롯해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규정·기준을 운용하고 기술진흥·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⁴³⁾ 근대사적의 수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근현대 문화유산 업무를 총괄하는 근대문화재과가 예산교부를 검토하며, 수리기술과가 설계승인을 진행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주요 부위를 해체하는 해체보수공사에 한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분과의 심의를 거쳐 설계승인이 이루어진다.

- 재료 수급 및 실측설계도서 작성 시 참고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음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인 근대사적에는 목조트러스, 철재, 벽돌, 콘크리트 등 현대식 재료가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는 전통건축 중심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통재료 수급계획은 전통건축 중심의 재료인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를 중심으로 수급현황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을 다룬다. 실측설계도서 작성의 경우, 「문화재수리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각종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고려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0년에 작성된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를 함께 적용한다.

42) ‘문화재정책국’에는 정책총괄과, 무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안전기준과, ‘문화재보존국’에는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및 수리기술과, ‘문화재활용국’에는 활용정책과, 국제협력과, 세계유산정책과, 문화유산협력팀 및 근대문화재과가 위치한다.

43) 문화재청. 문화재청소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introduce/organization_info.jsp&mn=NS_05_05_01 (검색일: 2023.03.03.)

3)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

① 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기반 구축

- 문화재 기본계획,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등록문화재 및 근대문화재 관련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계획에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계획이 일부 포함된다. 사업내용 중 등록문화재에 대한 추진 방안은 등록 대상 문화재의 발굴 및 체험 기회 확대 등 활용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수리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연계하여 국가등록문화재(교육시설)의 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재료 적용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마련, 시멘트 모르타르 등 등록문화재 보수용 재료 연구 및 품질기준 제안이 제시되었다.

[표 2-8] 문화재 기본계획(2022~2026) 내 등록문화재 관련 추진 방안

사업내용	세부내용
문화재 지정·등록의 다양성 확보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항일독립·미군기지 등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유산 조사·발굴
부처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인 문화재 보존·활용 도모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관련 사업주체간 협업과 지역별·유형별 특성을 살려 이국적인 볼거리와 체험 기회 등 제공 (근현대 교육시설) 노후 학교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교육부)과 연계하여 국가등록문화재(교육시설)의 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재료 적용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마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향유 환경 조성	(치유와 환경 친화) 국립고궁박물관 무장애 공간 조성, 궁·능별 편의시설 개선, 지역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대상 무장애 공간 조성 지원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지역 선정) 지역별·유형별 다양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등록문화재로 발굴, 문화재 등록 절차를 거쳐 지역 선정
국제협력·지원을 통한 문화재 분야 남북 교류 협력 강화	DMZ 실태조사에 따른 국가 및 등록문화재 지정 등 보호체계 마련 추진
표준화된 문화재 빅데이터 구축	사적, 국가민속자료(가옥, 민속마을), 등록문화재(근대건축), 천연기념물, 명승 등 사진, 도면, 보고서 등 원형기록 데이터 세트 구축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 기술 개발	(전통재료) 등록문화재 보수용 재료 및 전통 단청 등 문화유산 보수·복원에 필요한 전통재료 개발 - 등록문화재 보수용 시멘트 모르타르 재료 연구 및 품질기준 제안

※ 기본계획에 표기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출처: 문화재청, (202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문화재청, pp.31, 44, 48, 51, 66, 68, 7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한편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법」을 근거로 수립되기 때문에, 등록문화재에 특화된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문화재 유형별 관리·수리기준, 정책 마련 및 문화재수리업 기술자격, 업종 세분화의 대상에 ‘근대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표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내 근대문화재 관련 추진 방안

중점과제	세부내용
문화재수리 기준 체계 고도화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 - 문화재의 유형별로 관리 기준을 전문화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수리 기준과 정책 마련 추진 - 근대문화재, 동산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문화재수리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문화재수리업의 다양화 모색 - 문화재수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업종을 전문화·분업화하는 방안 모색 - 기술자격과 업종 세분화 및 신설 방안 검토 - 근대문화재수리, 동산문화재수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수리 등

※ 기본계획에 표기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출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2019).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pp.24, 26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기획 단계

□ 조사

- 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정기조사, 국고보조사업 사전조사, 기초조사 시행

국가등록문화재의 조사 및 수리 신청은 지정문화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조사는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정기조사, 국고보조사업 사전조사, 기초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수리 신청

- 국고보조사업 신청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관리, 보호, 수리, 활용, 기록 작성 등을 위해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방법은 지정문화재의 방법과 같다.⁴⁴⁾

③ 실측설계 단계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문화재수리법」에 위법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의 적용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국고보조사업에 의해 수리하

44)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1조(보조금), 제59조(준용 규정)

는 경우에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따라야 한다. 본 지침에는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공통 원칙과 함께 아래 표가 기재되어 있다.⁴⁵⁾

[표 2-10]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수록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법 조항
수리범위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위시설물 및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제2조
수리주체	·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수리 · 문화재수리업자·기술자·기능자가 없는 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수리	제5조
문화재수리업 구분	·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	제16조
도급·하도급 규정	· 도급의 원칙, 하도급의 제한 등 규정	제24~32조
설계심사·승인	· 지정문화재 수리 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시행	제33조의2
착수·완료 보고	·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 착수·완료 시 · 수리 중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제33조의3
교체부재 표시	· 수리 시 교체한 부재에는 그 표면 중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교체연도와 발주자명을 표시	
현장공개	·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 수리의 현장은 모두 공개	제37조의2
정보공개	·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정보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 수리 개요, 참여 기술인력, 사진, 도면 등	제37조의3
의무감리제도	· 문화재 감리의 시행 및 감리의 제한 규정	제38~41조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p.1의 표 재인용

또한 같은 지침 안에는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원형 유지의 원칙, 관계 전문가의 자문, 기술지도 및 설계검토,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의 준수, 개별법에 따른 감리제도 준용 등의 사항으로, 원문의 내용은 다음 인용문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위 표의 ‘수리범위’에 국가등록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주체 및 각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지침만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수리법」을 준용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⁴⁶⁾⁴⁷⁾ 따라서 문화재실측설계

45) 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p.1.

업자에 의한 실측 전 조사, 구조 결함 및 부재 상태 조사, 실측설계도서 작성이 이루어지며, 설계심사를 통한 설계승인을 받게 된다. 단, 문화재수리기술평가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의 설계승인 심의를 받는다.

※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지침 (동산문화재 관련 사항 제외)

1.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원형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보수 정비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형 여부에 대한 고증 검토 작업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고증 결과에 따라 원형의 재료, 시공기법, 결구법 등을 재현하도록 한다.
나. 목부재를 신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체 전 목재에 대한 수종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원형 목재 수종에 대한 고증 또는 주변 문화재의 수종 사례 등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인 교체 수종을 결정하도록 한다.
2. 등록문화재는 그 특성상 건축구조·양식 등이 고건축과는 다른 면이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등록문화재의 주요 부분 수리 또는 특정된 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설계검토는 국가검토사업으로 문화재청장이 하며, 지방검토사업 대상으로 위임한 사업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한다.
4. 등록문화재 중 근대건축물 수리의 경우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를 준수한다.
5. 등록문화재의 수리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감리제도를 준용하여 감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p.45.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도, 「건축법」 적용을 받음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이 일반적으로 「문화재수리법」을 준용해 수행되고 있지만, 「건축법」 적용 제외 조항은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⁴⁶⁾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에서는 필요 시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 또는 시·도의 문화재 수리 설계승인 및 시·도의 건축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점이,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와의 큰 차이점이다.

□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설계승인 없이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절차만 존재함

• 실측설계 자격 제한 없음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에서는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다.

46)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자문회의(2023.04.07.)를 통해 확인

47)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문화재수리법」 적용 제외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4.07.)를 통해 확인)

48) 「건축법」(법률 제18935호, 2022.06.10. 일부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 조사 및 실측설계도서 작성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조사 및 실측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으나,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지붕부를 포함한 외관 면적의 1/4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재료 등의 변경 및 이전, 철거를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현상변경 신고서에는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를 첨부해야 하며,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면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도·조언·권고를 할 수 있다.⁴⁹⁾

단,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경우, 그리고 국가로부터 관리경비 등 보조금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관할 지자체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의 양식과 첨부해야 하는 자료 및 허가 절차는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과 동일하나, 허가 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⁵⁰⁾ 이러한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외에, 필요 시 「건축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표 2-11]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설계승인 및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허가 관련 사항

구분	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설계승인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허가
신청 서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황 사진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허가·승인 절차	지자체 경유 신청 → 문화재청 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자체 경유 신청 → 문화재청(시·도) 접수 → 설계심사(일부 문화재수리	지자체 경유 신고 → 문화재청 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자체 경유 신청 → 문화재청 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49)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50)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구분	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설계승인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허가
	현상변경 허가 → 통보	기술위원회 심의) → 설계승인 → 통보	지도·조언·권고 → 통보	현상변경 허가 → 통보
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기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 -문화재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고증자료의 충분한 수집 -실측, 재료 및 구조 현황 조사의 설계 반영 -문화재 보존에 영향 미치는 주변 여건 조사는 주변 여건 조사는 형태·재료 변경, 부재 교체 등의 분명한 사유 -전통 기법·재료의 우선적 사용 -보강기법·재료의 유효성 입증 -가설구조물, 기반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 계획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 문화재 보호 조치 계획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허가
관련 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출처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2021.07.27. 일부개정)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제16조(설계승인)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④ 시공 단계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문화재수리법」에 위법하지 않도록 함

앞서 실측설계 단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수리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조사 및 시공, 수리현황의 점검, 기록화라는 지정문화재 시공 단계의 절차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의 준수, 개별법에 의한 감리제도의 준용 등 지침을 따른다.⁵¹⁾

□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착수·완료 신고만 존재함

- 시공 자격 제한 없음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에서는 문화재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문화재수리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다.

51) 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p.45.

- 조사 및 시공, 수리현황의 점검, 기록화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조사 및 시공, 수리현황의 점검, 기록화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으나,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현상변경 착수 및 완료 신고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했을 때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공사실시시방서, 공사 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⁵²⁾

- 기술지도 요청이 가능함

소유자·관리자는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술지도 요청서에는 문화재의 현재용도, 요청 사유, 요청 내용 등을 작성하고,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⁵³⁾

⑤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 종합

- 「문화재수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 적용 대상임
- 문화재 기본계획,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기획 단계는 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진행됨
- 그러나 실측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및 자격 제한이 없음. 단, 국가등록문화재의 수리체계는 국고보조사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건축행위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은 동일하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따름. 본 지침은 「문화재수리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수리와 큰 차이가 없으며, 「근대건축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준수하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문화재청은 현상변경에 대해서만 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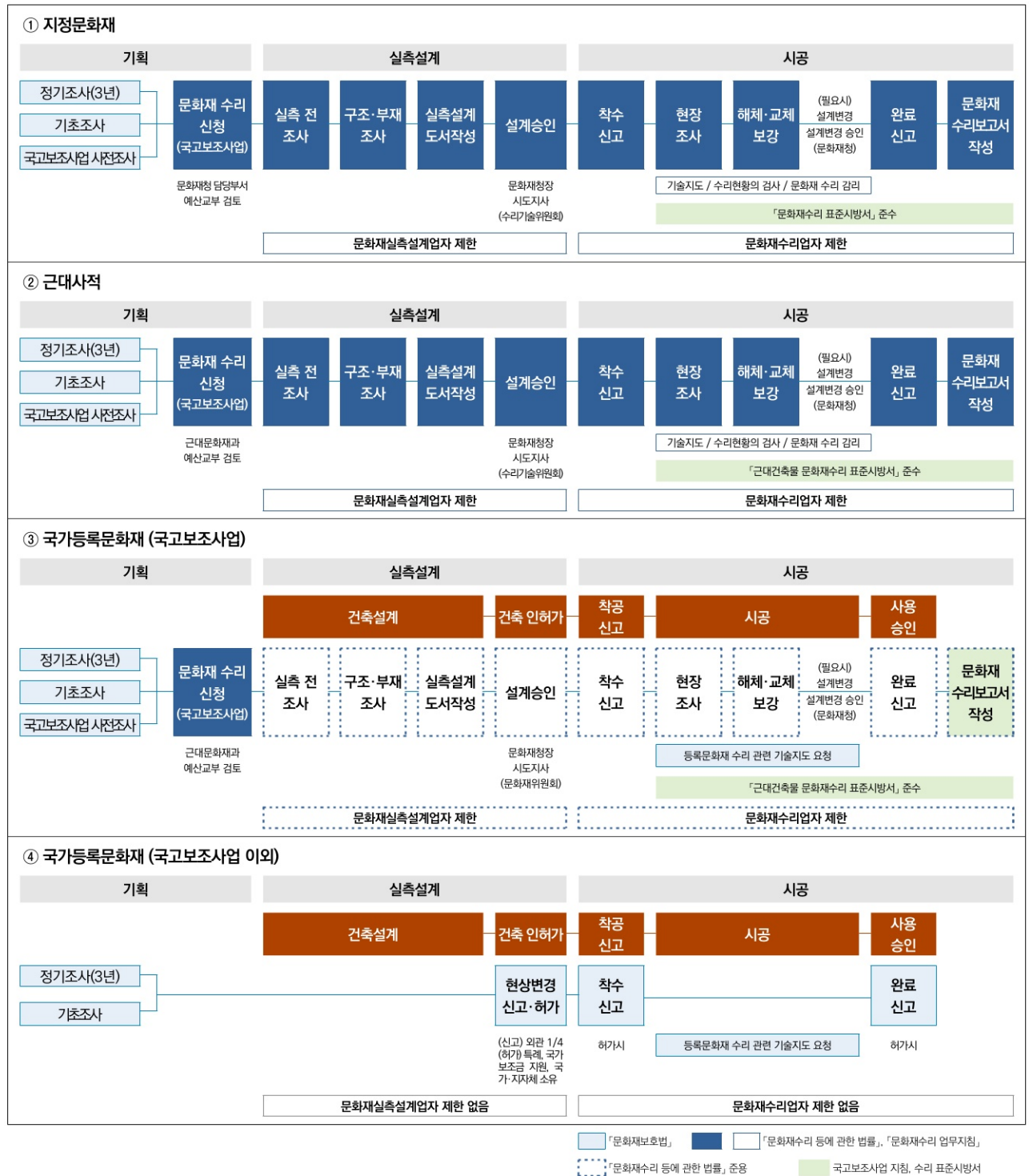
52)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11.21. 일부개정) 제38조(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별지 제35호(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53)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11.21. 일부개정) 제37조(기술 지도)

[표 2-12] 단계별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정리

구분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이외	
단계	절차	내용	절차	내용
기획	조사	정기조사 국고보조사업 사전조사 기초조사	조사	정기조사 기초조사
	수리 신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				
실측설계	조사 및 실측설계도서 작성	실측 전 조사	현상변경 신고·허가	외관 면적 1/4 이상 특정 조건에서 허가 필요
		구조 결함 및 부재 상태 조사		
	실측설계도서(실측설계도면, 시 방서) 작성			
	설계승인	설계심사를 통한 설계승인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건축 인허가	건축 인허가	건축 인허가	건축 인허가	
▼				
시공	조사 및 시공	착수 신고	신고 및 기술지도	착수 신고(현상변경 허가시)
		현장조사		기술지도 요청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도		완료 신고(현상변경 허가시)
		설계변경		
		부재의 해체·교체·보강		
	수리현황의 점검	수리현황의 검사		
		문화재 수리 감리		
		완료 신고		
	기록화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2-1] 단계별 문화재 수리체계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

1)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미비

① 국가등록문화재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변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법」으로, 「문화재수리법」이 「국가유산수리법」으로 2023년에 개정되어 2024년 시행 예정이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어 2024년 9월 시행 예정이다.⁵⁴⁾ 하지만 「국가유산수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제외되어 있어, 전반적인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국가등록문화재와 비교하여, 단계별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기준의 결정·고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수리기준 수립이 의무화된다.

- 필수보존요소의 현상변경 신고·허가

특별히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를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 관계 법령의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관계 법령의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특례 범위가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한정되었으나, 「건축법」, 「녹색건축물법」, 「민법」, 「주차장법」, 「소방시설법」 등으로 확장된다. 단,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성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4호, 2023.09.14.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1호, 2023.08.08.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일부 발췌)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 ① 문화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를 고시하는 경우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함께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를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① 국가등록문화재(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4. 「민법」 제242조제1항
 5.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해당 여부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앞서 검토한 근대사적과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현황 및 새로 도입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보존가치 관리 방안의 미비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 속에서 보존을 위해 관리되어왔다. 보존 중심의 기존 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2001년의 등록문화재 제도이다.⁵⁵⁾ 건축물은 경제적 목적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면 고쳐지거나 철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등록문화재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활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현재도 소유자 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만큼 강하게 규제하기 어렵다. 소유자와 국민들의 성숙한 보존의식에 기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⁵⁶⁾ 이러한 제도적 배경 하에 문화재가 가지는 보존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수리체계의 미비점이 확인된다.

□ (기획 단계) 보존가치 확인·점검 절차의 미비

• 현행 문화재 조사의 한계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에 앞서 정기조사, 국고보조사업 사전조사, 기초조사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 파손 등 전반적인 훼손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지정문화재의 관리에는 유효하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보존가치의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이 더욱 요구된다.

• 구체적인 보존가치 기술의 필요

이와 연계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대장에 기술된 해당 문화재의 가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유를 알려주고 있으며, 특별히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건축적 요소와 그 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보존·관리방법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⁵⁷⁾

55) 이규철 외. (2017).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p.68.

56) 신용주, 이상선. (2014).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6(1), p.119.

57) 국가등록문화재 중 서울 소재 교육시설 12건의 등록대장을 검토한 결과, 대표성·희소성(10)에 대한 기술이 가장 많으며, 예술적 가치(7), 보존상태·활용여건(6), 역사적 사건·인물 연관성(2), 기술적 가치(1)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2022).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2022.06.30.).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3829&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b%93%b1%eb%a1%9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2.03.))

[표 2-13] 2022년 정기조사의 구성

항목	조사내용	
총괄 사항	기본정보	문화재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면적(등록수량), 소유자(연락처), 소재지, 관리자/관리단체, 구조·양식/층수·높이, 건립연도, 용도지역
		문화재 연혁 및 성격
	정비·보수·수리 이력	시행연도, 예산(천원), 시행처, 정비·보수·수리 내용, 업체명
	조사결과	보존사항
		기둥/벽체부, 바닥/천장/계단부, 지붕부, 건물 변위, 기타사항
		관리사항
	조사자 종합의견	소방 및 안전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주변 및 부대시설, 문화재의 변천과정, 활용상태
		기타
		총해, 특기사항
	2019년 조사	일반사항, 보존사항, 종합
		2022년 조사
보존 사항	기둥/벽체부	벽체, 벽체마감(외벽), 벽체마감(내벽), 창호/개구부
	바닥/천장/계단부	바닥, 천장, 계단
	지붕부	지붕 구조체, 지붕바탕, 지붕마감, 굴뚝/지붕장식 등
	건물변위	침하, 기울기
관리 사항	소방 및 안전관리	소방 등 재난 대응 매뉴얼 비치, 소방차의 진입 가능,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실시, 소화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속보설비, 감지기, CCTV
		전기시설 관리상태
		정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가스시설 관리상태
		가스 누출 검지기 설치 여부, 가스시설 연결관 종류
		안전경비원 관리상태
	안전경비원 관리상태	안전경비원, 관리일지
		돌봄사업
		주기적인 관리를 위한 업체 및 단체의 유무
		주거적인 관리를 위한 업체 및 단체의 유무
문화재의 변천과정	안내 및 전시시설	안내소(매표소), 안내판, 전시·박물관, 문화재해설사
	주변 및 부대시설	옹벽·담장, 배수시설, 주변수목, 주변건물, 보호각·보호시설, 그밖의 시설
	문화재의 변천과정	당대 원형 상태
		원위치여부, 건조물 내부, 건조물 외부(외벽, 지붕 등)
	문화재의 활용상태	변형 현존 상태
		공개여부, 본래용도, 현재의 활용용도(최종), 사용실태, 특기사항(프로그램)
첨부	도면,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록문화재구역도, 일반현황사진, 보존현황사진(훼손부 위치, 주요구조부, 일반구조부)	

출처: (주)한국건축안전센터. (2022). 2022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권5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서(제328호~제369호). 문화재청, pp.960-101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2-14]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서술의 사례

문화재명 (등록연도)	가치 분류				
	기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대표성·희소성	사건·인물 연관성	보존상태·활용여건
서울 경기상업 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2014)	(전문) 경기도 최초의 도립학교인 경기도립감중상업학교의 교사 건물로, 당시 시범적으로 시도한 한일공학중학교로써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였던 역사적 장소임		·경기도 최초의 도립 학교 ·시범적으로 시도한 한일공학 중학교		
서울 배화여자 고등학교 캠퍼스 기념관 (2017)	(전문) 우리나라 근대시기 교육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동 시기의 건축적 양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를 지님	동 시기의 건축적 양식 과 기법을 잘 보여줌	근대시기 교육시설로 서의 역사적 가치		

출처: 문화재청. (2022).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2022.06.30.).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83829&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b%93%b1%eb%a1%9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2.0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실측설계 단계) 필수보존요소 지정 및 관리 방안의 부재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외관에 대해서만 규제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하다.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부를 포함한 외관 면적의 1/4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재료 등의 변경을 의미한다. 건축물 이외에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외관 면적,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 표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관리 방안의 부재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건축물 내부에서 확인되거나, 현상변경의 범위가 외관 면적의 1/4 미만인 경우에는 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내년 시행 예정인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를 ‘필수보존요소’라 명명하고, 등록문화재 등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상변경의 신고·허가 범위에 외관과 함께 필수보존요소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지만, 필수보존요소의 구체적인 지정 방법, 범위 등은 제시되지 않아 법 시행 직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 (실측설계·시공 단계) 국고보조사업 이외 수리의 관리 방안 미비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해석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는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명확히 「문화재수리법」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 해석에 따라 적용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문화재청의 관여가 어려움

또한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외관 면적의 1/4 이상 현상변경에 대해서만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측설계·시공 단계에서 자격 기준에 대한 제한이나, 실측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한 설계승인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등을 거쳐 수리 내용과 방법을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2) 근현대 건축에 특화된 수리기술 연구의 미비

□ (실측설계 단계)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 설정

-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건축법」의 이중체계 적용

국가등록문화재 중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수리는 대수선 이상 및 용도 변경의 건축행위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구조, 설비, 소방, 주차장, 에너지 등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⁵⁸⁾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 조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의 물리적 변형이 필요하게 되어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표 2-15] 현행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

구분	관련 법률명	주요 조항
건축	전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조	대지와 도로 관계(건축선) 대지 안 공지(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선), 공개공지 대지 안의 조경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대지의 안전 등, 규모제한,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구조안전확인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내진성능 확보 및 공개)
	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냉·난방, 배관, 에너지, 승강기 등 기준)
	피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화, 방화구조, 피난 등에 관한 기준) 방화(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내화구조, 방화벽, 방화구획,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지구 내 건축물 제한) 피난(출구, 복도, 피난거리, 피난계단, 비상탈출구) 건축설비(승용승강기, 배관설비, 배연설비·창, 방습)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특례 시가지 환경을 위한 건축물의 형태 제한(높이)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의 배제나 완화특례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설주차장(용도변경, 소규모, 부지인근)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증축·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녹색건축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의무 차양 등의 설치 의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장애인등 편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

출처: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2018).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건축물 문화재 및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pp.86-1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3.02.13.)의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58)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자문회의(2023.04.07.)를 통해 확인

- 관계법령의 특례 규정

「근현대문화유산법」은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특례 규정을 그대로 포함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보다 확대된 관계법령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단, 「건축법」의 피난, 방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절약계획,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일부 기준 또는 성능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완화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협의를 거쳐 특례 적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더욱 확대된 특례 규정은 앞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에서 현행법 적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서 요구되는 내진설계, 전기, 단열 등 건축성능에 대한 기준이 현재 부재하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특례 규정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의 수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6]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관련 법률에서의 법령 특례 현황

구분		국가등록문화재	우수건축자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근거법률		「문화재보호법」	「한옥등건축자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	●	●
	대지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지하층, 높이, 맞벽건축, 승강기		●	●
	피난·내화구조, 건축설비		●	●
	대수선, 구조내력, 면적·높이 및 층수 산정		○(한옥)	●
녹색건축법	에너지절약계획서		●	●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	●
민법	경계선부근의 건축		○(한옥)	●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기준 완화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3.02.14.)의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실측설계·시공 단계) 근현대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방서 등 필요

-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

1994년에 처음 수립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⁵⁹⁾ 이후 근대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리 표준시방서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에

59) 1994년 수립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의 머리말에서는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원래

문화재청은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를 발간했다. 이는 2007년부터 국내외 근대문화재 현장 조사와 관계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작성되었다.⁶⁰⁾ 또한 당시까지 수리 사례가 많지 않은 근대건축에 대해 국내외의 수리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각 수리 사례의 공종별 주요 사항을 정리한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을 함께 발간했다.⁶¹⁾ 하지만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현재까지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유일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이다.

[표 2-17]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구성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2023)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2010)
0100 일반공통사항	1300 석공사	0100 일반공통사항
0200 가설공사	1400 석조물공사	0200 가설공사
0300 기초공사	1500 성곽공사	0300 벽돌공사
0400 기단공사	1600 단청공사	0400 석공사
0500 목공사	1700 유구정비공사	0500 목공사
0600 지붕공사	1800 조경공사	0600 철근콘크리트공사
0700 전돌공사	1900 식물보호공사	0700 지붕공사
0800 미장공사	2000 기타공사	0800 미장공사
0900 창호공사	2100 보존처리공사	0900 마감공사
1000 온돌공사		1000 창호공사
1100 수장공사		1100 보존처리공사
1200 철물공사		1200 기타공사

출처: 문화재청. (2023).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청, p.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10).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p.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정문화재인 근대사적의 경우에는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가 적용되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근현대 건축과 관련한 규정이 자세하지 못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공종 구분 정도로만 작성되어 있으며, 근현대 건축 관련한 공종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⁶²⁾ 또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국가등록문화재의 수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만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형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⁶³⁾

의 재료와 전통기법대로 수리되어야만 원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1994).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관리국, 머리말.)

60)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자문회의(2023.04.07.)에 따르면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는 지정문화재 중 근대사적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6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10). 근대건축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수리사례집 발간. 12월 23일 보도자료.

62)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회원회 근현대분과 전문위원) 자문회의(2023.03.31.) 및 부산근현대역사관 관계자 자문회의(2023.4.28.)를 통해 확인

63)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4.07.)를 통해 확인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에 소개된 근대사적 구 러시아 공사관의 벽돌공사

구분	주요사항
재료	적벽돌
	러시아공사관과 비슷한 시기 건립된 건물에서 해체 시 나오는 파벽돌을 러시아로부터 수입
	모르타르
기타	강회 모르타르, 공장에 주문 배합된 회모르타르
	시멘트용 고급분말 혼화제
조사	설계도서(훼손부위, 현황, 원형 파악)
	구조안전진단(현황, 구조체 내구성, 재료특성)
시공	미장 해체
	미장 두께를 파악하여 일정한 깊이로 잘라내어 벽돌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함
	임시구조보강
	미장 해체 후 벽돌 훼손이 심각하여 건물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철골로 각 모서리 연결하여 보강함. 가설비계를 이용하여 보강한 경우에는 비계에 가해지는 진동 등이 건물에 직접 전달되어 추가적 훼손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
벽돌 해체	벽돌 부위에 따라 완충해머와 줄눈제거기로 벽돌을 한 장 단위 해체를 하거나 파쇄함. 넓은 범위의 해체를 할 경우에는 벽돌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범위 밖의 벽돌의 훼손을 방지해야 함
	벽돌쌓기
	외벽의 벽돌을 교체한 후 내벽을 교체함. 아치쌓기는 형틀을 제작하여 아치를 보강한 후 쌓음. 나무벽돌은 기존 것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 방부처리 후 교체함



주변 벽돌과 수평 맞춤



우측과 좌측을 번갈아 쌓음

출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10).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p.29의 그림 및 p.30의 표 재인용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문화재 수리기술체계는 국가과학기술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타 부처 기술체계와 상호협력 및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기술은 기존의 지정문화재 수리기술과 일반건축물 대수선기술 사이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못한 상황이다.⁶⁴⁾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리기술 체계 분석이 필요하며, 기존 기술자 및 기능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공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⁶⁵⁾

•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64)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2018).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건축물 문화재 및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p.168.

65)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분과 전문위원) 자문회의(2023.03.31.)를 통해 확인

이러한 배경 하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수리 표준
시방서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국가등록문화재의 수리품질 향상을 위하
여 다양한 근대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별 구성 재료 조사·분석, 각각의 공정 파
악 및 표준시방서의 수정·보완을 목표로, 2023년에는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 중이다.⁶⁶⁾ 국가등록문화재에 초점이 맞춰진 수리 표준시방서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볼 수 있다.

※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과업범위

- 기초자료 조사
 - 국내 시방서 분석
 - 국외 시방서 분석
 - 종합분석
- 표준시방서 현황분석 및 조사
 - 표준시방서 분석: 구성체계, 공종, 항목 등
 - 국가등록문화재(수리) 현황조사 및 공종 분석
-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작성
 - 기본방향
 - 정비방법
 - 기본정비(안): 목차, 공종분류코드체계, 항목구성체계, 공종별 목차 정비
- 표준시방서 정비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연구조직 구성, 소요예산

출처: 문화재청. (2023).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업내용서. 문화재청, pp.1-2.

66) 문화재청. (2023).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안요청서. 문화재청, p.1.

제3장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1.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와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수리체계
 2. 영국의 등재건축물 수리체계
 3.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시사점
-

1.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와 역사적 건축물 (보존건축물) 수리체계

1)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체계

①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개요

□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일본 문화청(文化庁)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0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 등 6가지로 분류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를 보완하여 폭넓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1996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신고제와 지도·조언 등을 기본으로 완화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당초에는 유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만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범위를 확장하여 유형문화재 전체 및 무형문화재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건조물이 아닌 것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라는 명칭이 정해졌다.⁶⁷⁾

유형문화재의 하위 항목으로는 국보, 중요문화재, 등록유형문화재, 기타 유형문화재가 있다. 1868년 이후 즉, 근현대에 조성된 유형문화재(건조물) 중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건립시기별 유형문화재(건조물)의 분포(2023.05 기준)

시기	국보	중요문화재	등록유형문화재	기타 유형문화재	소계
메이지 (1868~1912년)	5	594	4,023	50	4,672
다이쇼 (1912~1926년)	0	238	2,610	28	2,876
쇼와 이후 (1926년 이후)	0	164	3,734	47	3,945
합계	5	996	10,367	125	11,493

출처: 文化遺産オンライン, <https://bunka.nii.ac.jp/heritages/search> (검색일: 2023.05.1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등록과 지원

• 등록 기준과 절차

건설 후 50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국토의 역사적 경관에 기여하는 것, 조형의 규범이 되는 것, 재현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⁶⁸⁾ 소유자가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면, 문화청의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 제2전문조사회)를 거쳐 등록이 결정된다.⁶⁹⁾

• 혜택과 지원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고정자산세 등에 대한 감세 혜택이 주어지며, 6가지의 경비 보조 사업(설계감리사업, 공개활용사업, 재해복구사업, 미관향상정비사업, 활용환경강화사업, 지역심볼정비 등 사업 중 기능유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⁷⁰⁾

②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체계의 주요 특징

□ 현상변경의 신고

• 현상변경의 정의

“통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관 범위의 1/4 이상 변경하거나, 주요 구조체를 포함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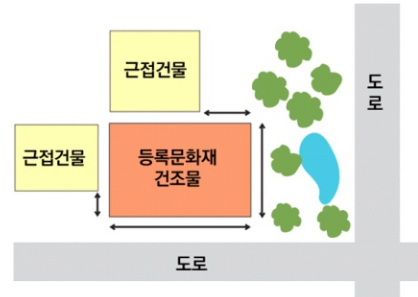
67) 文化庁. (2021). NPO 等による文化財建造物管理活用の手引き(手引書). 文化庁, p.14.

68) 文化庁. (2021).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1. 文化庁, p.2.

69) 文化庁. (2021). 建物を地域と文化に-登録有形文化財登建造物制度の御案内. 文化庁, p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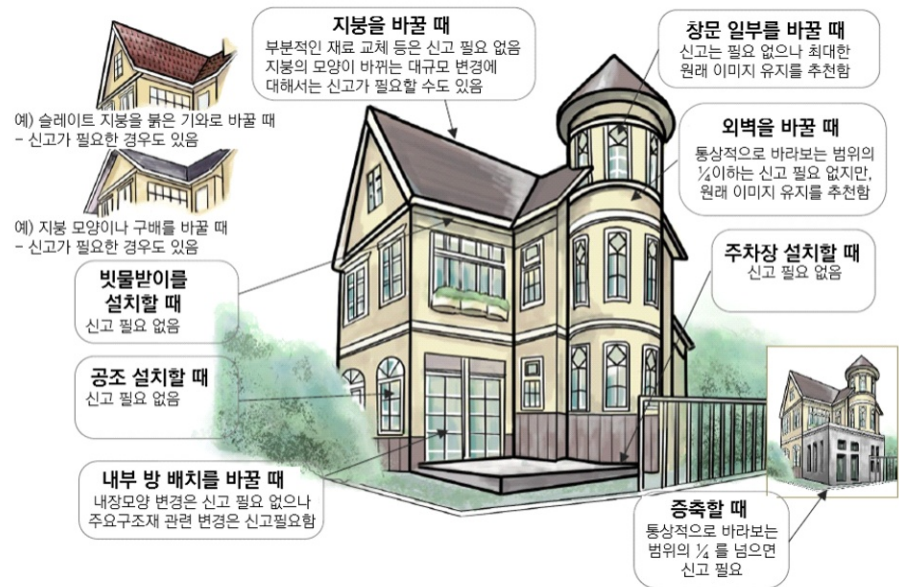
70) 文化庁. (2021). 建物を地域と文化に-登録有形文化財登建造物制度の御案内. 文化庁, p.6.; 文化庁. (2022).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3. 文化庁, pp.2-3.

부 개수, 등록문화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현상변경’으로 간주한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최초 등록 시 제출된 서류에 가치가 있다고 기재된 특정 요소가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외관 면적의 1/4 이상이라는 기준만 존재하며, 내부 주요 구조체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특정 요소의 변화를 현상변경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관 범위의 1/4 이하를 변경하거나, 주요 구조체를 제외한 내부 개수 등을 ‘유지 조치’로 인정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⁷¹⁾



[그림 3-1] 통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의 기준

출처: 文化庁. (2021). 建物を地域と文化に-登録有形文化財登録建造物制度の御案内. 文化庁, p.6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그림 3-2]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유지 조치

출처: 文化庁. (2021).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き 2. 文化庁, p.6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71) 文化庁. (2021). 建物を地域と文化に-登録有形文化財登録建造物制度の御案内. 文化庁, p.6.; 文化庁. (2021).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き 2. 文化庁, p.6.

- 현상변경 신고 절차

소유자는 현상변경을 실시하기 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문화청은 이에 대해 소유자에게 경비를 보조하거나 기술적 지도나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현상 변경 이후 완료 신고도 의무화한다.⁷²⁾ 한국에서는 현상변경에 대해 신고와 허가의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완료 신고를 의무화하는 점과 구별된다.

□ 경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존활용계획 제출⁷³⁾

문화청은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를 대상으로 6가지의 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는 구체적으로 나뉘지만, 각 사업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보존활용계획'을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표 3-2]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경비 보조사업의 종류

분류	지원 대상	주요 보조 내용	보조 제외 내용
설계감리사업	소유자·관리자	설계감리비의 50%	공사경비
공개활용사업	지자체·법인 등	보존활용계획 수립 경비 등 사업비의 50%	수리공사비
재해복구사업	대규모 재해 시 실시	내진보강 등 공사경비, 설계감리비, 기술지도비의 50%	활용설비·안전대책 관련 비용
미관향상정비사업	소유자·관리자 (관광진흥사업 지정도시)	공사경비, 설계감리비, 기술지도비의 50%	구조부분 공사경비
활용환경강화사업	지자체·법인 등 (관광진흥사업 지정도시)	보존활용계획 수립 경비 등 사업비의 50%	수리공사비
지역심볼정비 등 사업 중 기능유지사업	소유자·지자체	공사경비, 설계감리비의 50%	공개활용 경비

출처: 文化庁. (2022).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3. 文化庁, pp.2-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보존활용계획은 보존의 현황과 과제, 보존관리 조치사항, 방재방법 조치사항, 환경보전 조치사항, 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보존관리 조치사항'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 보전, 기타부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의 부분별로 현황을 확인한 후 보존해야 할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에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72) 文化庁. (2021).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2. 文化庁, p.2.

73) 文化庁. (2022).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3. 文化庁, pp.16-21.

[표 3-3]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보존활용계획의 내용 구성

내용	
보존의 현황과 과제 해당 건조물의 보존관리, 환경보전, 방재(방화·방범)의 관점에서 각각 현황과 과제를 기재	활용의 현황과 과제 해당 건조물의 현재 활용내용과 해당 활용에 관련된 보존 및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과제를 기재
보존관리 조치사항 보존과 활용 현황과 과제를 바탕으로 보존부분, 보전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한 '부분구분도'를 작성하여 첨부	환경보전 조치사항 주위 환경에 대해 환경보전의 기본방침, 주변 환경에서의 방재대책 등을 기재하고 환경보전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설정하여 보존구역, 보전구역, 정비구역의 3개 구역을 표시한 '환경보전계획도'를 작성하여 첨부
 [부분구분도의 사례]	 [환경보전계획도의 사례]
방재방법 조치사항 방재·방법의 현황과 과제를 바탕으로 사업 기간 중에 실시하는 방화·방범·내진·내풍 대책 등에 관한 계획을 기재하고 '방재설비 계획도'를 작성하여 첨부	※ 용어의 정의 -보존(保存)부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엄밀한 보존이 요구되는 부분 -보전(保全)부분: 개조로 문화재로서의 원상이 상실되었으나 유지·보전이 요구되는 부분 -기타부분: 개조로 문화재로서의 원상이 상실되고 있으며 활용 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편이 허용되는 부분
 [방재설비 계획도의 사례]	

출처: 文化庁. (2022).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3. 文化庁, pp.16-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출처: 文化庁. (2022).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3. 文化庁, pp.17-18, 20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의 쟁점

- 현상변경에 의한 보존가치의 상실

한국과 비교하여 현상변경 신고 대상의 범위는 넓으나, 신고만으로 현상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현상변경에 따라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이 말소된 사례가, 소실 등에 의해 말소된 사례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⁷⁴⁾



[그림 3-3]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출처: 文化庁. (2021).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き 2. 文化庁, p.9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 「건축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

한국과 마찬가지로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는 「건축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3-4]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

분류	주요 내용
건축기준법	· 건축물의 부지·설비·구조·용도에 대해 그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
소방법	·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이에 속하는 물건을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용도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르게 적용
경관법·도시계획법	· 경관 형성과 건축물 높이 규제 등 일정 지역 보전 및 정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배리어 프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문화재 건조물 중에 적용이 제외되기도 함

출처: 文化庁. (2021). NPO 等による文化財建造物管理活用の手引き(手引き書). 文化庁, pp.22-23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74) 1996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말소 총 779건 중, 문화재 지정에 의한 말소가 463건, 소실에 의한 말소가 42건, 해체 등 현상변경에 의한 말소가 274건으로 조사되었다. (文化庁.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yukei_kenzobutsu/massho/index.html (검색일: 2023.06.21.))

2)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수리체계

①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의 개요

□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례의 정비

• 조례의 목적

2000년대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을 중심으로 지방창생이나 매력 있는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활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건축기준법」 및 현행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배경 하에, 국토교통성은 「건축기준법」의 제3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례」의 정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⁷⁵⁾

※ 「건축기준법」(법률 제201호, 2023) (일부 발췌)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 및 이에 따른 명령, 조례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소화25(1950)년 법률 제214호) 규정에 따라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특별사적 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서 지정 또는 임시 지정된 건축물
2. 「구중요미술품등의보존에관한법률」(소화8(1933)년 법률 제43호) 규정에 따라 중요미술품 등으로 지정된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의 조례, 그 밖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상변경 규제 및 보존을 위한 조치가 된 건축물(제4호에서 “보존건축물”이라 한다)로서 특정 행정청이 건축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것
4. 제1호나 제2호의 건축물 또는 보존건축물이었던 것의 원형을 재현하는 건축물로서 특정 행정청이 건축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원형의 재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것



[그림 3-4]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례」 정비를 촉진하는 대상

출처: 국토교통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普及版). 国土交通省, p.2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75) 国土交通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本文). 国土交通省, p.3.

• 보존건축물의 지정

이 조례에서 ‘역사적 건축물’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보존건축물’은 역사적 건축물 가운데 지자체가 건축심사회 동의를 거쳐 지정한 건축물로 정의되며, 보존건축물이 「건축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건축심사회는 여러 분야의 학식 있는 경험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건축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또한 보존건축물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자, 지자체장 등이 작성한 보존활용계획이 요구된다.⁷⁶⁾



[그림 3-5] 조례 제정에서 보존건축물의 활용까지의 절차

출처: 政策研究大学院大学・建築研究所, (2022). 歴史的建築物の活用と防火対策(資料). 政策研究大学院大学・建築研究所, p.6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 보존건축물과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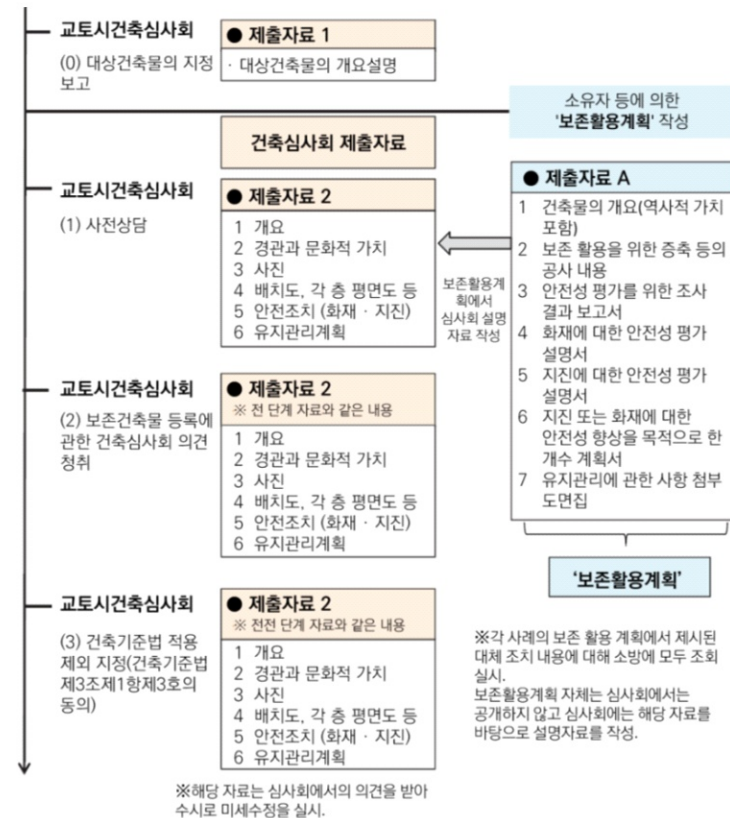
보존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 및 지자체의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이외의 역사적 건축물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또한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가 지자체의 보존건축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76) 国土交通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本文). 国土交通省, pp.3, 14-15.

②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수리체계의 주요 특징(교토시 사례)

□ 보존활용계획의 수립

보존건축물 지정 및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이 요구된다. 보존활용계획에는 건축물의 현황 조사, 보존하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한 계획,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그림 3-6] 보존활용계획 작성 과정(교토시 사례)

출처: 国土交通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本文). 国土交通省, p.28의 그림을 연구진 편집

[표 3-5]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보존활용계획의 내용 구성(교토시 사례)

분류	내용
건축물의 현황 조사	· 건축물 기둥기, 벽이나 기둥 등 구조부재의 부식과 같은 열화 상황, 발화와 연소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처마 또는 외벽 등의 구조, 내장 사양 등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한 내용 · 내진 진단을 실시하고 대상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나 구조 특성 등을 조사한 내용 · 대상 건축물이 「건축기준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나 항목(해당하는 조문 등)을 파악한 내용

분류	내용
	·부지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실측하여 부지 주변의 시가지 환경 영향을 검토한 내용
보존하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한 계획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 건축물의 가치를 근거로 하면서 지진과 화재에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수 계획 내용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구조 부재의 손상, 부식 기타 열화 상황, 소화기의 사용 기한의 확인, 자동 화재 경보 설비의 작동 확인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화한 내용

출처: 京都市. (2019). 歴史的な価値を有する建築物を安全に保存し, 活用することで, 次世代へ継承する制度 一京都市 歴史的建築物の保存及び活用に関する条例, 京都市都市計画局建築指導部建築指導課. 京都市, pp.3-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수립

보존건축물은 「건축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지자체는 보존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 사례로 교토시가 2021년에 발간한 목조 및 비목조 보존건축물에 대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은 지진, 화재, 주변 환경 보전 등에 대해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원칙과 의무사항, 대체조치를 제시한다.

[표 3-6] 「보존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지침(비목조건축물판)」의 주요 내용(교토시 사례)

분류	주요 내용	
지진에 대한 안전성	·현상 조사 ·내진진단, 내진 개수 계획 및 내진 개수 공사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전문가 내진진단 실시와 내진 개수 계획 작성 필요) ·증축을 하는 경우	
화재에 대한 안전성	·기본 방침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의 예시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가지는 경관적,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의 예시 ·용도나 규모에 따른 방화·대피 대책 실시 ·방화·피난 규정에 부적격한 부분에 대한 대체 조치(내화구조, 방화설비, 방화구획, 내장재료의 제한, 피난설비) ·건축물로의 용도 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한 방화·피난 규정 강화	
보존 대상 부지 주변의 환경보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내 건축물 제한 ·도로 사선 제한	·용도 제한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 ·일조에 의한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지 내 건축물의 인정	·부지 내 건축물의 인정	

출처: 京都市. (2021). 保存建築物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指針(非木造建築物版). 京都市, pp.6-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보존건축물(비목조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침의 주요 내용

1. 기본 방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대부분은 증축 등을 할 때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가지는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①특히 화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방화·피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②용도나 규모에 따른 방화·대피 대책 실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은 화재에 대해 더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을 보존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③법 적용을 제외하는 항목·부분의 한정과 대체 조치에 의한 안전성 확보: 각각의 대상 건축물 상태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방화·피난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적합하게 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가지는 경관적,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이 되는 항목이나 건축물 부분을 한정하고 법 적용을 제외함
- 법에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며, 적합하게 하더라도 건축물이 가지는 경관적, 문화적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름

2. 법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의 예시

- 복도나 계단, 계단참의 폭에 관한 규정: 복도나 계단 및 계단참 폭에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상 적합하게 하는 개수공사가 곤란한 경우
- 내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입지나 규모 등에 따라 내화건축물로 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벽돌조 등에서 목재 조립의 바닥·돌보 등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비상용 진입구: 비상용 진입구나 대체할 수 있는 창문 등이 없어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3. 용도나 규모에 따른 방화·대피 대책 실시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대규모 시설(바닥면적 1,500㎡ 이상)은 화재에 더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의 이용 특성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방화·대피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존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1, 2, 3, 4분류로 나누고 용도 분류와 대상 건축물 층수(3층 이상 / 2층 이하)에 따라 방화·대피 대책을 실시함

[교토시 보존건축물(비목조 건축물)에 대한 건물 분류에 따른 방화·대피 대책]

조치 항목	건물 분류						
	제1분류		제2분류	제3분류		제4분류	
	3층 이상	2층 이하		3층 이상	2층 이하	3층 이상	2층 이하
출화 방지	●	●	●	●	●	●	△
출화의 조기 지각	●	●	●	●	●	●	●
초기 소화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 설치	△		△	△		△	
소화기 등 설치, 초기 소화체제 정비	●	●	●	●	●	●	●
연소 확대 방지, 연기 확산 방지	●	△	●	●	△	△	
피난 경로 확보							
양방향 피난 확보	△	△	△	△		△	
피난경로 명확화, 피난유도체제 정비	●	●	●	●	△	△	△

● : 대책이 필요한 조치 항목

△ : 원칙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안전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출화 방지: 화기 사용실의 한정, 화기 사용 장소의 불연화·구획화, 실내 가연 물량 억제(방염 커튼이나 침구 등의 사용), 전기설비 등의 갱신, 누전브레이커 설치 등

※ 출화의 조기 지각: 화재경보기(자동화재경보설비 등) 설치 등

※ 초기 소화: 스프링클러·드레인처 등 자동 소화설비 설치, 소화기·실내 소화전 등 설치, 종업원 등에 의한 초기 소화체제 정비(소화훈련 실시) 등

※ 연소 확대 방지, 연기 확산 방지: 방화 구획·방연 구획의 형성, 방연벽 설치, 배연창·배연설비 설치 등

※ 피난 경로 확보: 양방향 대피 확보(2개 이상의 계단 설치 등), 안전구획(대피에 이용하는 통로와 거실을 불연재료나 지폐식 문으로 구획하고 유호한 배연설비를 설치한 것) 등의 설치, 유도등이나 비상용 조명장치 설치 등을 통한 피난경로 명확화, 종업원 등에 의한 피난 유도 체제 정비(대피 훈련 실시) 등

출처: 京都市. (2021). 保存建築物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指針(非木造建築物版). 京都市, pp.9-16.

표 출처: 京都市. (2021). 保存建築物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指針(非木造建築物版). 京都市, p.11의 표 재인용

※ 교토시 보존건축물 시메이 회관(紫明会館) 수리 사례

1. 건축물 개요

- 건축연도: 1932년
-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등록: 2015년
- 보존건축물 등록: 2016년

2. 보존활용계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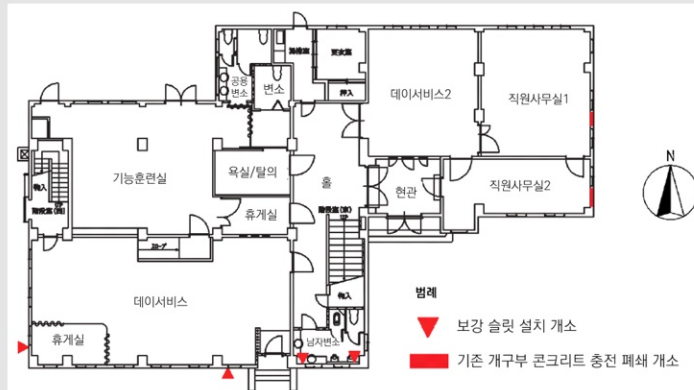
- 공사종별: 용도변경
- 용도: 활용 전(사무소), 활용 후(노인복지시설, 사무소)
- 구조 | 층수: 철근콘크리트조와 일부 목조 | 3층 (활용 후 변동 없음)
- 건축면적 | 연면적: 335.47㎡ | 821.33㎡ (활용 후 변동 없음)
- 용도지역 | 방화지역: 제2종주거지역 | 준방화지역
- 설계자: (의장) moda architects 1급 건축사사무소
(구조) 유한회사 ARC시스템플랜



[시메이 회관 전경]

3. 적용이 곤란했던 「건축기준법」과 대체 조치

기준	현황	대체 조치
「건축기준법」 제20조	기존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내진 진단 기준과 개수 설계 지침에 근거한 내진 진단 결과 X·Y 방향 1층에 극취성 기둥이 존재해 X방향 1층에서 내진 성능이 좋지 않았음	내진 개수 촉진법이 요구하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장 형태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동측 벽 개구부 2개소를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폐쇄하고 남측의 4개소에 내진 슬릿(slit)을 추가
「건축기준법」 제25조	노인복지시설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므로 천장 및 벽의 마감을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상태는 부적합했음	누전 등에 의한 화재 방지, 화재 조기각지, 피난경로 명확화, 초기 소화 등을 위해 이하의 조치를 취함 ① 복서계단 1층 계단참에 방연수벽(防煙垂壁) 설치, 감진 브레이커 설치, 비상용 조명 설치, 유도등 설치, 자동 화재 경보 설비 설치, 소화기 설치 ② 화기 사용실 설치하지 않음, 모든 실내 금연, 대피 훈련 계획의 책정 및 직원 훈련을 철저히 함, 모든 실내 피난 훈련(10분 이내 대피 완료)을 연 2회 실시



[수리 후 1층 평면도]

출처: 京都市. (2019). 歴史的な価値を有する建築物を安全に保存し, 活用することで, 次世代へ継承する制度 — 京都市歴史的建築物の保存及び活用に関する条例. 京都市都市計画局建築指導部建築指導課. 京都市, p.13.

사진 출처: (상)文化遺産オンライン. <https://bunka.nii.ac.jp/heritages/detail/285410> (검색일: 2023.07.10.); (하)国土交通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別冊事例集). 国土交通省, p.14의 그림 재인용

2. 영국의 등재건축물 수리체계⁷⁷⁾

1) 등재건축물 제도의 개요

영국의 지정문화유산은 크게 보물, 선정 기념비, 등재건축물, 등록 공원 및 정원, 난파선 보호지역, 등록 전쟁유적지, 보존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등재건축물 제도의 목적은 건물의 특별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계획 규제 대상으로 삼아 후세를 위해 보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등재 대상은 건축물, 교량, 기념비, 조각, 꽃말 등을 포함한다.⁷⁸⁾ 등재건축물의 승인이나 규제, 보호관리에 대한 법은 「1990년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이 현행 근거법이다.⁷⁹⁾

【표 3-7】 영국의 지정문화유산 유형

유형	등재 및 목록 관리 주체	근거법
보물(Treasure)	• 중앙부처(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1996 보물법(Treasure Act 1996)
선정 기념비(Scheduled Monuments)	• 승인기관: 중앙부처(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등재 추진 및 관리기관: 히스토리컬 잉글랜드	• 1979 고대기념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The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s)	• 승인기관: 중앙부처(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등재 추진 및 관리기관: 히스토리컬 잉글랜드	• 1990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 Act 1990)
등록 공원 및 정원(Registered Parks and Gardens)	• 승인기관: 중앙부처(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등재 추진 및 관리기관: 히스토리컬 잉글랜드	• 1953 역사적 건축물 및 고대기념물법(The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 1983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 1983)

77) 잉글랜드의 문화미디어체육부(현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는 등재건축물 관련 권한과 책임을 2005년부터 비정부 공공기관인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로 위임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2015년에 히스토리컬 잉글랜드(Historic England)와 잉글리시 헤리티지로 분리되었다. 히스토리컬 잉글랜드는 보조금, 연구와 자문, 등재 절차, 보존, 관리 등의 업무를,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국가 소유인 내셔널 헤리티지 콜렉션 중 약 400여 개소의 역사적 건축물, 기념비, 유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잉글랜드 이외 지역에서는 히스토리컬 잉글랜드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도 연구나 보존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히스토리컬 잉글랜드의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잉글랜드 및 히스토리컬 잉글랜드로 한정한다. (UK Parliament. (2022). Reviewing the National Heritage Act 1983.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reviewing-the-national-heritage-act-1983> (검색일: 2023.04.10.))

유형	등재 및 목록 관리 주체	근거법
난파선 보호지역(Protected Wreck Sites)	• 승인기관: 중앙부처(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 부(DCMS)) • 등재 추진 및 관리기관: 히스토리 잉글랜드	• 1973 난파선보호법(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등록 전쟁유적지(Registere d Battlefields)	• 승인기관: 중앙부처(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 부(DCMS)) • 등재 추진 및 관리기관: 히스토리 잉글랜드	• 1953 역사적 건축물 및 고대기념물법(The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 1983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 1983)
보존 구역(Conservation Areas)	• 지자체	• 1967 도시 어메니티법(Civic Amenities Act 1967) • 1990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 (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 Act 1990)

출처: GOV.UK. Guidance: Historic Environment. <https://www.gov.uk/guidance/conserving-and-enhancing-the-historic-environment> (검색일: 2023.04.12.); 문화재별 국문명은 다음을 참조: 심경미 외.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pp.214-216.

2) 등재건축물 수리체계의 주요 특징

① 현상변경의 승인

□ 현상변경 승인 절차

등재건축물 제도는 거주할 수 있는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물의 특별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 지방계획당국의 허가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히스토리 잉글랜드는 등재가 건축물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보존 명령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며, 건축물의 특별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행위(현상변경, 확장 증축, 해체, 철거 등)가 일어날 때 근거법 8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재건축물 승인'을 받도록 한다.⁸⁰⁾

78) GOV.UK. Guidance: Historic Environment. <https://www.gov.uk/guidance/conserving-and-enhancing-the-historic-environment> (검색일: 2023.04.12.); 문화재별 국문명은 다음을 참조: 심경미 외.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pp.214-216.

79) legislation.gov.uk. 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0/9/contents> (검색일: 2023.04.10.)

80) Historic England. "Listed Buildings - What can I do with my listed building?", <https://historicengland.org.uk/listing/what-is-designation/listed-buildings> (검색일: 2023.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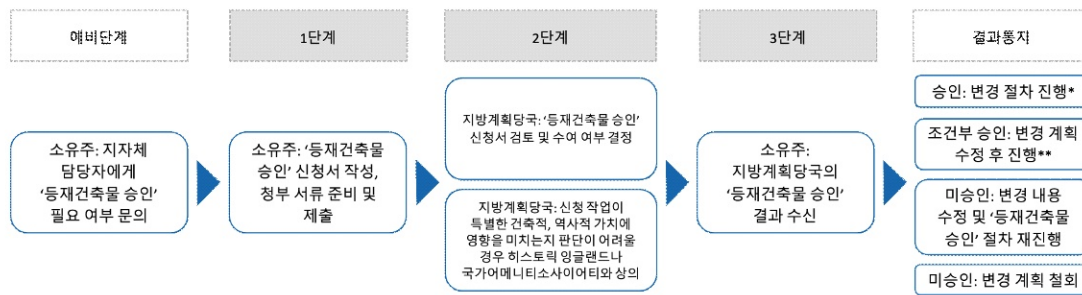
[표 3-8] 등재건축물의 현상변경 관련 근거법과 그 내용(해당 부분 발췌)

법	절	제목	내용
1990년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7절	등재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대한 규제	해당 작업에 대한 승인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등재건축물의 특별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철거나 변경, 증축 작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8절	작업 허가: 등재건축물 승인	(1) 등재건축물의 변경이나 증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된다. (a) 지방 계획 당국이나 장관이 서면 허가를 수여 (b) 서면 허가에 첨부된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작업 실시 (2) 등재건축물의 철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된다. (a) 지방 계획 당국이나 장관이 서면 허가를 수여 (b) 작업 실시를 위한 제안서가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에 통고된 경우 (c) 왕립위원회나 기타 기관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마쳤을 때(최소 기간: 1개월) (d) 서면 허가에 첨부된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작업 실시
	9절	위법 행위	(1) 7절의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2) 등재건축물 승인 내용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변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a) 건강, 안전 문제나 건물의 보존을 위해 긴급 작업이 필요했을 때 (b) 임시 지원, 대피소 제공이나 수리 작업을 위해 건물의 안전, 건강, 보존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을 때 (c) 즉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을 때 (d) 작업의 정당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지방계획당국에 최대한 빠르게 전달했을 때

출처: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0/9/contents> (검색일: 2023.04.14.); Historic England. (2021). Listed Building Consent: Historic England Advice Note 16. Historic England, p.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한국은 등록문화재의 경우 외관의 1/4 이상이라는 정량적인 규제 기준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가치 훼손 가능성 여부’라는 정성적인 기준으로 승인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의 논의를 필수적인 예비 단계로 설정한다. 이후 소유주가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1단계), 등재건축물의 등급에 따라 보고를 받는 기관이 달라진다(2단계). 등재건축물 등급 I과 II*의 경우에는 반드시 히스토릭 잉글랜드에 보고해야 하며, 등급 II의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히스토릭 잉글랜드에 보고한다. 학회 및 협회들로 구성된 국가어메니티소사이어티(National Amenity Society)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철거 작업이 계획된 경우인데, 철거 작업이 아니더라도 지방계획당국이 추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하는 국가어메니티소사이어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⁸¹⁾

81)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5). Arrangements for Handling Heritage Applications – Notification to Historic England and National Amenity Societies and the Secreta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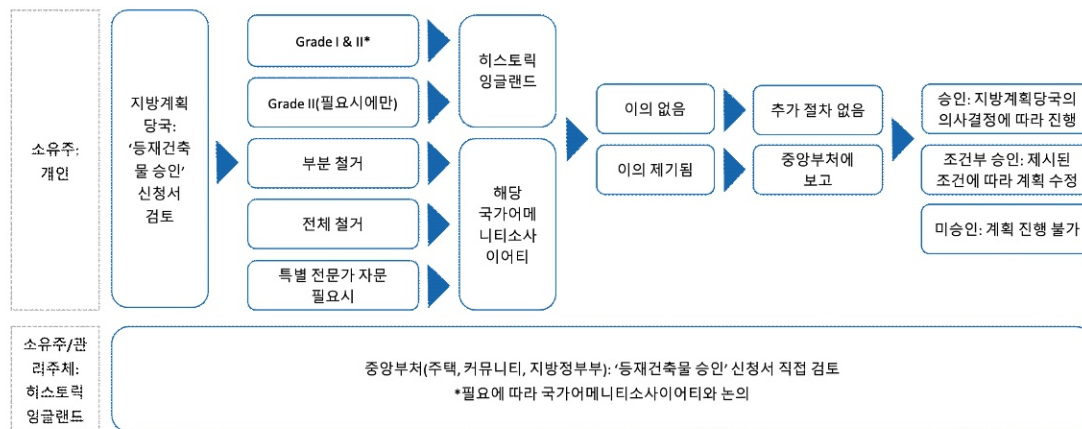


[그림 3-7]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등재건축물 승인 절차

※ 승인 작업은 승인일로부터 5년 또는 당국이 지시한 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관련 작업을 시작해야함

※ 조건부 승인일 경우 지방계획당국에 조건의 재검토(변경 및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계획당국 또는 장관은 이에 따라 조건을 변경, 폐지, 추가할 수 있음

출처: Historic England. (2021). Listed Building Consent: Historic England Advice Note 16. Historic England, pp.1-17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8] 지방계획당국의 외부(상위) 기관 보고·자문 시스템(그림 3-7의 2단계 상세 설명)

출처 :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5). Arrangements for Handling Heritage Applications – Notification to Historic England and National Amenity Societies and the Secretary of State (England) Direction 2015.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pp.1-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가어메니티소사이어티는 지방계획당국이 발신한 등재건축물 승인 문서와 결과를 검토하고 자체 조사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연간 6번의 합동위원회를 진행하며, 자문 사례, 정책이나 법안의 수정 필요성, 세금 문제 및 건축물 보존관리 정책 등을 논의한다.⁸²⁾

State (England) Direction 2015.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pp.1-3.

82) Joint Committee of the National Amenity Societies. <https://www.jcnas.org.uk> (검색일: 2023.04.15.)

[표 3-9] 등재건축물의 전체, 부분 철거 시 보고를 받는 국가어메니티소사이어티

영문명	한글명	특징
The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s	고대건축물보호협회 (설립: 1877)	건축 전문가, 공예가 교육과정, 자문, 리서치 등
The Ancient Monuments Society	고대기념물협회 (설립: 1924)	역사적 건축물 보호 활동, 역사환경 홍보, 자문 등
The 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영국고고학협회 (설립: 1944)	영국고고학 학회지 운영, 고고학축제 진행, 학술상 수여, 등재건축물 신청서 검토 지원 등
The Georgian Group	조지안그룹 (설립: 1937)	조지안 시대(1700~1837)에 지어진 건축물의 변경, 보존, 관리 지원 및 자문
The Victorian Society	빅토리안소사이어티 (설립: 1958)	빅토리안 시대(1837~1914)에 지어진 건축물의 변경, 보존, 관리 지원 및 자문, 사례 조사 공유, 강의 등의 행사운영
The Twentieth Century Society	20세기 소사이어티 (설립: 1979)	1914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보존, 홍보(잡지 발행), 관리 활동, 학회나 강의 등 학술 행사 운영

출처: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5). Arrangements for Handling Heritage Applications - Notification to Historic England and National Amenity Societies and the Secretary of State (England) Direction 2015.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p.2; S·P·A·B. <https://www.spab.org.uk>; HISTORIC BUILDING & PLACES. <https://hbap.org.uk>; 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https://www.archaeologyuk.org>; THE GEORGIAN GROUP. <https://georgiangroup.org.uk>; THE VICTORIAN SOCIETY. <https://www.victoriansociety.org.uk>; Twentieth Century Society. <https://c20society.org.uk> (검색일(공통): 2023.04.14.)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가치 판단 근거

현상변경에 대한 등재건축물 승인 절차에서는 가치 훼손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계획당국은 등재건축물 승인 신청서를 검토할 때, 등재 시 인정받은 건축적, 역사적 가치의 유지를 위해 건축물과 환경 및 해당 가치를 그대로 보존(preserving)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에서 보존이란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⁸³⁾

□ 현상변경 관련 법적 규제

• 「건축법」의 건축 규제

잉글랜드에서는 1984년 제정된 「건축법(Building Act)」에 의해 건축 규제(Building regulations)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⁸⁴⁾ 등재건축물, 보존 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83) Historic England. Legal Requirements for Listed Building and Other Consents: Language difference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decisionmaking/legalrequirements> (검색일: 2023.04.18.)

84) Historic England. Building Regulations, Approved Documents and Historic Buildings. <https://hist>

이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모두 건축 규제 대상이다. 역사적 건축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건축 규제의 적용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979년 「고대 기념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에서 명시한 기념물이나 지역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⁸⁵⁾ 이는 대부분 20세기 초반 이전에 이미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된 유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현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 3-10] 등재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신축이 아닌 건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경우	
1	용도변경
2	단열 관련 요소(벽, 바닥, 지붕)의 개조나 교체
3	증축
4	‘제어 서비스(예: 보일러)’ 또는 제어 부품(예: 시스템 창호)이 설치된 건축물
5	중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예: 1,000㎡ 이상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제곱미터당 냉난방 용량을 늘릴 때)
「건축법」 규제를 받는 용도변경의 종류	
1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2	플랫(주거용 아파트)으로 만드는 경우
3	호텔이나 하숙집으로 용도 변경
4	주거시설(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로 용도 변경
5	공공건물로 변경
6	건물이 더 이상 부칙 2번(건축 규제 면제 대상)의 클래스 1~6 등급(다른 법이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찾지 않는 건물 등)에서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
7	하나의 주요 이상이 포함된 건물의 주요 수 변경
8	주거 목적으로 방을 추가할 때
9	하나의 방 이상이 있는 건물에서 방의 수 변경
10	상점으로 용도 변경(이전에는 상점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건물에 해당)
11	규정 7(4)(지면으로부터 18m 이상 건물 중 주거시설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건물을 영향을 받는 건물로 변경

출처: Historic England. Building Regulations, Approved Documents and Historic Building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regulations> (검색일: 2023.04.24.);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0). Manual to the Building Regulations: A code of practice for use in England.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3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010 차별금지법」

「건축법」의 건축 규제 외에 비교적 최근에 역사적 건축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2010 차별금지법(The Equality Act 2010)」이 있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목적은 연령,

[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regulations](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regulations) (검색일: 2023.4.24.)

85) Historic England. Building Regulations, Approved Documents and Historic Building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regulations> (검색일: 2023.04.25.)

장애, 성 전환, 혼인 여부, 동성 결혼, 인종, 종교나 신념, 성별,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⁸⁶⁾ 역사적 건축물에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장애 차별에 관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반려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접근성 개선보다 유산의 원형 보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히스토리 잉글랜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확보 작업이 건물의 가치나 특별한 이익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장애인에게 불리한 물리적인 요소가 있거나 지원 서비스가 없을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정'일 것을 권장한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정'은 건물 사용 규정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건물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정보 제공이나 스탬프 충전 등 보조 서비스를 구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⁸⁷⁾

각 등재건축물에 적용되는 물리적 접근성 개선 방법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과 서비스 보충을 통해 전체적인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2010 차별금지법」은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보다 우선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 사회가 주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모범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⁸⁸⁾ 히스토리 잉글랜드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⁸⁹⁾

② 수리 관련 조치와 가이드라인

□ 등재건축물 보존·관리를 위한 지방행정당국의 개입

용도변경과 같이 허가가 필요한 공사는 앞서 살펴본 '등재건축물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소한 정비 등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등재건축물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을 잘 정비된 상태로 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⁹⁰⁾ 하지만 등재건축물

86)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section/4> (검색일: 2023.04.027.)

87) Historic England. "Equality of Access Works to Listed Buildings and Other Heritage Asset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compliantworks/equalityofaccess> (검색일: 2023.04.27.)

88) 관련 부처의 모범사례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6). Planning and access for disabled people: a good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89) 히스토리 잉글랜드에서는 2015년에 「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와 「Easy Access to Historic Landscapes」 등을 발행했다.

90) Historic England.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har/urgentworks> (검색일: 2023.4.16.)

의 정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등재건축물의 보존 상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방당국이 직접 건물의 수리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⁹¹⁾ 이 경우에 이행되는 것이 긴급 조치 통지(Urgent works notices)이며, 히스토리컬 잉글랜드에서는 이를 위한 보조금 제도(긴급 조치 통지 이행을 위한 보조금(Grants to Underwrite Urgent Works Notices))를 운영하고 있다. 히스토리컬 잉글랜드 가이드스 문서 중 2011년 10월 발행, 2023년 1월 개정된 「노후화를 멈추기(Stopping the Rot)」는 지방당국이 4단계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언, 통지 이행 방법, 통지 이행 과정과 타임라인, 사례 연구를 담고 있다. 이른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리공사가 커지거나 다른 건축물의 보존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 가이드스는 단계적 상황에 알맞은 여러 조치의 적용법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지방당국의 빠른 결정을 돕고자 한다.

[표 3-11] 보존·수리 작업이 필요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지방 당국의 단계별 조치

단계	근거법	내용
1단계: 215절 공지	「1990년 도시 및 국토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 215절	건축물이 방치되어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에게 건물이나 토지 상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2단계: 긴급 조치 통지	「1990년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 법(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 제1편 제5장 제 54조	비어 있는 등재 건축물의 내후성 강화 작업이 시급할 때 지방 당국이 직접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단계: 수리 통지	「1990년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 법(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 제1편 제5장 제48조	지방 당국이 등재 건축물의 양호한 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방 당국이 해당 건축물을 강제 매입할 수 있다.
4단계: 강제 매입 명령	「1990년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 법(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 제1편 제5장 제47조	모든 조치가 실패할 경우 최후의 수단은 지방 당국이 등재 건축물을 강제로 취득하여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 보존 신탁 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후자가 더 일반적인 방법이다.

출처: Historic England. (2011). Stopping the Rot: A Guide to Enforcement Action to Save Historic Buildings - Summary. Historic England, p.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수리 관련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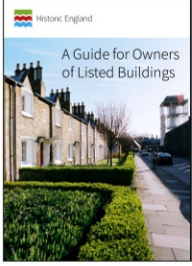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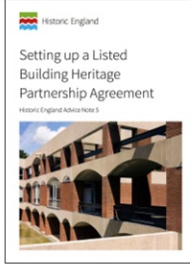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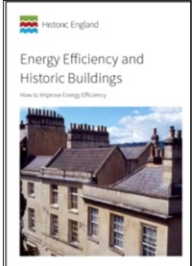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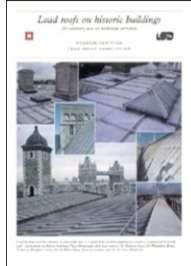
- 광범위한 가이드언스의 제공

히스토리컬 잉글랜드는 문화유산과 역사환경의 등재와 보존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가이드

91) Historic England.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har/urgentworks> (검색일: 2023.4.16.)

스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데 히스토리 잉글랜드의 관리 대상 중에서 등재건축물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간 발간된 가이드스나 연구결과를 보면 대상을 등재건축물로 한정시키지 않고 폭넓은 역사적 건축물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 히스토리 잉글랜드의 전신인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2000년대 이전까지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포커스를 둔 출판물을 발행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 원칙과 방법에 대한 조언(The Repair of Historic Buildings: Advice on principles and methods)』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일상적인 건물 정비, 구조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비 공사, 배수 개선 공사, 지의류 예방, 외장재 재설치 공사, 자재별 구조 개선 공사의 구성으로,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소규모 수리 및 정비, 증축 공사에 대해 설명한다. 히스토리 잉글랜드로 개편된 이후부터는 수리나 정비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가이드스 문서 또는 설명을 히스토리 잉글랜드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건물에서 목재의 부패와 조치(2019), 건설 환경(2014), 콘크리트 건물 보존(2013), 보존의 기초(2013), 흙, 벽돌, 테라코타(2015), 유리 및 글레이징(2012), 금속(2012), 모르타르, 회반죽(2012), 지붕(2013), 석재(2012), 목재(2012) 등 세부분야별 연구서도 발간되었다.

[표 3-12] 히스토리 잉글랜드의 가이드스 사례

분류	사례
등재 건축물 대상	 등재건축물 소유주를 위한 가이드라인(2016)  등재건축물 승인(2021) ※현상변경 시 필수 참고  등재건축물과 부속대지 (2018)  등재건축물 유산 파트너십 합의(2015)
역사적 건축물 대상	 에너지 효율과 역사적 건축물 (17권)  노후화를 멈추기(2023)  역사적 건축물과 납지붕 (1997)  전통 농가의 수리와 관리 (2017)

출처: Historic England, Current Guidance and Advice,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find/a-z-publications> (검색일: 2023.05.01.)
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또한 각 유산의 성격과 가치 보존의 방향성, 적용할 수 있는 변경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문서는 가장 기초 단계에서 참고하고, 히스토리컬 잉글랜드의 지역 사무소나 관할 지방 당국의 담당자와 직접 논의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 건축물 노후화를 방지하는 수리의 원칙

이처럼 히스토리컬 잉글랜드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건축물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속적인 사용이라는 원칙에 기인한다. 따라서 현대적 활용을 권장하며 장기적 보존관리를 위해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을 활용하거나 건물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개조를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⁹²⁾

다음은 히스토리컬 잉글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수리의 원칙이다. 수리의 목적은 결함의 원인을 해결하여 장기적인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우선 수리 작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수리공사를 계획하기 전에 건물의 가치 평가, 포괄적인 점검과 조사, 다양한 수리 방식 검토 등을 포함한 기초 단계를 꼭 거칠 것을 권장한다. 이 기초 단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리공사가 아니더라도 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이나 실측 등에 수리 보조금을 지급하곤 한다. 또한 최대한 건물의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고 변경을 최소화하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명시한다.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개조나 변경이 일어났던 건축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절한 수리 작업이 건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수리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⁹³⁾

- 건물의 기존 맥락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된 기술과 자재만 사용한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알맞은 대체재를 사용한다.
- 건물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건물 구조의 기대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한다.
- 향후 작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작업은 잘 기록하고, 이 기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 작업은 향후 유지보수관리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92) Historic England. (2016). Making Changes to Heritage Assets: Historic England Advice Note 2. Historic England, p.1.

93) Historic England.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s/principles-of-repair-for-historic-buildings> (검색일: 2023.0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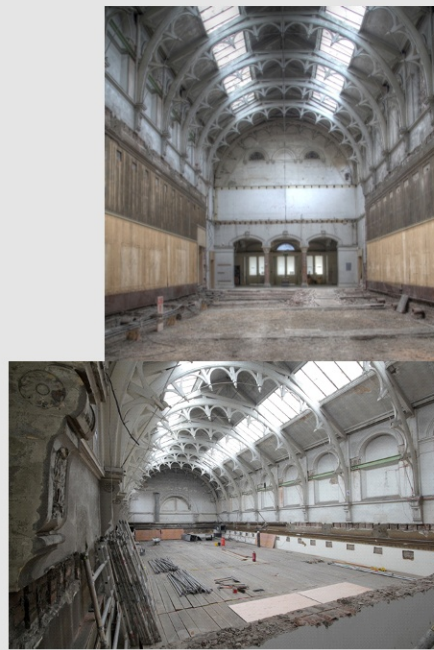
※ 영국의 등재건축물 수리 사례 (요크 아트 갤러리 (York Art Gallery, York))

- 등급: Grade II (19세기 후반 건물)
- 수리 연도, 사무소: 2013-2015, Simpson & Brown Architects

1879년 제2차 요크셔 순수 예술 산업 전시회를 위해 지어졌고, 1892년부터 아트 갤러리로 사용함. 현재는 14세기 회화부터 컨템포러리 아트를 소장하고 다양한 전시를 여는 공간으로 쓰임. 그러나 빅토리아풍의 전시장은 자연 채광이 너무 강하여 회화 전시공간으로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따라 1950년대에 이중 천장을 설치함. 하지만 이중 천장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방문객들은 장식 트러스, 천창, 세심히 세공된 회반죽 장식으로 구성된 지붕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음

2010년 레노베이션 공모전에서 Ushida Findlay 건축사무소와 Simpson & Brown Architects의 합작 제안서가 당선되어 메인 갤러리 공간의 대대적인 개조 공사가 진행됨. 그 중에서도 지붕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밀 갤러리 (Secret Gallery)'가 마련되어 건물의 초기 구조를 다시 드러내게 됨

역사적 건축물은 대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보다 몇 차례의 개축, 증축, 보수 공사를 거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간의 변화과정에서 어떤 단계로 되돌릴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히스토리 잉글랜드에서도 “과거에 부적절한 개조나 변경이 일어났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리공사를 통하여 기존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을 권장함. 공사는 총 8백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수행되었고, 그 중에서 국가복권기금이 350만 파운드를 지원함. 완공 후에는 2016 영국왕립건축가협회 내셔널 어워드, 2016 영국왕립건축가협회 요크셔 어워드, 2016 영국왕립건축가협회 보존 어워드 등을 수상함



수리 전



수리 후

출처: RIBA. (2019). Design Matters: Conservation, Modernisation & Adaptation of Existing Buildings. RIBA, p. 7; Historic England. Principles of Repair for Historic Building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s/principles-of-repair-for-historic-buildings>; York Art Gallery. Redevelopment 2015. <https://www.yorkartgallery.org.uk/redevelopment-2015> (검색일(공통): 2023.04.25.)

그림 출처: building. <https://www.building.co.uk/focus/york-art-gallery-show-time/5076607.article>; York Museum Trust. <https://www.yorkmuseumstrust.org.uk/news-media/latest-news/york-art-gallery-redevelopment-progress-in-pictures>; MUSEUMS+HERITAGE ADVISOR. <https://advisor.museumsandheritage.com/features/york-art-gallery-reopens-following-8m-redevelopment> (검색일(공통): 2023.04.25.)

3.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시사점

□ 보존가치의 관리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제도는 등록서류에 기재된 가치요소가 변경되는 것을 현상변경의 기준에 포함한다. 영국의 등재건축물 제도에서도 등재 시 인정받은 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는지의 여부로, 현상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등록·등재 단계에서부터 보존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의 수립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경비 보조사업에서는 사업 신청 시, 보존의 현황과 과제, 보존관리 조치사항, 환경보전 조치사항, 방재방법 조치사항, 활용의 현황과 과제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건축기준법」 적용 예외를 위해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례」를 통해 보존건축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화재, 지진 등 안전성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는 보존활용계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이 사업 시행 전에 수립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 다양한 수리 지침과 가이드라인 제시

일본에서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례」를 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보존건축물은 「건축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건축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영국에서는 소유자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방대한 범위의 세부분야별 수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와 관련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으로, 다양한 사례의 기초연구 및 기술사 연구를 바탕으로 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4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

심층조사를 통한 쟁점 도출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의 현황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의 심층조사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과제
-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의 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현황 파악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쟁점을 도출에 앞서 그 수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리 내용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일관된 형식의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수리에 대한 자료 수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조회·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2017년부터 2023년임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최근 7년간(2017-2023)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 자료: 총괄 현황표, 국고보조사업 관련 자료⁹⁴⁾

- 「국가등록문화재 총괄 현황표」, 「근대 사적 지정 현황」

문화재청은 매년 1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국가등

94) 현황 분석을 위해 활용한 조사자료의 세부정보와 출처는 [표 4-1]과 같으며, [표 4-2]에서 [표 4-39], [그림 4-1]에서 [그림 4-4]의 출처는 작성기관(연도)로 간략하여 표기한다.

록문화재 총괄 현황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자료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이를 통해 등록일자, 분류체계, 용도, 규모, 건립연도, 등록사유 등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근대 사적 지정 현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 행정자료로, 2021년 7월 31일자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이다. 다만, 현황자료들의 경우, '수량·규모'의 작성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도 있어, 분석에서 오류의 원인이 된다.

-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 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업내용서

국가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는 3년을 주기로 수행되며, 보고서의 '구조·양식/층수·높이' 정보를 활용하여 현황 정보를 보완했다. 또한 문화재청이 2023년 시행하는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과업내용서에 첨부된 현황표의 '재질' 항목으로 해당 문화재의 구조 또는 입면재료가 표기되어 있어, 재질에 대한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2017-2022)」,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제2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에 근거하여 구축·운영되는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사업의 내역사업과 지출세목, 수행기관,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목적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사업비가 누락되어 0으로 표기되는 경우,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하고 있는 각 연도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와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일반) 세부사업 지침」을 참조했다.⁹⁵⁾ 2017-2023년 국고보조사업의 연도별 사업내용은 '사업내용'의 작성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설계, 수리, 정비, 매입, 조사 등으로 재분류했다.

- 문화재 수리실명제

문화재청은 국고보조사업의 단계별(설계 승인, 착수 신고, 설계 변경, 완료 신고)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현행화되지 않아 정보 누락이 많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한다.⁹⁶⁾

95) 문화재청은 당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을 각 지자체에 공지하고 있다. 각 자료마다 정보 오류 및 누락 가능성이 있어, 수리 현황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연구의 한계로 한다.

96)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자문회의(2023.04.07.)를 통해 확인

[표 4-1] 조사 자료의 목록

분류	자료명
기본 정보	문화재청. (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2023.06.30.).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6256&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b%93%b1%eb%a1%9d%eb%ac%b8%ed%99%94%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7.06.)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 (2021.07.31.).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5369&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a%b7%bc%eb%8c%80+%ec%82%ac%ec%a0%81&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6.21.)
	문화재청. (2022). 2022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 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1). 2021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 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0).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 분야) 정기조사. 문화재청
국고 보조 사업	문화재청. (2019). 2019년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8).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3).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업내용서. 문화재청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https://www.gosims.go.kr (검색일: 2023.09.15.)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일반) 세부사업 지침. https://opengov.seoul.go.kr (검색일: 2023.09.18.)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실명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vmnc/trdlist01.jsp&mn=NS_03_05_01 (검색일: 2023.07.12)

출처: 연구진 작성

□ 조사 대상: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재는 건축물, 건축물(공간), 건축(시설물), 건축(토목시설물), 건축(기타시설물), 동산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건축(토목시설물)’은 교량, 터널, 도로, 관개수로 등, ‘건축(기타시설물)’은 건물터, ‘건축(시설물)’은 탑 2기 및 우물 1개소로 구성된 철도 관련 시설물로 구성되며, ‘건축물(공간)’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약 50%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근대사적은 사적 총 526개소 중 문화재청에서 근대사적으로 분류한 4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표 4-2] 유형(대분류)별 국가등록문화재의 개소

대분류	건축물	건축 (토목시설물)	건축 (기타시설물)	건축 (시설물)	건축물 (공간)	동산	민속 마을	계
개소	491	67	29	13	8	346	1	955
(%)	(51.4)	(7.0)	(3.0)	(1.4)	(0.8)	(36.2)	(0.1)	(100.0)

출처: 문화재청.(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등록·지정 현황

□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현황

- 종교, 주거숙박시설(각 17.7%)이 많고, 주로 목조, 전라지역에 다수 분포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시설별로는 총 491개소 중 87개소(각 17.7%)인 종교시설, 주거숙박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고,⁹⁷⁾ 이어서 업무시설(84개소, 17.1%), 교육시설(74개소, 15.1%)이 많았다. 구조양식별로는 목조가 전체 39.3%인 193개소로 가장 비중이 많았고, 이어서 조적(182개소, 37.1%), 콘크리트(80개소, 16.3%) 순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전라가 33.2%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상(19.8%), 서울(14.5%) 순이었다.

[표 4-3] 용도시설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대분류	종교	주거숙박	업무	교육	인물기념	공공	산업	의료, 문화 집회, 상업	군사, 전쟁	기타 시설물	합계
개소	87	87	84	74	23	39	25	52	12	8	491
(%)	(17.7)	(17.7)	(17.1)	(15.1)	(4.7)	(7.9)	(5.1)	(10.6)	(2.4)	(1.6)	(100.0)

출처: 문화재청.(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4] 구조양식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대분류	목조	조적	콘크리트	혼합	기타	합계
개소	193	182	80	31	5	491
(%)	(39.3)	(37.1)	(16.3)	(6.3)	(1.0)	(100.0)

출처: 문화재청.(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5] 지역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대분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총합
개소	71	15	9	21	17	6	4	2	35	36	50	163	97	23	491
(%)	(14.5)	(3.1)	(1.8)	(4.3)	(3.5)	(1.2)	(0.8)	(0.4)	(7.1)	(7.3)	(10.2)	(33.2)	(19.8)	(4.7)	(100)

출처: 문화재청.(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로 국가·지자체가 소유, 단체·법인이 관리하며, '04-'06년에 다수 등록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소유·관리 주체를 살펴보면, 국가·지자체의 소유(44.8%) 비중이 높고, 이어서 단체·법인(31.2%), 개인(21.4%)이 많았다. 반면 관리주체는 단체·법인(59.3%)이 가장 많고, 이어서 국가·지자체(13.2%)의 비중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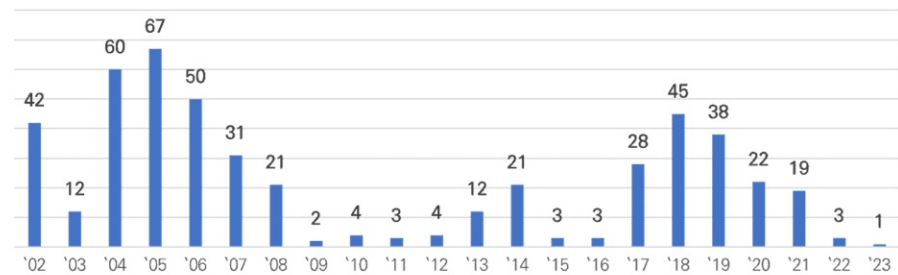
97) '주거숙박시설'은 주택, 사택, 관사, 여관, 한옥, 상가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표 4-6] 소유/관리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구분	소유자				관리자				합계
	국가· 자치체	개인	단체, 법인	혼합·기타	국가· 자치체	개인	단체, 법인	혼합·기타	
개소	220	105	153	13	65	94	291	41	491
(%)	(44.8)	(21.4)	(31.2)	(2.6)	(13.2)	(19.1)	(59.3)	(8.4)	(100.0)

출처: 문화재청.(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는 2004-2006년에 집중적으로 등록되었으며, 가장 많이 등록된 2005년에는 67건이 등록됐다. 이후 2017-2019년에도 다수 등록되었다.



[그림 4-1] 등록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출처: 문화재청.(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근대사적의 지정 현황

- 교육시설이 31.7%로 가장 많고 주로 조적조, 대부분이 서울에 분포

근대사적은 총 41개소 중 31.7%가 교육시설로 가장 많고, 이어서 종교시설(24.4%), 기타(생활유적 등, 22.0%)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양식별로는 조적조(벽돌, 석조)가 전체 5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혼합(19.5%), 목조(14.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7%로 대부분이 서울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어서 대구, 인천, 전북(각 7.3%)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4-7] 용도시설별 근대사적 현황

대분류	종교시설	교육시설	의료, 외교시설	근대교통·통신시설	기타	합계
개소	10	13	5	4	9	41
(%)	(24.4)	(31.7)	(12.2)	(9.8)	(22.0)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8] 구조양식별 근대사적 현황

대분류	목조	조적	콘크리트	혼합	기타	합계
개소	6	23	4	8	-	41
(%)	(14.6)	(56.1)	(9.8)	(19.5)	-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9] 지역별 근대사적 현황

대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경남	총합
개소	29	1	3	3	3	1	1	549
(%)	(70.7)	(2.4)	(7.3)	(7.3)	(7.3)	(2.4)	(2.4)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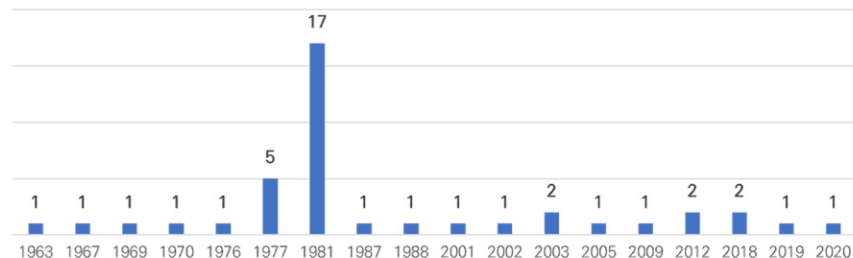
- 주로 단체·법인이 소유·관리를 하며, 1981년에 대다수 지정

근대사적은 소유·관리 모두 단체·법인이 주체인 경우(소유 58.5%, 관리 56.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가·지자체(소유 36.6%, 관리 4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근대사적의 관리 주체가 개인인 경우는 1개소도 없었다. 한편 근대사적은 1981년(17개소)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되고 있다.

[표 4-10] 소유/관리구분별 근대사적 현황

구분	소유자				관리자				합계
	국가·지자체	개인	단체·법인	혼합·기타	국가·지자체	개인	단체·법인	혼합·기타	
개소	15	1	24	1	17	0	23	1	41
(%)	(36.6)	(2.4)	(58.5)	(2.4)	(41.5)	0.0	(56.1)	(2.4)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2] 지정연도별 근대사적 현황

출처: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현황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와 근대사적의 국고보조사업 데이터를 활용한다.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근대사적의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수리현황을 살펴본다.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연도별 수리현황(건수)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특성별 수리현황(지역, 시설, 층수, 면적, 구조 등)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지정·관리 특성별 수리현황(지정연도, 소유·관리 등)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사업 특성별 수리현황(사업구분, 예산, 중복 등)

①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연도별 수리현황

□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연도별 수리현황

국가등록문화재 총 955개소의 40.1%에 해당하는 383개소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았다. 분석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경우, 총 491개소의 61.5%인 302개소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표 4-11] 유형(대분류)별 국가등록문화재의 개소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개소

대분류	건축물	건축 (토목시설물)	건축 (기타시설물)	건축 (시설물)	건축물 (공간)	동산	민속 마을	계
개소	491	67	29	13	8	346	1	955
보수개소	302	48	14	11	8	-	-	383
(%)	(69.4)	(77.6)	(48.3)	(84.6)	(100.0)	(0.0)	(0.0)	(40.1)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연도별로는 매년 평균 84.4건의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추진 건수가 증가했다. 예산은 매년 평균 14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총합 984.1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 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고보조사업당 예산은 평균 1.7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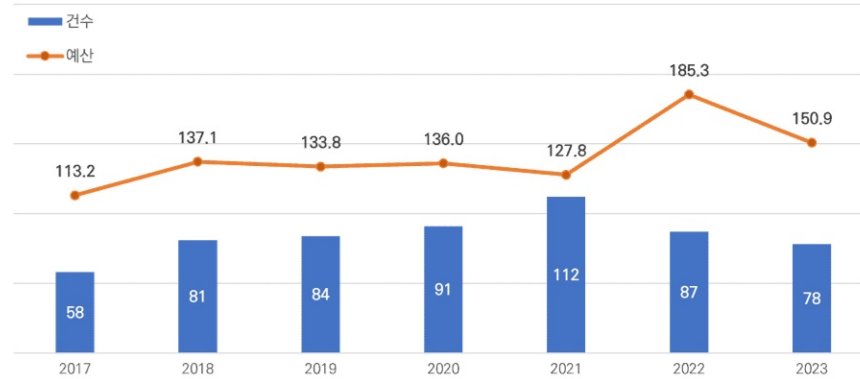
□ 근대사적 연도별 수리현황

매년 평균 13.3건의 근대사적의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7-2023년 총 185.3억 원이 소요되었고, 매년 평균 26.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2022년 예산이 소폭 감소하다가 2023년 회복세이다. 국고보조사업당 예산은 평균 2.0억원이다.

[표 4-12] 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단위: 개소, 억원)

연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수	84.4	58	81	84	91	112	87	78	591
예산	140.6	113.2	137.1	133.8	136.0	127.8	185.3	150.9	984.1
건당 예산	1.7	2.0	1.7	1.6	1.5	1.1	2.1	1.9	1.7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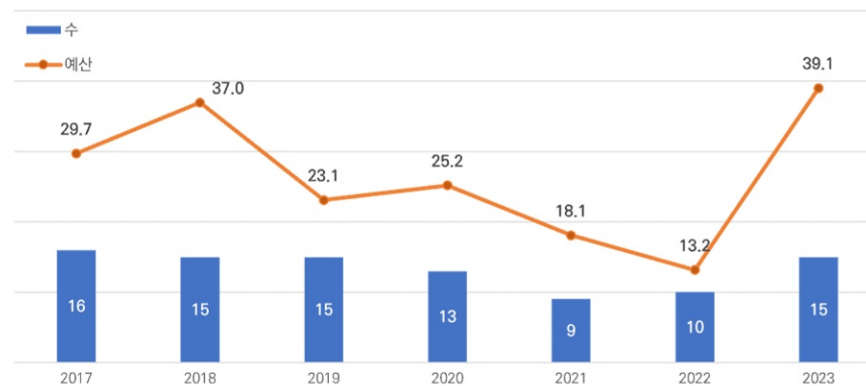
[그림 4-3] 교부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건수, 예산(단위: 억원))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13] 연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단위: 개소, 억원)

연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수	13.3	16	15	15	13	9	10	15	93
예산	26.5	29.7	37.0	23.1	25.2	18.1	13.2	39.1	185.3
건당 예산	2.0	1.9	2.5	1.5	1.9	2.0	1.3	2.6	2.0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4] 교부연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건수, 예산(단위: 억원))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특성별 수리현황

□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특성별 수리현황

용도시설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2023년 간 종교시설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2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주거숙박시설 15.9%, 업무시설·교육시설 각각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자체도 종교, 주거숙박시설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건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4] 용도시설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도	종교	주거숙박	업무	교육	인물기념	공공	산업	의료, 문화 집회,상업	기타 시설물	합계
2017	18	9	12	7	3	2	2	3	2	58
	31.0	15.5	20.7	12.1	5.2	3.4	3.4	5.2	3.4	100.0
2018	18	12	12	14	6	4	6	6	3	81
	22.2	14.8	14.8	17.3	7.4	4.9	7.4	7.4	3.7	100.0
2019	18	14	14	12	8	6	4	4	4	84
	21.4	16.7	16.7	14.3	9.5	7.1	4.8	4.8	4.8	100.0
2020	25	13	13	12	6	5	6	8	3	91
	27.5	14.3	14.3	13.2	6.6	5.5	6.6	8.8	3.3	100.0
2021	34	17	15	17	8	7	7	6	1	112
	30.4	15.2	13.4	15.2	7.1	6.3	6.3	5.4	0.9	100.0
2022	23	10	13	15	6	7	3	8	2	87
	26.4	11.5	14.9	17.2	6.9	8.0	3.4	9.2	2.3	100.0
2023	22	19	9	11	3	2	3	9	0	78
	28.2	24.4	11.5	14.1	3.8	2.6	3.8	11.5	0.0	100.0
총합계	158	94	88	88	40	33	31	44	15	591
	26.7	15.9	14.9	14.9	6.8	5.6	5.2	7.4	2.5	100.0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역별로는 전라지역(37.7%)이 가장 많고, 이어서 경상(13.5%)이 뒤를 이었으며, 이는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가 많이 분포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는 전라지역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는 서울지역의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수리 비율이 높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 경상, 충청지역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지역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총합계
2017	10	0	2	2	2	0	0	0	3	3	10	21	5	0	58
	17.2	0.0	3.4	3.4	3.4	0.0	0.0	0.0	5.2	5.2	17.2	36.2	8.6	0.0	100.0
2018	12	1	1	1	1	0	1	0	5	8	6	36	6	3	81
	14.8	1.2	1.2	1.2	1.2	0.0	1.2	0.0	6.2	9.9	7.4	44.4	7.4	3.7	100.0
2019	14	1	3	1	1	2	0	0	5	4	5	37	8	3	84
	16.7	1.2	3.6	1.2	1.2	2.4	0.0	0.0	6.0	4.8	6.0	44.0	9.5	3.6	100.0
2020	11	5	0	2	2	2	0	0	6	6	10	32	13	2	91
	12.1	5.5	0.0	2.2	2.2	2.2	0.0	0.0	6.6	6.6	11.0	35.2	14.3	2.2	100.0
2021	9	2	0	6	4	2	1	2	10	6	11	37	21	1	112
	8.0	1.8	0.0	5.4	3.6	1.8	0.9	1.8	8.9	5.4	9.8	33.0	18.8	0.9	100.0
2022	8	4	0	7	1	0	0	2	4	7	7	34	11	2	87
	9.2	4.6	0.0	8.0	1.1	0.0	0.0	2.3	4.6	8.0	8.0	39.1	12.6	2.3	100.0
2023	5	2	0	3	1	0	1	2	3	5	11	26	16	3	78
	6.4	2.6	0.0	3.8	1.3	0.0	1.3	2.6	3.8	6.4	14.1	33.3	20.5	3.8	100.0
합계	69	15	6	22	12	6	3	6	36	39	60	223	80	14	591
	11.7	2.5	1.0	3.7	2.0	1.0	0.5	1.0	6.1	6.6	10.2	37.7	13.5	2.4	100.0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건립시대별로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가 전체 6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26.2%)에 건립된 경우가 그 뒤를 따랐다.

[표 4-16] 건립시대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수리현황

구분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혼합	합계
2017	1	3	41	13	0	58
2018	2	3	54	21	1	81
2019	4	3	50	24	3	84
2020	1	6	59	25	0	91
2021	5	6	66	28	7	112
2022	3	3	51	28	2	87
2023	2	3	54	16	3	78
합계	18	27	375	155	16	591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구조양식의 경우, 전체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의 39.7%가 목조를 대상으로 했으며, 2020년 이전에는 조적조(벽돌조, 석조 등)의 수리가 많았다.

[표 4-17] 구조양식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수리현황

구분	목조	조적	콘크리트	혼합·기타	합계
2017	19	25	11	3	58
2018	27	36	11	7	81
2019	28	39	11	6	84
2020	37	40	8	6	91
2021	54	37	14	7	112
2022	33	35	12	7	87
2023	37	30	6	5	78
합계	235	242	73	41	591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연면적은 평균 870.0㎡, 최소 15.0㎡, 최대 51,703㎡이며, 층수는 평균 1.56층, 최대 6층으로 대부분 1-2층 규모의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면적인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는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51,703㎡)이며, 다음으로 서울 구 경기고등학교(7,479.4㎡),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6,693.0㎡), 광주 관덕정(5,961.0㎡),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5,957.1㎡)이 있다. 최대층수는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6층),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서울 경희대학교 본관·부산 경남고등학교 덕형관(5층)이 있다.

[표 4-18]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수

구분	연면적(㎡)			층수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2017	695.0	15.7	4,798.5	1.65	1	6
2018	1,272.6	50.6	51,703.0	1.63	1	4
2019	667.5	15.0	7,479.4	1.59	1	5
2020	1,079.8	15.7	51,703.0	1.57	1	6
2021	1,054.9	15.7	51,703.0	1.47	1	4
2022	621.1	15.0	7,479.4	1.62	1	6
2023	558.9	59.1	6,693.0	1.51	1	5
합계	870.0	15.0	51,703.0	1.56	1	6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19]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층수별 개소

층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기타	계
개소	318	166	40	8	8	51	591
(%)	(53.8)	(28.1)	(6.8)	(1.4)	(1.4)	(8.6)	(100.0)

주: '기타'는 갑문, 여러 건물로 구성된 경우임

출처: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근대사적의 특성별 수리현황

용도시설별 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2023년 간 종교시설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4.4%가 생활유적, 행정시설인 기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종교시설 29.0%, 교육시설 18.3%, 의료·외교시설 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용도시설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도	종교	교육	의료외교	근대교통·통신시설	기타	합계
2017	5 31.3	2 12.5	3 18.8	1 6.3	5 31.3	16 100.0
2018	5 33.3	3 20.0	1 6.7	1 6.7	5 33.3	15 100.0
2019	5 33.3	3 20.0	3 20.0	0 0.0	4 26.7	15 100.0
2020	5 38.5	1 7.7	2 15.4	1 7.7	4 30.8	13 100.0
2021	0 0.0	3 33.3	2 22.2	0 0.0	4 44.4	9 100.0
2022	2 20.0	2 20.0	0 0.0	1 10.0	5 50.0	10 100.0
2023	5 33.3	3 20.0	1 6.7	1 6.7	5 33.3	15 100.0
총합계	27 29.0	17 18.3	12 12.9	5 5.4	32 34.4	93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2.4%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는 근대사적의 지역별 분포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전라(16.1%), 대구(10.8%) 지역에서 수리사업이 많이 추진되었다.

[표 4-21] 지역별 근대사적 수리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라		경상		총합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7	10	62.5	0	0.0	3	18.8	1	6.3	1	6.3	1	6.3	16	100.0
2018	11	73.3	0	0.0	2	13.3	0	0.0	2	13.3	0	0.0	15	100.0
2019	11	73.3	0	0.0	2	13.3	0	0.0	2	13.3	0	0.0	15	100.0
2020	6	46.2	0	0.0	2	15.4	1	7.7	4	30.8	0	0.0	13	100.0
2021	7	77.8	1	11.1	0	0.0	0	0.0	1	11.1	0	0.0	9	100.0
2022	5	50.0	0	0.0	0	0.0	1	10.0	3	30.0	1	10.0	10	100.0
2023	8	53.3	1	6.7	1	6.7	2	13.3	2	13.3	1	6.7	15	100.0
합계	58	62.4	2	2.2	10	10.8	5	5.4	15	16.1	3	3.2	93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대한제국시대 건립된 근대사적이 전체 5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29.0%), 조선시대(18.3%)에 건립된 경우가 그 뒤를 따랐다.

구조양식의 경우, 전체 근대사적의 국고보조사업의 64.5%가 조적조를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2017-2019년에는 조적조(벽돌조, 석조 등)에 대한 수리 횟수가 많았다.

[표 4-22] 건립시대 및 구조양식별 근대사적 수리현황

구분	건립시대				구조양식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	대한민국	합계	목조	조적	콘크리트	혼합·기타	합계
2017	3	8	5	0	16	3	11	0	2	16
2018	3	5	7	0	15	2	9	1	3	15
2019	4	8	3	0	15	2	11	0	2	15
2020	3	8	2	0	13	1	11	0	1	13
2021	1	4	3	1	9	1	5	1	2	9
2022	1	5	4	0	10	3	6	0	1	10
2023	2	9	3	1	15	4	7	0	4	15
합계	17	47	27	2	93	16	60	2	15	93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근대사적의 연면적은 평균 6,874.6㎡, 최소 88.6㎡, 최대 41,312㎡였다. 최대면적인 근대사적은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41,312㎡)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익산 나바위성당(27,788㎡), 창원 진해우체국(10,8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근대사적의 연면적

구분	연면적 평균 (㎡)	연면적 최소 (㎡)	연면적 최대 (㎡)
2017	5659.6	580.0	41,312
2018	6160.6	318.0	41,312
2019	6692.5	228.1	41,312
2020	7000.3	228.1	41,312
2021	6291.3	332.7	41,312
2022	9284.7	88.6	41,312
2023	7701.1	332.7	41,312
합계	6874.6	88.6	41,312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③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지정·관리 특성별 수리현황

□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지정·관리 특성별 수리현황

2017-2023년에 수리한 국가등록문화재를 등록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국고보조사업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2008년 이전에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추진 건수가 많았다.

[표 4-24] 등록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개소	70	13	67	105	63	41	21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소	4	6	6	8	10	32	9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합계
개소	6	55	33	24	17	1	591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소유·관리주체는 국가·지자체가 각각 43.8%, 4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단체·법인·종교(소유 38.1%, 관리 40.8%)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소유/관리 주체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구분	소유주체				관리주체				합계
	국가 지자체	개인	단체·법인· 종교	혼합·기타	국가 지자체	개인	단체·법인· 종교	혼합·기타	
2017	28	9	19	2	26	7	22	3	58
2018	40	10	28	3	39	7	29	6	81
2019	40	15	28	1	38	12	30	4	84
2020	40	14	37	0	34	11	42	4	91
2021	44	20	47	1	44	17	50	1	112
2022	38	12	35	2	36	10	36	5	87
2023	29	18	31	0	27	15	32	4	78
합계	259	98	225	9	244	79	241	27	591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근대사적의 지정·관리 특성별 수리현황

2017-2023년 수리한 근대사적을 지정연도별로 살펴보면 1981년에 등록된 근대사적의 국고보조사업 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1980년대 지정된 근대사적의 수리사업 건수가 많았다.

[표 4-26] 지정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도	1963	1967	1969	1970	1976	1977	1981	1987	1988
개소	3	1	4	2	2	11	27	5	7
연도	2001	2002	2003	2005	2009	2012	2018	2019	합계
개소	2	5	5	2	5	6	5	1	591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근대사적의 소유·관리주체의 경우, 모두 단체·법인·종교인 경우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각각 52.7%, 5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서 국가·지자체(소유 38.7%, 관리 40.9%)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소유·관리주체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구분	소유주체				관리주체				합계
	국가 지자체	개인	단체·법인· 종교	혼합·기타	국가 지자체	개인	단체·법인· 종교	혼합·기타	
2017	6	1	8	1	7	1	8	0	16
2018	3	1	11	0	4	1	10	0	15
2019	4	1	9	1	4	1	10	0	15
2020	7	0	6	0	7	0	6	0	13
2021	5	1	3	0	5	1	3	0	9
2022	6	0	4	0	6	0	4	0	10
2023	5	1	8	1	5	1	9	0	15
합계	36	5	49	3	38	5	50	0	93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④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사업 특성별 수리현황

수리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내용, 지원횟수 등을 중심으로 수리현황을 살펴본다. 여기서 수리사업 내용의 경우, 2장에서 살펴본 지정문화재의 단계별 수리체계(기획 - 실측설계 - 시공)와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별표1]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계획: 정비계획 수립 등
- 조사·기록화: 조사, 기록화사업
- 구조안전: 구조안전정밀진단, 구조 모니터링, 구조설계 등
- 설계: 수리설계, 사전설계, 실시설계, 복원설계 등

- 수리: 복원, 보수, 초가이영잇기,
- 정비: 문화재보호시설, 문화재 관리시설,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문화재 부대시설, 문화재 경관 정비
- 매입: 토지, 건물, 지장물 매입

□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수리사업 특성별 수리현황

수리사업 내용별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국고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수리가 전체 4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조사기록화(17.2%), 정비(8.9%)가 추진되었다. 특히, 조사기록화의 경우, 2021년은 수리사업보다 많은 건수가 추진되었다. 한편 매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추진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2017~2023년 사업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도	계획	조사기록화	구조안전	설계	수리	정비	매입	합계
2017	1	10	3	1	37	10	0	62
	1.6	16.1	4.8	1.6	59.7	16.1	0.0	100.0
2018	10	19	3	12	48	11	0	103
	9.7	18.4	2.9	11.7	46.6	10.7	0.0	100.0
2019	7	25	8	11	39	11	1	102
	6.9	24.5	7.8	10.8	38.2	10.8	1.0	100.0
2020	6	6	9	15	57	3	1	97
	6.2	6.2	9.3	15.5	58.8	3.1	1.0	100.0
2021	4	47	9	11	43	10	1	125
	3.2	37.6	7.2	8.8	34.4	8.0	0.8	100.0
2022	6	6	3	10	59	11	0	95
	6.3	6.3	3.2	10.5	62.1	11.6	0.0	100.0
2023	0	3	16	17	50	4	0	90
	0.0	3.3	17.8	18.9	55.6	4.4	0.0	100.0
합계	34	116	51	77	333	60	3	674
	5.0	17.2	7.6	11.4	49.4	8.9	0.4	100.0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고보조사업 1건 내 여러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정리(중복)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의 수리사업 내용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수리가 전체 63.5%(742억 원)로 가장 많이 배정되었고, 이어서 조사·기록화(131억 원, 11.2%), 정비(115억 원, 9.9%) 순이었다.

[표 4-29] 사업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	조사기록화	구조안전	설계	수리	정비	매입	합계
2017	90	884	134	64	8,126	3,119	0	12,418
	0.7	7.1	1.1	0.5	65.4	25.1	0.0	100.0
2018	1,520	2,344	198	1,238	10,940	1071	0	17,310
	8.8	13.5	1.1	7.2	63.2	6.2	0.0	100.0
2019	517	5,701	511	860	7,007	808	3,500	18,904
	2.7	30.2	2.7	4.5	37.1	4.3	18.5	100.0
2020	296	280	418	1,054	10,882	1,320	324	14,574
	2.0	1.9	2.9	7.2	74.7	9.1	2.2	100.0
2021	250	2,955	415	785	8,293	1,832	0	14,530
	1.7	20.3	2.9	5.4	57.1	12.6	0.0	100.0
2022	942	593	300	565	15,521	1,720	800	20,440
	4.6	2.9	1.5	2.8	75.9	8.4	3.9	100.0
2023	0	388	2151	1055	13,482	1,690	0	18,765
	0.0	2.1	11.5	5.6	71.8	9.0	0.0	100.0
합계	3,615	13,144	4,127	5,622	74,250	11,559	4,624	116,941
	3.1	11.2	3.5	4.8	63.5	9.9	4.0	100.0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고보조사업 1건 내 여러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정리(중복)

사업구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개보수, 수리, 보강 등의 보수가 92.2%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초가이영잇기가 3.3%로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수리사업의 세부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구분	보수		복원		초가이영잇기		보수·복원		합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7	32	86.5	2	5.4	0	0.0	3	8.1	37	100.0
2018	45	93.8	2	4.2	0	0.0	1	2.1	48	100.0
2019	35	89.7	2	5.1	0	0.0	2	5.1	39	100.0
2020	51	89.5	1	1.8	4	7.0	1	1.8	57	100.0
2021	42	97.7	0	0.0	1	2.3	0	0.0	43	100.0
2022	55	93.2	1	1.7	3	5.1	0	0.0	59	100.0
2023	47	94.0	0	0.0	3	6.0	0	0.0	50	100.0
합계	307	92.2	8	2.4	11	3.3	7	2.1	333	100.0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고보조사업 1건 내 여러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정리(중복)

[표 4-31] 수리사업의 세부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억원)

구분	보수		복원		초가이영잇기		보수·복원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17	78.0	95.9	2.3	2.8	0.0	0.0	1.0	1.2	81.3	100.0
2018	75.4	68.9	34.0	31.1	0.0	0.0	0.0	0.0	109.4	100.0
2019	59.9	85.5	4.2	5.9	6.0	8.6	0.0	0.0	70.1	100.0
2020	103.2	94.8	3.0	2.8	1.2	1.1	1.5	1.3	108.8	100.0
2021	76.6	92.4	0.0	0.0	0.0	0.0	6.3	7.6	82.9	100.0
2022	150.2	97.3	0.0	0.0	0.6	0.4	3.5	2.3	154.3	100.0
2023	134.5	99.8	0.0	0.0	0.3	0.2	0.0	0.0	134.8	100.0
합계	677.7	91.4	43.5	5.9	8.1	1.1	12.3	1.7	741.6	100.0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고보조사업 1건 내 여러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정리(중복)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사업선정 횟수를 살펴보면, 1회인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으며, 3회 이상이 26.8%로 여러 횟수 수리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5회 이상은 2.0%로 최대 6회까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했다.

[표 4-32]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별 국고보조사업 추진 횟수

총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개소	132	89	53	20	8	302
(%)	(43.7)	(29.5)	(17.5)	(6.6)	(2.7)	(100.0)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고보조사업을 5회 이상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를 살펴본 결과,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춘천 소양로성당에 6회 이상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예산도 각각 27.9억 원, 2.4억 원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회 이상 추진된 사업 총 8건 중 62.5%가 전라(전북·전남)에 분포하고, 종교시설이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국고보조사업 6회 이상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연번	문화재명	용도시설	지역	수 (건)	예산 (억 원)	사업내용	비고
1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주거주택	전남	6	27.9	수리4, 설계1, 계획1	'18-'23
2	춘천 소양로성당	종교	강원	6	2.4	수리5	'17-'21, '23
3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종교	충남	5	4.9	수리3, 설계1, 구조안전1, 정비1	'17-'18, '20-'21, '23
4	봉화 유곡리 근대한옥	주거주택	경북	5	1.1	수리3, 정비1, 조사 기록화1	'17, '20-'23
5	여수 구 애양원교회	종교	전남	5	8.5	수리4, 정비2	'17-'19, '21, '23
6	원불교 익산성지	종교	전북	5	4.6	수리4, 설계1, 조사 기록화1	'18, '20-'23
7	정읍 나용균 생가와 사당	인물기념	전북	5	9.6	수리1, 정비2, 설계1, 계획1	'18-'23
8	함평 월호리 일본식 가옥과 창고	주거주택	전남	5	3.6	수리2, 정비2, 설계1	'17, '19-'21, '23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고보조사업 예산 20억 원 이상 투입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을 살펴본 결과,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가 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39.0억 원),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32.8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용도시설의 경우, 주거숙박, 업무, 의료, 문화집회시설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4-34] 국고보조사업 예산 20억 원 이상 투입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연번	문화재명	용도 시설	지역	수 (건)	예산 (억 원)	사업내용	비고
1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업무	전북	4	50.5	조사·기록화1, 매입1, 계획1, 설계1, 구조·안전·수리1	'19-'20, '22-'23
2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	주 거 숙박	서울	2	39.0	수리1, 정비1	'18, '20
3	고흥순천교도소구소록도지소	공공	전남	2	32.8	수리2	'20, '23
4	영광 청령조씨 관해공 가옥	주 거 숙박	전남	6	27.9	수리4, 설계1, 계획1	'18-'23
5	서울 보화각	문 화 집회	서울	3	25.4	수리2, 설계1	'21-'23
6	구 조선식산은행 총주지점	상업	충북	4	23.7	수리3, 설계1	'18, '20-'22
7	철원 노동당사	업무	강원	4	21.9	수리2, 조사·기록화1, 설계1, 계획1	'18-'19, '21-'22
8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의료	전북	2	20.8	정비2	'17, '22
9	남양주 흥국사 대방	종교	경기	3	20.0	수리1, 조사·기록화1	'20-'21, '23

출처: 문화재청, (202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근대사적의 수리사업 특성별 수리현황

수리사업 내용별로 근대사적의 국고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수리가 전체 5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조사기록화(13.2%), 정비(15.7%) 순이었다.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수리에 전체 67.6%인 63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되었으며, 이어서 정비(103.5억 원, 11.0%), 조사기록화(73억 원, 7.8%) 순이었다.

[표 4-35] 2017~2023년 사업구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도	계획	조사기록화	구조안전	설계	수리	정비	매입	합계
2017	2	1	1	1	10	2	0	17
	11.8	5.9	5.9	5.9	58.8	11.8	0.0	100.0
2018	1	4	0	1	9	3	0	18
	5.6	22.2	0.0	5.6	50.0	16.7	0.0	100.0
2019	1	4	2	1	6	2	0	16
	6.3	25.0	12.5	6.3	37.5	12.5	0.0	100.0
2020	2	1	1	0	12	2	0	18
	11.1	5.6	5.6	0.0	66.7	11.1	0.0	100.0
2021	3	0	0	0	5	1	0	9
	33.3	0.0	0.0	0.0	55.6	11.1	0.0	100.0
2022	0	0	1	3	5	2	0	11
	0.0	0.0	9.1	27.3	45.5	18.2	0.0	100.0
2023	1	4	1	3	7	1	0	17
	5.9	23.5	5.9	17.6	41.2	5.9	0.0	100.0
합계	10	14	6	9	54	13	0	106
	9.4	13.2	5.7	8.5	50.9	12.3	0.0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고보조사업 1건 내 여러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정리(중복)

[표 4-36] 사업구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	조사기록화	구조안전	설계	수리	정비	매입	합계
2017	725.0	304.0	0.0	40.0	3,305.0	931.0	0.0	5,305.0
	13.7	5.7	0.0	0.8	62.3	17.5	0.0	100.0
2018	45.0	260.0	111.0	150.0	1,345.0	500.0	0.0	2,411.0
	1.9	10.8	4.6	6.2	55.8	20.7	0.0	100.0
2019	108.0	280.0	134.0	0.0	2,469.0	445.0	0.0	3,436.0
	3.1	8.1	3.9	0.0	71.9	13.0	0.0	100.0
2020	375.3	0.0	0.0	0.0	1257.7	176.0	0.0	1,809.0
	20.7	0.0	0.0	0.0	69.5	9.7	0.0	100.0
2021	0.0	0.0	121.1	213.1	741.1	362.0	0.0	1,437.3
	0.0	0.0	8.4	14.8	51.6	25.2	0.0	100.0
2022	841.0	1431.0	80.0	160.0	2,614.0	18.0	0.0	5,144.0
	16.3	27.8	1.6	3.1	50.8	0.3	0.0	100.0
2023	4,524.6	5,041.1	2,666.1	2,468.8	51,824.4	7,919.9	0.0	74,445.0
	6.1	6.8	3.6	3.3	69.6	10.6	0.0	100.0
합계	6,618.9	7,316.1	3,112.2	3,031.9	63,556.2	10,351.9	0.0	93,987.3
	7.0	7.8	3.3	3.2	67.6	11.0	0.0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국고보조사업 1건 내 여러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정리(중복)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근대사적의 사업선정 횟수를 살펴보면, 1회, 2회인 경우가 각각 23.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3회 이상이 53.0%이며 특히 5회 이상이 14.7%로 여러 번 수리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37] 근대사적별 국고보조사업 추진 횟수

총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개소	8	8	10	3	5	34
(%)	(23.5)	(23.5)	(29.4)	(8.8)	(14.7)	(100.0)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고보조사업을 5회 이상 추진한 근대사적을 살펴본 결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7건), 대구 계산동 성당·서울 이화장·안국동 윤보선가·익산 나바위성당(각 5건) 등이 많이 추진되었다. 5회 이상 추진된 사업 총 5개소 중 60%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4-38] 국고보조사업 5회 이상 추진한 근대사적

연번	문화재명	용도	지역	수(건)	예산(억 원)	사업내용	비고
1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기타	서울	7	21.9	수리4, 설계2, 정비1, 구조안전1, 정비1, 계획1, 조사기록화1	'17-'23
2	대구 계산동성당	종교	대구	5	5.6	수리3, 조사·기록화2, 구조안전1	'17-'20, '23
3	서울 이화장	생활	서울	5	12.1	수리3, 계획2, 정비2	'17-'19, '21, '23
4	안국동 윤보선가	생활	서울	5	10.7	수리4, 정비1	'17-'19, '22, '23
5	익산 나바위성당	종교	전북	5	16.0	수리3, 정비3	'18-'20, '22-'23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고보조사업 예산 10억 원 이상 투입된 근대사적을 살펴본 결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가 20.7억 원, 구 공업전습소 본관이 19.3억 원으로 많았다. 사업내용은 주로 수리, 조사 기록화 등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였으며,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고, 종교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39] 국고보조사업 예산 10억 원 이상 투입된 근대사적

연번	문화재명	용도	지역	수(건)	예산(억 원)	사업내용	비고
1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기타	서울	7	20.7	수리3, 설계2, 정비1, 구조안전1, 계획1, 조사기록화1	'17-'23
2	구 공업전습소 본관	교육	서울	3	19.3	설계1, 계획1, 수리1	'19, '21, '23
3	익산 나바위성당	종교	전북	5	16.0	수리3, 정비3	'18-'20, '22-'23
4	전주 전동성당	종교	전북	4	15.8	수리1, 조사·기록화3, 구조안전1, 설계1	'17-'18, '20, '23
5	환구단	종교	서울	1	12.3	수리1	'17
6	서울 이화장	생활	서울	5	12.1	수리3, 계획2, 정비2	'17-'19, '21, '23
7	안국동 윤보선가	생활	서울	5	10.8	수리4, 정비1	'17-'19, '22-'23

출처: 문화재청. (2021).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 소결

□ 다양한 용도, 구조양식에 대한 연구 및 자료 구축 필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용도시설별로 살펴보면,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등록이 많이 되었던 종교시설, 주거숙박시설, 업무시설의 수리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교육시설, 의료·문화·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에 대한 수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양식의 경우, 기존에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사적 모두 조적조 건축물 수리가 대부분이었으나, 목조를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콘크리트조와 혼합·기타 구조의 수리 비중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이 증가할 경우, 보다 다양한 용도와 구조양식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리가 많이 이루어진 용도시설과 구조양식 외에 다양한 용도와 구조에 대한 연구와 자료 구축을 통해 향후 수리 방식에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소유·관리 주체별, 사업내용별 특성을 고려한 수리 등 관리체계 마련 필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의 지정·관리 특성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는 소유·관리 주체가 국가·지자체인 경우가 많은 반면, 근대사적은 종교, 학교 등 법인인 경우가 많았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사업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사적 모두 ‘수리’가 많고(각각 49.4%, 50.9%), 예산도 많은 비중(국가등록문화재 63.5%, 근대사적 67.6%)을 차지하였다.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정비, 조사기록화도 수리사업으로 많이 추진했으며, 특히 조사기록화는 2021년은 수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유·관리 주체에 따라 수리체계의 차별화와 국고보조사업의 절차 및 관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리’ 사업에 대한 세밀한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하겠다.

□ 국고보조사업 추진 대상지의 중복, 다수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국고보조사업 추진횟수가 국가등록문화재는 3회 이상이 26.8%, 근대사적은 3회 이상이 53.0%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여러 번 수리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역시, 다수 선정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복, 다수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의 심층조사

1) 심층조사 개요

□ 심층조사 목적

국가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의 수리 사례 각 1건을 선정하여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의 미비로 발생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심층조사를 통해 파악한 쟁점은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표 4-40] 주요 쟁점 및 과제 도출의 방법

1단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 심층조사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한 추진 경과 및 쟁점 파악 - (2023.06-08) 수리 관계자 11인
2단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	심층조사 결과의 추가 논의 - (2023.08.22.) 근대건축 분야 6인, 건축구조 분야 1인
3단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문	심층조사 결과의 추가 논의 - (2023.08-10) 실측설계 3인, 보수 4인
4단계 주요 과제의 선정	단계별 수리체계 쟁점의 종합 정리와 주요 과제 선정

출처: 연구진 작성

□ 심층조사 방법

- 대상지 선정: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최근 이루어진 국고보조사업 목록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담당자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단계 수리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조보강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화재 내진보강의 초기 사례로서 관련 쟁점 파악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근대사적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근대사적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본과의 첫 번째 설계승인 심의 대상이라는 대표성을 가진다.

- 관계자 심층면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는 해당 국고보조사업의 전반적 진행사항, 각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 및 지자체 담당자로서의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사적 수리체계의 차이와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자 했다. 설계업체, 시공업체는 각 단계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각 자문 위원과는 자문의 추진 과정 및 당시 쟁점이 되었던 논의 사항을 다루었다.

[표 4-41] 심층조사 일정

조사 단계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 군산세관 본관	
	면담 대상(업체)	일자	면담 대상(업체)	일자
대상지 선정 자문	문화재수리기술자	2023.01.	문화재수리기술자	2023.02.02. 2023.03.31.
	문화재위원, 문화재수리기술자	2023.04.07.	문화재위원	2023.04.26.
대상지 선정 협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	2023.04.07.	지자체 담당 공무원	2023.04.07.
관계자 심층면담	지자체 담당 공무원	2023.06.14. 2023.07.05. 2023.10.10.	지자체 담당 공무원	2023.06.14. 2023.07.05. 2023.10.10.
	문화재실측설계업	2023.07.24.	문화재실측설계업	2023.07.24.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2023.07.28.		
	보수단청업	2023.08.02.	보수단청업	2023.07.25.
	자문단 (5인 중 4인)	2023.07.12. 2023.07.17. 2023.08.11. 2023.08.22.	자문단 (5인 중 4인)	2023.07.12. 2023.07.17. 2023.08.11. 2023.08.22.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42] 수리 담당업체 심층면담 여부

대상	사업내용	담당업체	면담 여부	비고
조선식량영단	정밀실측조사	문화재실측설계업	●	1단계 공사
	구조안전 및 보수 실시설계	문화재실측설계업	X	
	종합정비 기본계획	문화재실측설계업	X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보수단청업	●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문화재실측설계업	●	2단계 공사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리모델링공사	시공업체	X	
	외부보수 설계	문화재실측설계업	●	
	외부보수공사	보수단청업	X	
군산세관	종합정비계획 용역	기술자(엔지니어링)	X	
	기록화, 실측설계, 정밀안전진단	문화재실측설계업	●	
	보수정비공사(본관 보수 및 주변정비)	보수단청업	●	

출처: 연구진 작성

② 수리 경과⁹⁹⁾

[표 4-43]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단계별 주요 수리공사 내역

공사단계	기간	사업내용	담당업체	예산
1단계	2015.11 - 2016.05	정밀실측조사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청 (20억)
	2016.02 - 2016.05	구조안전 및 보수 실시설계	문화재실측설계업	
	2016.03 - 2016.09	종합정비 기본계획	문화재실측설계업	
	2018.01 - 2018.12*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보수단청업	
2단계	2019.01 - 2019.05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문화재실측설계업	문체부 (70억)
	2019.07 - 2019.12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리모델링공사	시공업체	
	2019.11 - 2019.12	외부보수 설계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청 (5억)
	2020.01 - 2020.12*	외부보수공사	보수단청업	

*은 착공 및 준공연월을 의미함

출처: 군산시. (2019).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24;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4 및 관계자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1단계: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2015-2018)

• 공사 배경

군산시는 이 건물을 ‘군산시 제3청사’로 사용하던 기간 동안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2008년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 상 D등급(미흡)을 받았고, 2013년에는 E등급(불량)으로 판정되었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군산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자 했으나, 건물 관련 자료가 발견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관계 전문가 3인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절차를 거쳐 9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과 구조보강의 필요성은 현지조사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3인의 등록조사보고서에서도 언급된다. 당시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입주기관들이 이전 중이었으며, 천정 및 벽체 탈

99) ‘수리 경과’는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계자로부터 협조 받은 문헌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출처로 표기했으며, 이외에는 출처 표기를 대신하여 [표 4-41]에 표기된 일자의 관계자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락 등이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¹⁰⁰⁾ 오랜 기간 청사로 이용되면서 내부 공간 활용을 위해 칸막이벽 등이 설치되었고, 내부 공간 부족에 따라 2층에는 경량철골조 및 샌드위치판넬로 가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문화재 등록 이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내부 천정, 간이 벽체 및 2층 조립식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긴급보수공사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정밀실측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¹⁰¹⁾

- 정밀실측조사

정밀실측조사는 정밀 현황실측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물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향후 수리공사 시 설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과업은 크게 문헌 조사, 지형측량 및 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으로 구성되었으며, 3,500만 원의 비용으로 문화재수리업체(문화재실측설계업)가 수행했다. 기존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흔적을 통해 원형과 변형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밀실측조사를 위한 부분해체는 불가능했으나 내부 철거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감재 안쪽의 상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업의 결과물인 정밀실측조사보고서는 당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발간되었다.¹⁰²⁾

정밀실측조사보고서에는 문헌 및 건물 현황 조사를 통해 밝힌 건축적 특성(주변 현황 및 배치, 평면, 구조, 입면, 창호, 내부수장, 기타(설비, 굴뚝))과 복원안이 담겨 있다. 일부 기둥, 보, 슬래브는 철근콘크리트조이지만 벽체는 적벽돌을 사용한 내력벽식 구조인 복합구조임이 밝혀졌으며, 천장 마감재가 철거되면서 보와 천장이 만나는 면에 석고를 이용한 몰딩이 설치되었고 보 하부에 모접기 장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각 실 천장에 남아 있는 흔적을 바탕으로 원형 평면 복원안이 작성되었다. 또한 건물 내부에 세워진 특정 벽체에 대해서는, 보의 하중을 부담하는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는 구조변경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¹⁰³⁾

100) 문화재위원회. (2014).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pp.79-84.

101) 도시건축사사무소. (2016).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군산시, pp.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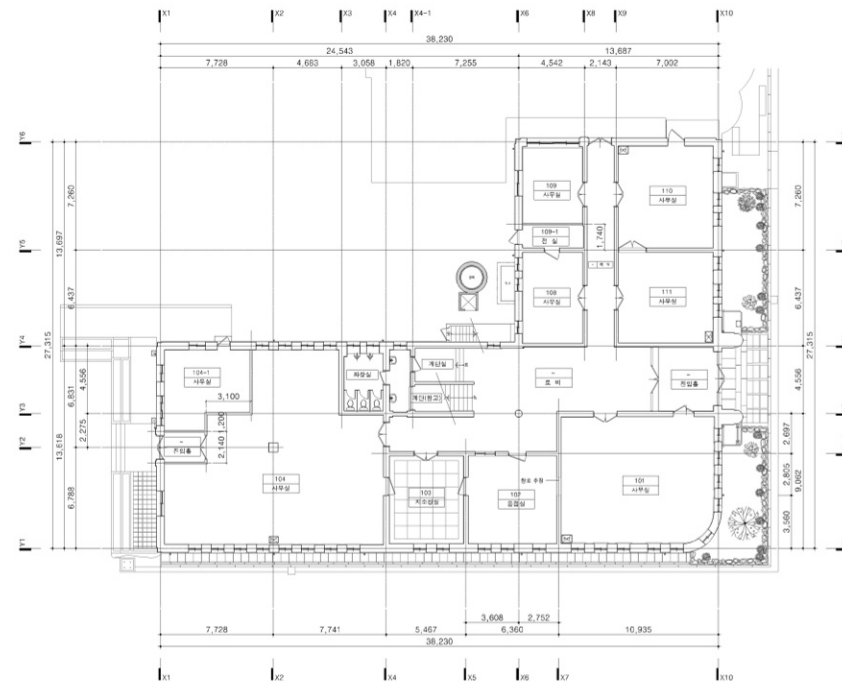
102) 도시건축사사무소. (2016).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군산시, pp.34-35, 47, 128.

103) 도시건축사사무소. (2016).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군산시, pp.123, 128, 155-157.



[그림 4-6] 1층 평면도(현황)

출처: 도시건축사사무소. (2016).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군산시, p.126의 그림 재인용



[그림 4-7] 평면도(복원안)

출처: 도시건축사사무소. (2016).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군산시, p.140의 그림 재인용

• 실시설계

군산시는 본격적인 건물 보수를 위해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8억)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구조보강을 위한 설계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문화재수리업체(문화재실측설계업)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공동도급으로 4,680만 원에 낙찰되었다. 건물이 내진에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에, 내진구조보강 전문업체가 용역업체와 협약을 맺어 실제 구조설계를 담당했다.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원래 3개월로, 앞서 진행된 정밀실측조사 용역과 동시에 준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지자체에서는 대개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설계용역 결과물을 납품받아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및 일상감사, 원가심사 등의 순으로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설계승인까지 2년이 소요되면서 실제 공사는 2018년에 진행될 수 있었다.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설계승인에 긴 기간이 소요된 원인으로 자문회의를 꼽았다. 문화재청에서 건축분야 외 구조분야 자문위원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가운데 건축 및 구조분야 각 2명이 자문을 맡았다. 자문위원을 모두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자문위원마다 전공분야가 달라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실시설계에서는 구조보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최종안 결정이 지연되었다. 자문회의에서 특정 공법을 고려해보라는 자문의견이 제시되면 용역업체에서 해당 공법을 적용해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표 4-44] 구조보강공사를 위해 검토된 대안 및 최종안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최종안
제한조건	용도 및 하중제한 없음	2층 일부용도 및 하중 제한	2층 용도 및 하중제한	
보수 단면복구	THK30-50 보 및 슬래브 단면복구			
보강 기초	기초	기초 기초와 일체화된 파일기초 신설	기초 기초와 분리된 파일기초 신설	
	기둥	철골기둥 신설	철골프레임 신설	
보	철골보/아라미드섬유	아라미드판/아라미드섬유		
슬래브	L형강/아라미드섬유	아라미드판/아라미드섬유	아라미드섬유	아라미드판/아라미드섬유
내진	철골기둥/철골보		철골프레임/아라미드섬유(조적벽체)	철골프레임/기초보강
정밀안전진단	-	-	-	공사중안전진단 실시
공사비	35억 원	29억 원	23억 원	20.4억 원

출처: 문화재위원회. (2017).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pp.171-17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2월까지 입찰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증제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되어 설계승인이 완료될 수 있었다. 정밀안전진단 E등급에 따른 구조보강 필요사항이 많아 각종 보강공사가 추가되면서 총 공사비도 20억 원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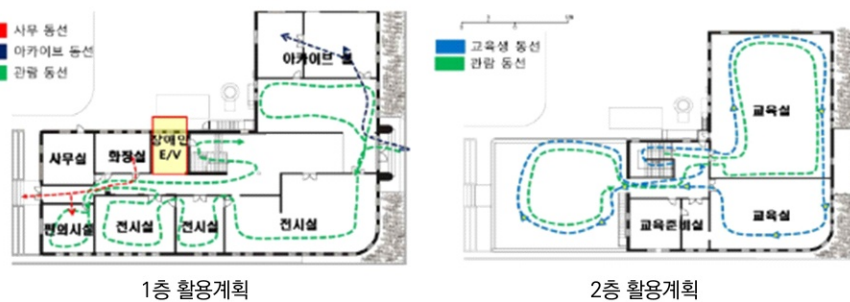
- 종합정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실시설계 용역 시작 한 달 후부터 995만 원의 용역비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함께 수행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보수·보강안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¹⁰⁴⁾ 쌀 수탈의 근대 역사와 연계된 활용계획이 검토되었으며, 1층은 아카이브 및 전시공간, 2층은 교육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최종안으로 마련되었다.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최종안은 앞서 살펴본 구조보강계획 최종안에 반영되었으며, 구조보강계획과 함께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어 조건부 가결되었다.¹⁰⁵⁾

[표 4-45] 건물 활용을 위해 검토된 대안 및 최종안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최종안
활용계획	아카이브 및 전시	전시 및 교육	업무 및 교육	대안1과 2의 절충안
1층	아카이브, 전시	전시, 사무실	사무	아카이브, 전시
2층	전시, 옥상정원	교육, 전시	교육, 회의실	교육, 전시

출처: 문화재위원회. (2017).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p.17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8] 층별 활용계획

출처: 문화재위원회. (2017).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p.172의 그림 재인용

104) 도시건축사사무소. (2016).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군산시, p.78.

105) 문화재위원회. (2017).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pp.170-174.

• 시공

설계승인이 완료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가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재보수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전체 공정은 해체 및 철거공사, 기초 보강공사(파일,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공사, 방수공사, 아라미드보강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가 건축감리를 담당했다.¹⁰⁶⁾ 또한 시공업체는 구조설계를 담당했던 내진구조보강 전문업체에게 공사 중 안전 진단용역을 발주했다.

문화재 수리는 추정설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이다. 본 건물에서도 실제 현황과 정밀안전진단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시공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이 외형적으로는 ㄱ자의 1개동이지만 실제로는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동 사이에 구조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음이 해체과정에서 밝혀졌다.¹⁰⁷⁾ 이에 따라 시공업체는 기존 안전진단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중지하고, 구조감리·보완 및 준공 후 안전진단용역을 다른 구조업체에게 발주했다. 해당 구조업체는 현장에서 구조설계안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실시했으며, 수정 과정에서 자문위원과의 자문을 거쳤다.¹⁰⁸⁾

주요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 준공 후 70년 이상 경과하여 콘크리트 중성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슬래브와 보의 단면손실,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및 부식 등 콘크리트 구조체의 성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체의 콘크리트 및 철근의 녹을 제거하고 단면복구를 실시한 후, 아라미드 섬유시트로 보강하여 내력을 확보했다.¹⁰⁹⁾

106)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87, 191, 199.

107) 슬래브를 한 번에 타설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단서로서, 특정 벽체에 일렬로 심한 누수가 공사 전에 발견되었다. 설계안은 해당 벽을 철거하도록 작성되었지만, 시공업체는 이를 내력벽으로 판단하여 공사 중 안전진단용역을 맡은 업체와 마찰을 빚었다. 설계안대로 철거하라는 주장이 관철되어 시공업체가 벽을 철거했으나,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서포트를 설치하는 추가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조안전진단 업체들의 자문을 받아, 철거된 벽체가 내력벽이었음을 확인했다.

108) 해당 구조업체는 전통건축 및 근대건축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구조설계를 다수 실시한 업체이다.

109)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59, 64-66.;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9.



기둥



보

[그림 4-9] 기둥 및 보 보수·보강공사

출처: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20, 65의 그림 재인용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철골프레임 가새공법 및 아라미드 섬유보강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취약부를 보강했다.¹¹⁰⁾ 로비 및 9개 실에 철골프레임을 설치하고, 보와 슬래브 하부에 레진, 아라미드 섬유보강을 실시했다. 한편 1층 바닥 하부에는 지하층의 보일러실에서 부터 각 실까지 연결하는 난방용 배관이 설치되었던 PIT가 존재했는데, 철골프레임의 기초를 설치함으로써 일부 구간의 PIT가 폐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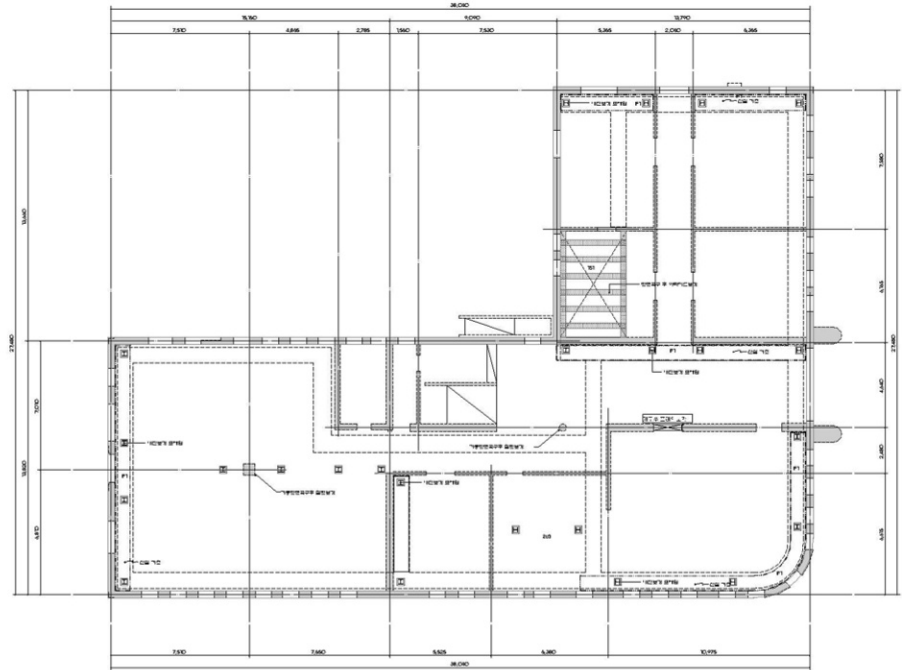


[그림 4-10] 내진보강공사

출처: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78, 80의 그림 재인용

110)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67.

111)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9.



[그림 4-11] 1층 구조보강 평면도

출처: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149의 그림 재인용

또한 나무말뚝의 부후 등이 확인되어 기초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기초가 부담하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1층 바닥에 파일기초를 추가로 설치했다. 공사 후 실시한 건축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서, 본 건물은 종합평가등급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¹¹²⁾



파일기초

파일기초 시공

[그림 4-12] 기초 보강공사

출처: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61의 그림 재인용

112)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61, 97-98.

[표 4-46] 공사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8.03.06.	착수보고회	
2018.04.09.	자문회의 1	
2018.04.10. - 2018.04.30.	1차 철거 공사	
2018.05.15. - 2018.05.30.	기초부 파일공사	
2018.05.23.	자문회의 2	구조관련 개별 자문
2018.06.10. - 2018.06.16.	기초콘크리트 공사	
2018.06.15.	구조안전진단업체 변경	
2018.06.20. - 2018.07.20.	2차 철거 공사	
2018.08.01. - 2018.09.10.	단면복구공사	치핑(chipping) 및 몰탈 시공
2018.08.30.	자문회의 3	
2018.09.10. - 2018.09.20.	방수공사	2층 바닥 슬래브 및 지붕층 바닥공사
2018.09.12.	자문회의 4	
2018.10.01. - 2018.10.15.	아라미드 보강공사	아라미드 보강공사 및 비돌출 강판 보강공사
2018.11.01. - 2018.12.14.	철골공사	
2018.12.06.	설계변경	
2018.12.18.	준공	

출처: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86, 181-187, 198, 209
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3] 구조보강 공사 완료 후 내부 전경

출처: 연구진 촬영 (2023.10.10.)

□ 2단계: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리모델링공사 및 외부보수공사(2019-2020)

• 공사 배경

문화재청은 문화재 내부 콘텐츠 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군산시가 산업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배경으로, 전라북도는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문체부의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건물을 물색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를 대상으로 내·외부 수리(복원) 비용 2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사업에 선정되어 문체부 예산 70억 원 투입이 결정되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건축물의 내·외부 수리(복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시행된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벽체에 부착된 타일이 박리되어 외벽을 통해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벽 보수는 해당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시공업체는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외벽 보수공사를 다음 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외벽 보수공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기간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외부 수리는 실제 공사에서 일부 제외되었고 내부 수리(복원)에 집중하여 시행되었다.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리모델링공사는 문체부 사업으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콘텐츠 제작 및 공간 구성용역의 발주를 수행했다. 공사에 앞서 2018년 10-12월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콘텐츠 기획소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 공간 활용, 전시 콘텐츠 기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공간 중 1층 응접실과 2층 회의실은 사진기록물에 따라 복원하고, 원형 확인이 어려운 공간의 경우에는 원형이 확인된 공간에 준하여 공사하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 창호 등 개구부, 계단실의 조적벽, 주요 구조부를 보존요소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1층에 전시실을 집중 배치하고 2층에 홀로그램 공연장을 배치하는 대안 1과, 건물 하중을 고려하여 1층에 전시실과 홀로그램 공연장을 두고 2층에 추가 전시실을 배치하는 대안 2로 구성된 공간계획을 제안했다.¹¹³⁾

113)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콘텐츠 기획소재 연구용역. (제)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pp.101-104, 111-112, 139-143.



1층 응접실



2층 회의실

[그림 4-14]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내부공간 사진기록물

출처: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콘텐츠 기획소재 연구용역.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p.101의 그림 재인용



[그림 4-15] 공간계획

출처: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콘텐츠 기획소재 연구용역.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p.112의 그림 재인용

실시설계는 이전에 정밀실측조사를 담당했던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했다. 기존 사무소 건물을 전시실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에 해당했다. 1층 응접실을 사진기록물에 따라 복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서 구조보강을 위해 해당 실 중앙부

에 설치했던 철골기둥을 일부 변경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 냉난방,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다.¹¹⁴⁾ 구조보강이 완료된 이후에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했다. 또한 실시설계의 목적은 홀로그램콘텐츠 전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해당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전시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설계안은 2019년 3월의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으로 부의되었다. 외관의 1/4 이상 변경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외관계획에 한정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조건부 가결(엘리베이터, 외부타일 설치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공)로 결정되었다.¹¹⁵⁾ 공사는 공식적으로 2019년 7월에 시작되어 12월에 준공했으나, 실제로는 2020년 4월경까지 전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표 4-47] 건축물 현황과 공사 계획 및 현상변경 허가 검토 대상

분류	현황	계획	비고
용도	사무소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 용도변경
대지면적	929.1㎡	2,609.3㎡ (문화재+동사무소+차량등록소)	3필지 합필 (주차장법)
건축면적	712.7㎡	1,284.42㎡	E.V.실 및 계단실 증축 (건축법)
연면적	1237.48㎡	2,859.55㎡	E.V.실 및 계단실 증축 (건축법)
건폐율	76.71%	49.22% (법정기준 충족)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130.08%	97.56% (법정기준 충족)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E.V.실 및 계단실: 철골조	E.V.실 및 계단실 증축 (건축법)
외관계획 (허가 검토 대상)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화강석 징두리벽, 외장타일, 창호 E.V.실 및 계단실	원형복원 증축
내부계획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응접실, 대회의실 복원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내부 일부 원형복원

출처: 문화재위원회, (2019).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자료. 문화재위원회, p.15의 표 재인용

건물 외부에 대해서는 출입문 및 외부창의 창호틀을 목재로 복원하고, 외부 수직창은 하부 창을 상부로 들어서 여는 오르내리창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건물 내부에

114) 당시 2층에 전시물을 넣기에 구조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슈가 있어, 앞서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구조설계를 수정한 구조업체가 자문을 실시했다. 해당 구조업체는 1층에 철거하지 않은 내력벽이 많이 남아 있어서 2층의 하중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1층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115) 문화재위원회, (2019).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자료. 문화재위원회, pp.15-16.

대해서는 1층 응접실 복원(가구, 조명, 커튼, 카펫 등), 1층(전시실, 응접실, 지소장실, 체험실, 화장실, 로비) 및 2층(대기실, 관리사무실, 홀로그램체험관, 홀)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며, 서측면으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증축되었다.¹¹⁶⁾



[그림 4-16] 창호 복원 및 엘리베이터·계단실 증축공사

출처: (상)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7-8의 그림 재인용; (하) 연구진 촬영 (2023.10.10.)

- 외부보수공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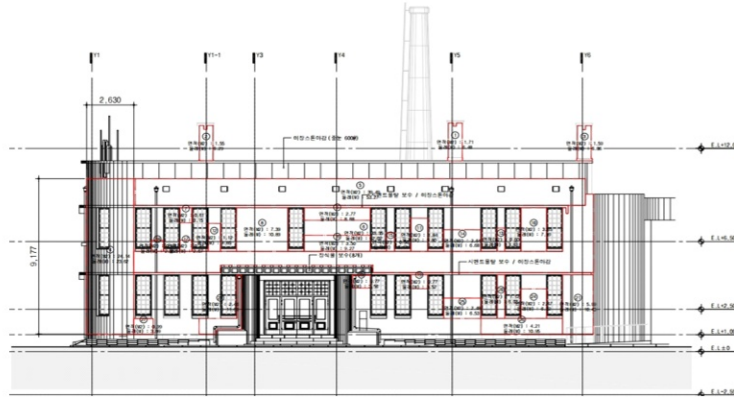
군산시는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리모델링공사 후, 구조보강공사 잔액 및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등 총 약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공사에서 누락된 외부보수공사를 추진했다. 외부보수공사 기간 동안에는 체험존의 운영을 중지했다. 정밀실측조사 및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를 담당했던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수행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외부보수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외부보수공사 시공

116)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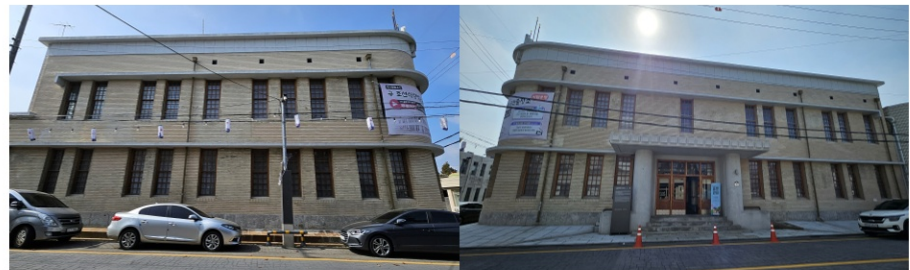
문화재수리업체(보수단청업)가 외부보수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고, 문화재보수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었다. 석공, 미장공 등 수리기능인이 공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수행한 문화재수리업체(문화재실측설계업)가 감리를 담당했다.¹¹⁷⁾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가설공사, 철거공사, 미장 및 타일공사,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진행되었다. 철거공사에서는 외벽 타일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멘트 몰탈을 제거하고 타일 교체범위를 결정했다. 그리고 시멘트 몰탈 제거 후 훼손이 심한 외부타일을 철거했다. 미장공사에서는 미장면을 조사하고 과거 사진자료 및 존치 부분을 참조하여 이와 유사하게 마감했다. 타일공사에서는 타일재료와 규격, 줄눈을 확인하고 타일을 제작하여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타일 중 존치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기로 하여 타일 선정과 관련한 자문회의가 실시되었고, 타일 면적의 약 40%는 타일면을 정리하여 이물질 등을 제거해 재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¹¹⁸⁾



[그림 4-17] 정면부의 타일 교체면적(붉은색 상자 표기)

출처: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27의 그림 재인용



[그림 4-18] 외부보수공사 후 외관

출처: 연구진 촬영 (2023.10.10.)

117)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61.

118)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12-13, 16, 19, 22, 25-27.

③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주요 쟁점¹¹⁹⁾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공사에서 나타난 수리체계의 쟁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리체계를 기획 - 실측설계 - 시공 단계로 구분했을 때, '기획 단계'에서는 ①보존·활용을 위한 장기계획의 부재,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②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③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시공 단계'에서는 ④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빈번한 발생, ⑤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⑥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라는 쟁점을 도출했다. 또한 '실측설계·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⑦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부재, ⑧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⑨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⑩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이해도 저하, ⑪특히 적용의 배제라는 총 11개의 쟁점을 확인했다.

[표 4-48]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 관련 쟁점

단계	쟁점	업무 현황	관련 주체	개선 방향
기획	①보존·활용을 위한 장기 계획의 부재	-내부 콘텐츠에 대한 문화재청 예산 지원 부재 -타부처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 관여 어려움 -수리 완료 후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문화재 변형	문화재청 소유자/관리자	·수리 전 활용계획 수립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활용계획 수립
실측설계	②내진설계에 따른 과도 한 구조보강	-자문위원과 협업 통한 보강안 도출 -자문위원과 업체 간 의견 차이 발생 -문화재 경험 없는 구조업체의 참여 -근대건축 경험 없는 설계업체의 참여	설계업체 구조업체 자문위원	·문화재 경험 많은 구조업체의 협업 ·문화재 구조보강 의 절충안 마련 ·현행법 예외 적용
	③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 형 훼손	-용도변경 및 대수선 이상 건축행위 에 대한 건축 인허가 절차 수행 -자문위원과 협업 통한 설계안 도출 -허가권자 재량에 따른 적용	공무원 설계업체 자문위원	·현행법 예외 적용 ·문화재 활용 우 수사례의 공유
시공	④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의 빈번한 발생	-정밀안전진단과 현황과의 큰 차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발생	시공업체 구조업체 자문위원	·설계 단계에서 부 분해체 도입
	⑤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설계도서와 현황과의 큰 차이 -추가공사 및 건축성능 일부 포기 -한정된 예산에서 자문위원과 협업 통한 해결방안 모색	공무원 시공업체 자문위원	·적정 예산 수립
	⑥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	-수리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 부족	시공업체	·적정 예산 수립

119)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주요 쟁점'에서는 출처 표기를 대신하여 [표 4-41]에 표기된 일자의 관계자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단계	쟁점	업무 현황	관련 주체	개선 방향
		-외주업체의 수리보고서 작성		·자문위원 검토 후 발간 ·공사와 수리보고서 별도 발주
실측설계 ·시공	⑦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부재	-정밀실측조사 내용 미반영 -내부 변형에 대해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설계·시공업체 간 보존 범위 의견 차이 발생	설계업체 시공업체 문화재위원회	·명확한 보존 범위의 설정
	⑧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문화재위원으로 자문단 구성 -자문 개최로 인해 공사 진행 지연 -구조 전문 자문위원의 부족 -자문위원간 의견 차이 발생	공무원 자문위원 설계업체 시공업체	·기술사 등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
	⑨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실측설계기술자의 근대건축 전문성 부족 -보수기술자의 자격요건 부재	설계업체 시공업체	·보수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⑩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이해도 저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 -담당자의 실수 발생	공무원	·업무절차와 내용 숙지 방안 마련
	⑪특허 적용의 배제	-경쟁입찰에서 감사 대상 -지자체에서 대개 특허 적용 배제	공무원 설계업체 시공업체	-

출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연구진 작성

□ 기획 단계

•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장기계획의 부재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에는 문화재 내부 콘텐츠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고보조사업 시 건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감 등 내부공사는 이루어지지만, 전시 등 내부 활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수리까지는 잘 진행되었지만,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선식량영단에서는 건물 활용을 위한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지만 문체부 예산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 문화재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 또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공사를 발주 및 관리했으나 건축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¹²⁰⁾

120) 건물의 역사적 가치 때문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문화재는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70억 원 예산의 상당액이 전시업체에 투입되어 요란한 전시시설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화재의 수리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인 장기계획이 부재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구조보강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활용을 위한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면서, 이미 변형이 이루어진 문화재에 대해 구조보강의 일부 변경 및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했다. 처음부터 활용계획이 존재했다면 구조보강을 위한 구조설계도 이를 반영하여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문화재 활용계획 수립의 어려움도 논의되었다.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했으나, 문화재를 실제로 해체해보면 구조 상태가 열악하여 계획했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활용의 방향이 먼저 세워지면 이에 맞춰서 과도한 구조보강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구조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보강될 수 있는지 해당 문화재의 구조적 한계를 먼저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맞춰서 어느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나아가서는 역사적 건물을 활용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기존 건물의 분위기와 공간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 등을 최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 실측설계 단계

• 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등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내·외부에 내진보강 후 마감 처리하면 되지만,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외부를 변형하기 어려워 내부에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 동시에 벽체의 창호를 간섭하면 안 되는 제한이 따른다. 이처럼 구조보강을 내부로 숨기게 되면 건축물 전체에 손을 대야 해서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등록문화재의 구조보강을 외부로 노출하는 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구조보강의 시각적 노출을 지양하는 문화재적 관점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이 건축물은 문화재 내진보강의 상당히 초기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문화재위원과 업체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구조보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설계승인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 내부에 설치된 철골프레임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 근대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구조업체가 일반적인 구조설계 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조보강재의 시각적 노출과 기존 건축물과의 결합방식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 문화재 경험이 있는 구조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설계와 구조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¹²¹⁾ 또한 구조보강공사를 담당 시공업체에 따르면, 설계업체는 전통건축을 중심으로 설계해왔기 때문에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도서의 작성을 외주하게 되고, 외주를 통해 받은 설계도서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자문위원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기동 신설 개수 최소화, 기존 구조체 활용 등 문화재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보강방법을 도출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재를 보강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에 대해 아주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타협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현행법을 예외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¹²²⁾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구조설계의 수정과 안전진단을 담당한 구조업체에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조보강에 20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구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적은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한 구조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상 몇 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골프레임이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해 실제로는 철근과 철골프레임이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어 현재의 철골프레임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행법 예외 적용 의견에 대해서는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를 묻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용도변경 및 대수선 이상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변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실

121)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에 따르면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보수설계’ 이외에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에서 보수설계와 구조안전진단을 각각 발주하게 되면서 설계와 구조 간 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설계와 구조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엔지니어링업체가 일반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방식으로 작성한 도서를 납품하게 되어, 구조설계의 결과물을 설계에 적용하지 못하고 재작업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에 국고보조사업이 진행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계와 구조를 공동으로 발주했으며, 구조에서 도출한 방안에 대해 설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문위원은 문화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초기부터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22) 등록문화재는 지어진 지 50년 이상이 되어 정밀안전진단 D, E등급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더 높은 등급을 바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문화재위원의 의견이 있다. 그런데 소유자·관리자 입장에서는 D, E등급을 받게 되면 건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철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로는 용도를 변경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거나, 건축 인허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리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화재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조선식량영단의 경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절차를 밟음에 따라, 현행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설계업체와의 면담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및 「소방시설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타법에 의한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소유자가 허가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권자 재량으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되었다.¹²³⁾ 하지만 특히 소방과 관련해서는 소방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여 완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소방시설법」에 의거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건축물에서는 문제 시 되지 않으나, 문화재에서는 벽체와 천장에 구멍을 뚫고 물을 댈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조선식량영단의 경우에는 구조보강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위해 다시 변형을 가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 등 편의와 관련해서는 신축 및 증축 시에는 BF(Barrier Free)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에서 시청 경로장애인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협회가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협회 담당 직원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밖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갖춰야 하지만, 창호를 복원하면 현행 단열기준에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조선식량영단에서는 창호 외관은 복원했지만, 내관은 단열창을 설치해 단열성능을 확보했다.

이러한 현행법 적용에 따른 문화재 원형 훼손 문제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건축법」 적용 예외 규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 등록문화재가 박물관, 전시관 등으로 많이 활용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 편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밀한 방안 없이는 예외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좋은 활용 사례들이 많이 제시·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시공 단계

-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빈번한 발생

123) 따라서 개인 소유의 문화재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조보강공사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면서 실제 현황과 정밀안전진단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고 건축물의 상태가 예상보다 열악했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구조설계의 수정 및 추가공사가 불가피했다. 이는 조선식량영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건축연한, 신축 및 보수 과정에서의 시공법 등에 의해 대부분의 근대건축에서 발견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구조업체에 따르면 조선식량영단은 구조적으로는 철거해야 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콘크리트 중성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목조건축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부재의 교체가 가능하지만,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일부 교체가 불가능하다. 중성화 부분을 모두 걷어내고 다시 구축하려면 건축물 해체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크게 변형을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과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성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¹²⁴⁾

이에 대해 건축물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측설계 단계에서 부분해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문화재 수리에서 가장 중요하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종의 샘플링 해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정확한 설계도서가 작성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목조의 경우에는 수종, 함수율 검사 등을 통해 내구성 평가가 가능하지만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에는 일부 부위만의 해체가 어렵다는 점, 설계 단계에 해체조사가 이루어지면 공기가 너무 늘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 제기되었다. 또한 해체조사의 금액산정 기준, 용역 발주방법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표 4-49]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비(천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687,837	1,651,192	감) 36,645	- 기초공사 파일 감소 - 철거공사 폐기물 증가 - 철골 물량 감소 - 시스템 동바리 추가 - 우레탄 방수 추가

출처: 군산시. (2019).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209의 표 편집

현장에서 추가된 공사의 예로는 방수공사를 들 수 있다. 슬래브 보강공사에서는 슬래브 하부를 해체하여 내부의 녹슨 철근에 방청작업을 하고,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시에 미장을 해서 면을 만들고, 그 위에 프라이머를 시공하여 아라미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

124) 대지 내 위치한 굴뚝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중성화가 벽체 안쪽까지 완전히 진행되었고 철근이 부식되어 공사 당시 이슈가 되었다. 드론으로 내부를 촬영하여 안전진단 및 자문회의를 진행했으며, 콘크리트 중성화가 되더라도 원통형 구조 자체가 가지는 내력에 의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간단한 보수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누수가 발생하면 프라이머가 떨어지면서 아라미드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방수공사를 추가 실시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하중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제대로 계획되지 못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2층에 철골프레임 설치를 위해서는 내부로 장비를 들여야 했지만, 사전에 장비 하중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1층에 추가보강이 필요했다. 또한 군산시 제3청사로 쓰이는 동안 누수가 지속되면서, 방수 목적으로 슬래브 위에 45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고정하중이 많이 초과된 상태였다. 이를 해체하는 과정에 시스템 동바리(수직재, 수평재, 가새를 정글짐처럼 설치하여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시 시공업체가 피력하여 건물 전체에 설치할 수 있었다.

- 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공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있어 증액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구조업체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에서 설계 단계의 현장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다. 설계도서와 건물의 현황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때문에 시공업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비용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일부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조 분야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치에 맞는 안전성 확보를 제일 중요시 하지만,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자문위원과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업체에 따르면 조선식량영단의 시공 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성능이 확보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나,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등급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적정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전문가가 초반부터 투입돼서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리노베이션 평당 단가 등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신청한 예산의 30-40%가 삭감되어 확정된다고 설명한다.¹²⁵⁾ 이렇게 확정된 예산 안에서 구조보강뿐만 아니라 공

125) 시공업체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설계검토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계내역서만 살펴보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공 상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진단 등 그 근거가 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해지는 추가공사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에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

공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공사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정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리보고서 예산은 공사비에 포함되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 몇 십만 원에 불과하여, 보고용 기록은 되지만 향후 공사사례로 활용 가능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수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3D 스캔 등을 통해 공사 전·후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 1.5-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되었다.

시공업체가 직접 수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구조보강 공사를 담당한 시공업체는 해당 수리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대개는 시공업체가 외주업체에게 적은 비용으로 보고서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주업체가 공사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리보고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실측조사보고서, 기록화보고서는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발간되지만,¹²⁶⁾ 수리보고서는 그 내용과 체계를 검증하는 단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시공 단계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작성해야 하므로 수리보고서는 준공 후에 발간될 수밖에 없는데,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비가 모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수리보고서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사와 수리보고서를 별도로 발주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실측설계 · 시공 단계

- 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부재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문화재 등록을 위한 조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의 가치는 기록화 및 정밀실측조사 용역을 통해 상세히 서술된다. 해당 보고서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정리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또한 발간된 보고서는 문화재청, 자문위원 및 광역

126)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실측조사보고서, 기록화보고서는 대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의 최종 감수를 거쳐 발간되고 있다.

지자체 내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되며, 문화재청은 이를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실측조사 내용이 구조보강공사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거론되었다. 정밀실측조사를 담당한 업체에 따르면 정밀실측조사에서 건축물의 특징, 중요 요소, 복원의 방향 등을 제시했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보 하부의 모접기, 천정 몰딩 등 조선식량영단의 건축적,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들도 공사 단계에서 예폭시로 마감처리되어 추후 해체 시 소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밀실측조사와 실시설계의 용역 시기가 비슷하게 수립되면, 정밀실측조사의 내용을 실시설계업체에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담당 업체에게 해당 문화재의 중요한 특징과 주안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²⁷⁾

그리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외관 면적의 1/4 이상 변경에 대해서만 현상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고 내부 변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실제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내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언급되었다. 등록문화재는 활용에 방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내부 변형의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건축연한이 오래됨에 따라 벽체에 부착된 타일이 박리되면서 외벽을 통해 전체적인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외벽 방수공사를 겸한 외부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누수 부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타일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나 문화재 원형 유지의 원칙하에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타일만 교체함에 따라, 방수성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하지만 문화재적 관점에서는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균열부분만 최소한으로 보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보수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문위원과 업체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화재 수리는 일반건축물 공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 시공의 편의성, 합리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문화재청은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세부사업지침을 공지하고 있다. 설계 혹은 착수단계부터 관계전문가 1인 이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127)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등록대장에 건축물의 가치,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요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설계업체에서 이를 참고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등록 시 확인한 가치, 기록화 및 정밀실측조사 시 새롭게 확인한 가치, 공사 시 새롭게 확인된 내용 등이 등록대장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식량영단의 경우 구조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분야 2인, 구조분야 2인, 외부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분야 2인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개 현 문화재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표 4-50]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지침 예시

문화재명	사업내용	세부사업지침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외벽 줄눈 보수	설계단계부터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전)문화재위원 또는 (전)문화재전문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동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캐롤라이나관 외벽 줄눈을 보수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2023).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추진 지침 알림,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7827685> (검색일: 2023.06.19.)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자문회의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문회의의 횟수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자 간의 의견이 상반된다.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자문의 횟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며, 자문위원이 매일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게 되므로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결정을 반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공사 진행 중에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으로 투입된 경우에는 앞서 진행된 공사내용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¹²⁸⁾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거치게 되므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결정하기보다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자문위원들의 일정 조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용역이 중지되기 때문에, 자문 횟수가 많아질수록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식량영단과 같이 구조적인 이슈가 있는 문화재 수리에는 구조 분야 자문위원이 필요하지만, 문화재위원 가운데 구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적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따라서 구조보강을 위한 자문회의에서도 사안과 관련 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는 자문단의 구성에 대한 문제이다. 자문단이 건축과 구조 분야로 구성되는 경우 자문위원 간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건축 분야의 경우에는 문화재에 변

128) 조선식량영단 구조보강공사에서는 철골프레임이 벽체로부터 일정 간격 떨어져 설치되었는데, 이는 구조 성능 및 공간 활용도를 저하하는 방법이었지만 공사 진행 중에 자문단으로 참여하게 되어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자문위원이 언급했다.

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구조 분야 자문위원은 구조적 안전성에 입각하여 자문하게 되므로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견 충돌 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자문위원간 서열 문제 등으로 유의미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등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현재 자문단은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한 교수로만 구성되고 있지만, 조선식량영단과 같이 기술적 요소가 들어가는 공사에서는 해당 업종 종사자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¹²⁹⁾

- 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과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실측설계기술자는 일반적으로 전통건축 위주로 설계해왔기 때문에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면허가 필요하다는 자격요건은 있지만, 대개 시공에 대한 경험이 없고 특히 근대건축의 시공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결국 외주를 주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보수기술자의 경우에는 실측설계기술자와는 달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부재하여,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도 수험공부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현재 보수기술자의 대부분은 비전공자여서, 건축적인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¹³⁰⁾

전통 목구조의 경우 대개 규모가 작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시공이 용이한 반면, 근대건축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도 건축물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전공분야 졸업 후 필수 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혹은 보수기술자에서 근대건축 분야를 분리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현재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지 않으나, 보수기술자는 건축적 소양이 부족하고 일반 건설기술인은 원형 보존 등 문화재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딜레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었다.

129) 의사 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여러 명 두기 보다는, 교수 1인이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유래, 문화재로서의 가치, 필수보존요소 등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가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30) 따라서 시공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설계업체를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 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이해도 저하

공무원 순환근무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점도 문화재 수리에서의 어려움이다.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만, 담당이 교체되면서 업무를 다시 익혀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¹³¹⁾

한편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에서는 인수인계와 업무지침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 문화재 수리 담당자는 대개 시설직(건축직)이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매년 설계용역 발주 및 납품, 설계승인,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공사발주의 순서로 진행하고, 4월에는 차년도 사업 신청의 업무가 있다. 인수인계 필요 시 이러한 내용을 인수인계서로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거나 후임자가 인수인계서의 내용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

한편 업무지침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국고보조사업 신청안내, 조건사항, 절차에 대한 지침을 공지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정확히 숙지하기 보다는 대개 내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수리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하거나 이를 시·도에 위임, 혹은 시·군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개별 사업마다 설계승인 권한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내려주는데,¹³²⁾ 사업별로 지침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업무절차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특허 적용의 배제

조선식량영단에는 특허가 아닌 일반공법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특허는 해당 업체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경쟁입찰에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해지며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를 배제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31) 조선식량영단 및 군산세관 수리를 담당한 군산시 공무원은 현재도 지자체에서 문화재 수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다년간 관련 경험을 쌓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132) 설계승인 권한이 시·도로 위임되는 경우, 시·도의 담당 공무원이 설계승인하게 된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는 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 전담요원으로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도마다 1명씩 있으며, 기초지자체에는 없다.

3)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① 문화재 개요¹³³⁾

□ 주요 연혁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에 군산세관 청사로 건립되었으며, 1994년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2018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근대사적)으로 승격되었다. 관세청 소유로 2016년부터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 건축적 특징

1899년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항 이후 호남지역의 대표적 교역항구 역할을 했던 군산항의 개항 초기 주요 공공기관이자 대표적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군산항에 당시 흔적과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본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면적 228.1㎡의 조적조, 목조트러스 지붕의 지상 1층의 건축물로, 개항기 초기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하여 내부를 장식했으며,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정면

배면

[그림 4-19] 기록화조사 수행 시 건물 전경

출처: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2021). 구 군산세관 본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군산시, pp.15-16의 그림 재인용

133) 문화재청. (2022). 2022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권7 근대사적 정기조사서. 문화재청, pp.208-212.

② 수리 경과¹³⁴⁾

[표 4-51] 구 군산세관 주요 수리공사 내역

기간	사업내용	담당업체	예산
2019.11 - 2020.05	종합정비계획 수립	기술자(엔지니어링)	문화재청 (0.4억)
2021.04 - 2021.12	기록화, 실측설계, 정밀안전진단	문화재실측설계업	(0.84억)
2021.12 - 2022.11	보수정비공사(본관 보수 및 주변정비)	보수단청업	(5억)

출처: ㈜화정엔지니어링. (2020). 구 군산세관 본관 종합정비계획, 군산시, p.9; 주식회사 솔종합건설. (2022).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40;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실명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vmnctrlist01.jsp&mn=NS_03_05_01 (검색일: 2023.06.21.) 및 관계자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종합정비계획 수립(2019-2020)¹³⁵⁾

• 배경

구 군산세관 본관은 대한제국 시기에 건립된 청사 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로 비교적 건물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인한 건물 훼손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 군산세관의 현황과 문헌 및 기존 연구자료 등 고증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보존·정비·복원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수행했다.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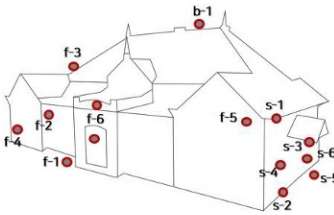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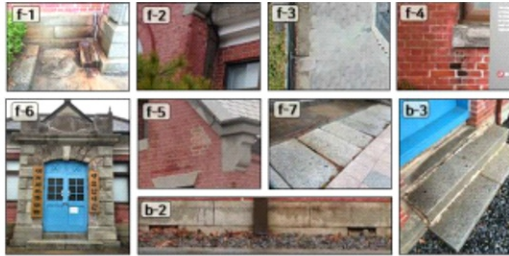
과업은 일반 현황조사,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문화재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구상안, 종합정비계획, 관리 및 활용계획,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미래상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구 군산세관 본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대상지로 하여 총 3단계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 사업으로는 구 군산세관 본관의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는 문화재 활용영역 및 세관 업무영역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사업, 3단계로는 문화재 활용방안의 본격적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마련했다.

134) '수리 경과'는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계자로부터 협조받은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출처로 표기했으며, 이외에는 출처 표기를 대신하여 [표 4-41]에 표기된 일자의 관계자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135) ㈜화정엔지니어링. (2020). 구 군산세관 본관 종합정비계획, 군산시, pp.3, 5-6, 180, 235-240.

[표 4-52] 구 군산세관 본관 정비대상 현황

외관 정비대상 위치 및 사진		정비대상 현황(외관)	
			
정비대상 현황	사진번호	정비대상 현황	사진번호
기단부 환기구 이물질 폐쇄	b-2	조적조(적벽돌) 풍화 및 변색, 백화	f-4
석조(화강암) 균열 및 이격, 코킹 탈락	f-7, b-3	조적조(적벽돌) 보수 흔적	f-5
석조(화강암) 풍화 및 변색	f-1	정면 출입문 상부 콘크리트 풍화 균열	f-6
지붕 슬레이트 노후, 변색 및 탈락	f-3	정면 출입문 틀 노후화 및 문짝 처짐, 폐쇄	

출처: ㈜화정엔지니어링. (2020). 구 군산세관 본관 종합정비계획, 군산시, pp.134-13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53] 단계별 정비계획

구분	목표	추진내용
1단계	구 군산세관 본관 보존·관리	- 조사·연구(정밀실측 및 기록화, 구조안전성 평가) - 본관 지붕해체 조사 및 보수, 내·외부 보수 수리
2단계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환경 정비	- 마당 및 식재정비, 경관 조명, 부속건물 정비 등
3단계	구 군산세관 본관 활성화	- 조사·연구(시굴·발굴조사, 정밀점검, 모니터링) - 전시 개편계획 및 제작설치, 활용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방향제언	구 군산세관 본관의 권역 확대	- 영역 확장 및 연결(내항, 철도 유희부지 활용 등) - 원형복원 타당성 학술연구 및 국유재산 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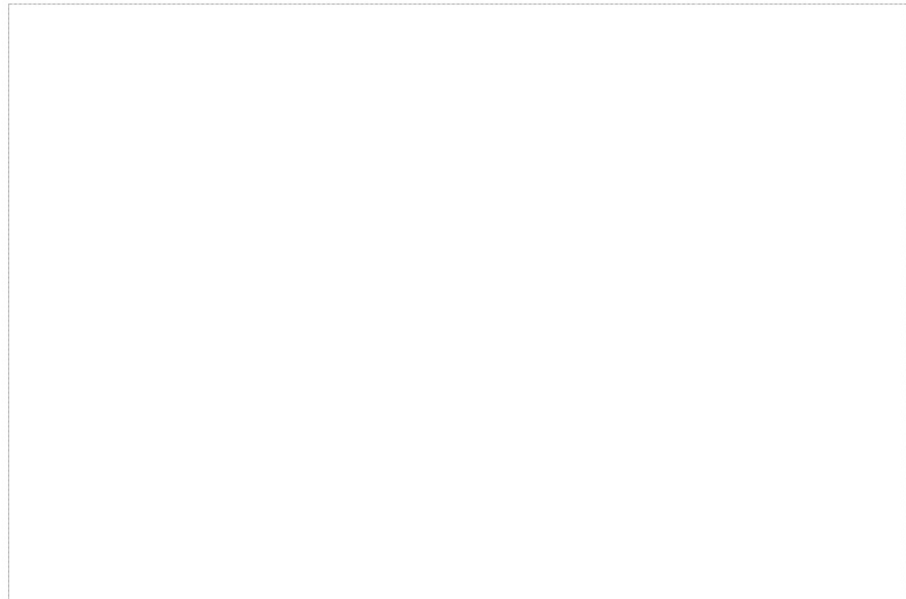
출처: ㈜화정엔지니어링. (2020). 구 군산세관 본관 종합정비계획, 군산시, p.236의 표 재인용

□ 기록화, 실측설계, 정밀안전진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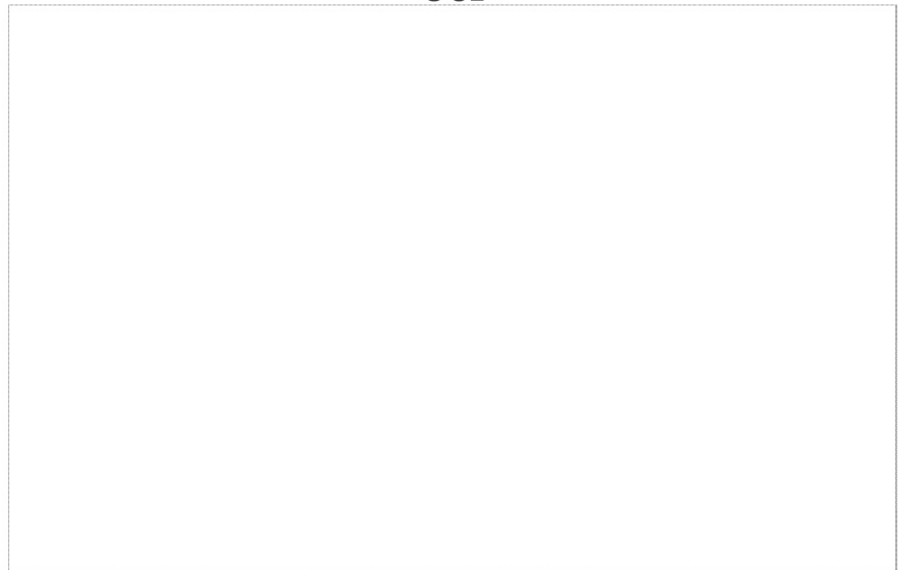
• 기록화¹³⁶⁾

구 군산세관 본관은 창문의 변형과 내부 평면의 변화 외에는 외형상 큰 변화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다. 근대기에 건립되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세관 건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지만, 현재까지 기록화조사나 정밀실측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문헌 및 기존 조사자료를 정리하고, 부재, 축조기법, 원형 등을 조사하고 전산으로 기록화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136)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2021). 구 군산세관 본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군산시, pp.35.



1층 평면도



종단면도

[그림 4-20] 구 군산세관 본관 현황도면

출처: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2021). 구 군산세관 본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군산시, pp.164, 173의 그림 재인용

- 실측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구 군산세관 본관의 보수정비공사는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화를 통해 확보한 고증자료(「세관청사지도」(1906년 탁지부건축소 제작), 상량목서(1908년),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원형을 추정하고 누수 원인을 파악하

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측설계가 이루어졌다.

지붕 누수와 관련해서 보수정비공사 이전에도 수차례 보수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건물 정면 중앙부 평지붕의 광범위한 균열을 통해 비가 심각하게 새는 상황이었다. 지붕 경사가 급격히 완만해지는 부분에서 물 정체가 발생하여 내부에도 누수 흔적 확인되었으며, 동판 후레싱 부분도 접어서 설치하지 않고 맞대서 실리콘으로 사이를 메꾼 방식으로 누수에 취약했다.

실측설계 당시 지붕의 주된 재료는 비늘모양 석면 슬레이트(3겹 잇기)였고, 석면 사용이 금지된 이후 CRC보드로 수리된 부분도 확인되었다. 지붕 재료를 비늘모양 천연 슬레이트로 고증했던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림 4-21] 구 군산세관 본관 지붕

출처: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2021). 구 군산세관 본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군산시, pp.115, 117의 그림 재인용

한편 지붕 보수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설계 범위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창호 복원과 배수체계 정비를 포함하게 되었다. 창호 복원의 경우, 유일한 도면자료인 1906년 도면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개폐 방식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설계를 했다. 지속적인 창호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유형의 창호가 있어 사진만으로는 원형 고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형이 개폐 가능한 창호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고정창으로 설계했으며, 여닫이창이 미닫이창으로 변형된 경우에도 관리 및 활용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미닫이창으로 유지했다. 그리고 창호의 외형은 원형 복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계속 사용하기 위해 내부로 이중창을 설치했다. 원형 유지의 원칙은 외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변형이 허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측설계(안)은 2021년 문화재수리기술포럼 근현대분과의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지붕 마감재 시공방법, 배수로 설치방법, 창호 목재수종 선정, 정밀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

에 대한 사항은 기술지도단의 자문을 받아 결정, 창호 복원기준(시기) 및 설계 자문의견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방서에 명시)로 의결되어 설계승인을 받았다.¹³⁷⁾

□ 보수정비공사(2021-2022)¹³⁸⁾

• 공사 개요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최소 2명 이상 포함)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누수 방지 등을 위한 지붕 보수(누수로 인한 내부 마감 포함) 및 창호 복원, 주변 배수정비, 기록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문화재청의 수리지침으로 하여 보수정비공사가 실시되었다. 계약을 체결한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가 공사 착수 후 수입자재 발주, 해체 전 자문, 부분해체 후 자문, 완전해체 후 자문, 설계변경,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의 과정을 거쳐 준공했으며, 이후 수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가설공사, 목공사, 조적 및 수장공사, 석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창호공사, 철공사,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철거공사, 포장 및 배수공사가 진행되었다.

• 목공사

지붕 누수 등으로 인해 부식된 개판의 교체와 각 마루를 구성하는 종심목 및 판재의 해체 조립을 위한 목공사가 수행되었다. 교체부재의 선정을 위한 현장자문회의를 거쳐, 현장에서 육안 및 도구를 이용하여 부후된 부재를 면밀히 확인한 후 교체물량을 결정한다는 기준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설정되었던 30%의 교체율을 16%로 낮춰, 재료의 원형 보존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추후 보수공사에서 원부재와 교체부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교체되는 모든 부재에 '2022년 교체'라는 먹도장을 찍어 표시했다.

• 지붕 및 흙통공사

지붕공사의 전체 시공은 석면슬레이트 기와 및 CRC보드 기와 해체, 목공사 및 하부 개판 해체 보수, 처마 끝단 동판 설치, 개량아스팔트시트 설치, 화강석 갑석 내측 동판 및 회침골 동판 설치, 연결부 실리콘 코킹, 천연슬레이트 기와 설치, 마루 날개동판 후레싱 설치, 마루 동판 후레싱 설치, 지붕 장식철물 설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누수 원인의 차

137)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2021). 2021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근현대분과위원회 회의록.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p.6.

138) 주식회사 솔종합건설. (2022).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41-45, 138-142, 146, 157-174.

단을 목적으로, 수급된 재료의 특성과 문화재 현황을 고려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알루미늄 창호를 로마네스크 양식의 목재창호로 복원하고 단열을 위한 PVC창호를 제작·설치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원형으로 추정되는 정면 상부 고측창의 수종 분석을 거쳐 목재창호의 재료를 삼엽송으로 결정했으며,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창호에 대해서도 원형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4-22] 교체부재 선정 및 개판 조립

출처: 주식회사 솔종합건설, (2022).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p.142, 146의 그림 재인용



해체 전

내부 PVC창호 설치

외부 목재창호 설치

[그림 4-23] 기존 창호 및 신규 창호(배면)

출처: 주식회사 솔종합건설, (2022).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175의 그림 재인용

③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주요 쟁점¹³⁹⁾

근대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수리공사에서 나타난 수리체계의 쟁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❶과업 범위의 확장, ❷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시공 단계'에서는 ❸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❹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을 주요 쟁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공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❺설계변경의 발생, ❻상세한 수리 보고서의 부재라는 쟁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표 4-54] 구 군산세관 본관 수리 관련 쟁점

단계	쟁점	업무 현황	관련 주체	개선 방향
실측설계	❶과업 범위의 확장	-용역비 증가 없이 과업 범위 확장 -공사비 예산 확보 어려워 해체보수 범위 변경 불가능	공무원 설계업체	-
	❷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다양한 전공분야 -충분하고 전문적 검토가 어려움	수리기술위원회 설계업체	·현장 자문단이 설계승인 담당
시공	❸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근대건축 전문 기능자 및 재료 수급 어려움	시공업체	·문화재청이 재료 및 생산업체 관리
	❹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	-시방서 표준화의 어려움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적용 -근대건축 품셈 부재	시공업체	-
	❺설계변경의 발생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중지 -설계변경비에 대한 금액 기준 부재 -원설계자가 설계변경 도서 작성했으나, 시공 단계에 참여하지는 않음	설계업체 시공업체	·설계의 단계 구분
	❻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	-수리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 부족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한 수리보고서 확보 -수리이력 추적 어려움	설계업체 시공업체	·적정 예산 수립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DB 체계적 구축

※ ● 번호 표기: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 번호 표기: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출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연구진 작성

□ 실측설계 단계

- 과업 범위의 확장

설계용역(기록화, 실측설계,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에 용역비 증가 없이 과업 범위가 확

139)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주요 쟁점'에서는 출처 표기를 대신하여 [표 4-41]에 표기된 일자의 관계자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장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되었다. 원래 설계 범위는 지붕 보수에 한정되었으나, 지붕 및 창호, 기타 정비로 확장되었고, 기록화사업도 본관에 한정되었으나 창고를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한편 전면부 평지붕에 대해서는 3D스캔을 통해 지붕층 두께가 기존 도면에 비해 굉장히 두껍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대략적 하중이 42톤으로 계산되어 그 구조적 안전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공사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해당 부분을 해체보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2020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처음 조직되어, 근대사적 중 해체보수공사에 한해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기술과가 설계승인하게 되었다. 수리기술과의 설계승인을 받으면, 근대문화재과의 현상변경 절차를 갈음하게 된다. 당시 해체보수공사에 해당했던 군산세관이 근대사적으로서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분과의 첫 심의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위원들의 전공분야가 다양하여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위원 가운데 근대건축 전공자는 소수였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집약적으로 다뤄야 해서 사안에 대해 충분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문단이 심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시공 단계

- 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시공업체에 따르면 시공방법이 결정되어도, 축조 당시의 기법에 숙련된 기능자의 수급이 어려워 여러 수소문 끝에 기능자를 섭외할 수 있었다. 조선식량영단 외부보수공사에서도 외벽 타일 떠붙임 경험에 있는 기능공의 섭외가 어려웠음이 수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어,¹⁴⁰⁾ 이는 근대건축을 수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임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한 것과 같은 재료를 수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소수의 수요에 따른 별도의 재료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보다 전문적인 업체 선정을 위하여 근대건축 재료의 생산업체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 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

전통건축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표준시방서 수립이 가능하지만, 근대건축은 다종다양하여 표준시방서 수립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시공업체에 따르면

140)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p.30.

조선세관 공사에서도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가 아닌, 일반건축공종에 해당하는 해당 공종별 일반시방 및 특기사항을 기록한 특기사방서가 적용되었다. 품셈에 근대건축에 대한 사항이 부재하여, 현대건축 품셈을 적용하거나 전적처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¹⁴¹⁾

- 설계변경의 발생

경미한 설계변경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고 여러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산세관의 설계변경 승인에는 2달 반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대개 설계변경비는 시공업체 재량으로 공사비에서 지출하게 된다. 설계변경 시 현장 조사비용 등 여러 비용이 소요되지만, 설계변경비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군산세관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및 수리기술과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승인 시 설계변경비를 따로 책정할 수 있었다.

한편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설계자가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당시 문화재위원 위원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설계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설계업체가 시공 단계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만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설계업체에서는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체 전 설계 및 해체 후 설계라는 2단계의 설계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¹⁴²⁾

- 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

예산이 소액으로 책정되어 아주 간략한 수리보고서가 발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관행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수리 전후 비교 사진 및 대략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 설계업체가 수리이력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 예산이 책정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거론되었다.

공유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긴 하나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설계업체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만 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했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141) 예를 들어 벽돌 교체 시 벽체를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벽돌을 한 장 씩 파내야 하지만, 쪼아내는 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142) 설계 단계에서 부분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업체가 시공업체와 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해체부위가 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해체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가설계를 하되, 시공 단계에서 해체가 마무리되었을 때 설계를 최종 완료하는 설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최근 설계비가 낮아지고 인건비가 상승하여, 2단계 설계 시 적정 설계비용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및 구 군산세관 본관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현 문화재위원 7인(전문분야 근대건축, 건축구조) 및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7인 등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단계별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식량영단과 군산세관의 수리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해당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행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앞서 관계자 심층면담에서 확인한 쟁점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진행하여 해당 쟁점이 주로 발생하는 문화재 유형을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국가등록·지정문화재 공통으로 재분류했으며, 관계자 심층면담에서 다루지 않았던 쟁점을 추가 도출했다. 이를 종합 정리한 것이 다음 표와 같다.

[표 4-55]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문화재 분류	단계	쟁점	업무 현황	개선 방향	의견수렴	
					위원회	기술자
1. 등록	기획	①보존·활용을 위한 장기 계획의 부재	-수리 완료 후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문화재 변형	·수리 전 활용계획 수립 ·현황조사, 구조진단, 활용계획 통합	●	○
		❶불명확한 추진 절차 기준	-추진 절차 등 기준 부재 -공사유형별 추진절차 복잡하지만, 관련기준 없어 사업 초기 시간 소요 -경미한 공사, 긴급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 적용	·등록문화재 수리 체계 법적 근거 마련 ·공사유형별 추진 절차 마련	●	○
	실측 설계	②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를 따르지 않아 문화재 변형을 막는 수단 부재 -구조기술사가 일반적 구조보강 방식 적용하여 원형 훼손하는 설계 작성 -문화재 경험 없는 구조업체의 참여	·관계법령과의 관계 설정 ·설계-구조의 공동발주 ·문화재 경험 많은 구조업체와 설계 업체의 협업	●	○
				·사례의 전반적 조사		○
		③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대수선 이상 시 소방, 전기, 단열, 장애인시설 등 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현장에서 합리적 절충안 도출 어려움	·현행법 예외·완화 적용 및 성능보안대책 마련 ·수리 사례집 발간	●	○
						○

문화재 분류	단계	쟁점	업무 현황	개선 방향	의견수렴	
					위원회	기술자
	시공	⑤ 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설계도서와 현황과의 큰 차이 -추가공사 및 건물성능 일부 포기	·적정 예산 수립	●	○
	실측 설계 ·시공	⑧ 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자문단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일정 조율 및 의견 통합 어려움 -각 단계별 칸막이를 넘지 못함	·공사유형별 책임자문위원 및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문화재위원으로 자문단 구성 -구조 전문 자문위원의 부족 -학교 배출 인력 감소 및 전문가 현장경험 부족	·전문가 인력 양성 ·기술사 등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	●	○
			⑨ 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실측설계기술자의 근대건축 전문성 부족 -보수기술자의 자격요건 부재	·자격취득 개선 ·경험 보유 기술자가 입찰 참여 ·근대건축 기술자 양성	○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자 참여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수리		○
			⑪ 특허 적용의 배제	-경쟁입찰에서 감사 대상 -지자체에서 대개 특허 적용 배제	·문화재청 인정 특허 적극 적용	○
			⑫ 적은 이윤에 따른 수리업체 사명감 부족	-이윤이 적어 수리품질 기대 어려움	·용역비 현실화 통한 수리업체 독려	●
2. 지정	실측 설계	②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나 심의대상에서 배제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수리기술위원회가 기술적 자문 실시	●	●
			-수리기술위원회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과 유사	·실무기술자 도입 ·문화재위원회, 수리기술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분리 ·수리표준서 수립	●	○
	공통	① 과업 범위의 확장	-수리기술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작성된 서류로 판단 -문화재위원회 결정사항을 수리기술위원회에서 반복 어려움	·합동위원회 운영	●	
3. 공동	실측 설계	① 과업 범위의 확장	-낮은 설계비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	·기본-실시 분리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 산출		○
	시공	④ ⑤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빈번한 발생	-정밀안전진단과 현황과의 큰 차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발생 -현재 조사는 예산 확보를 위한 간략한 수준 -시공비 내에서 설계변경비 책정	·조사·기획 강화 ·설계 단계에서 부분해체 도입 ·책임설계제도 도입 ·변동가능한 예산 범위 확보	●	○ ○ ●

문화재 분류	단계	쟁점	업무 현황	개선 방향	의견수렴	
					위원회	기술자
		⑥⑥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	-시공이 잘되지 못한 부분 작성하면 추후 감사 대상이 됨 -수리 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현황도면, 준공도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음	·감사에서 수리보고서 내용 배제 ·공사도면의 체계적 DB 구축 ·필수보존요소 중심 수리이력 관리	●	○
		⑥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근대건축 전문 기능자 및 재료 수급 어려움 -현대 재료와 기술의 적용 -수리 후 모니터링 미비	·현황 조사연구 ·대체 재료, 기술의 보급 ·지속적인 모니터링 ·문화재청이 재료 및 생산업체 관리	○	○
		④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	-시방서 표준화의 어려움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적용 -근대건축 품셈 부재	·수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수립	●	○
	실측 설계·시공	⑦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부재	-보존·활용을 위한 수리원칙 부재 -보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각 단계별로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 야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관리 ·가치 평가시 가치요소별 등급화 ·가치 기준의 구체화·세분화	●	○
		⑩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이해도 저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 -담당자의 실수 발생	·업무절차와 내용 숙지 방안 마련	-	-

※ ○ 번호 표기: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11개 쟁점

※ ● 번호 표기: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6개 쟁점

※ ■ 번호 표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도출한 3개 쟁점

출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진 작성

①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쟁점과 개선 방향

□ 기획 단계

- 보존·활용을 위한 장기계획의 부재

수리 완료 후 활용을 위해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은 문화재 수리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문화재 원형 및 현상을 추가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용도, 규모, 구조 등을 변경하는 복잡한 사업인 경우에, 원형 고증 및 공사 추진방법과 공사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 절차가 더욱 요구된다.¹⁴³⁾

14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현재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 현황 조사, 종합정비 방안, 사업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문화재를 중장기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조선식량영단의 경우와 같이 대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¹⁴⁴⁾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고증전문가, 설계자, 기술자 및 콘텐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요구된다. 수리 이후에 활용을 목적으로 재수리하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한 사례로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수리공사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부산광역시 기념물(지정문화재)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을 부산근현대역사관(별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리공사로 시작했으나, 이후 인근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지정문화재)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별관 활용계획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현상공모로 당선된 인테리어업체가, 별관 및 본관의 전체 수리공사에 참여하며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황 조사, 구조 진단, 활용계획 수립 등을 통합 발주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¹⁴⁵⁾

• 불명확한 추진 절차 기준

현재 등록문화재 수리공사의 추진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활용 및 증개축 등 사업 추진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조사 및 설계, 시공에 이르는 문화재 수리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측에서 제시되었다.¹⁴⁶⁾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문화재 수리체계에서 등록문화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4) 문화재청은 문화재 내부 활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위해서는 주로 타부처 사업을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부처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부 콘텐츠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기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자문회의(2023.10.10.)을 통해 확인)

145)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146)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2.10.),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 2023.10.09.)을 통해 확인

※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부산광역시 기념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수리 사례

1. 건물 이력

1929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건설된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해방 후 미군 숙소로 이용되다가 1949년부터 미국문화원으로 사용.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거쳐 1999년에 부산시가 인수하여 2001년에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 지정 후 건물 활용방안을 논의하여 2003년에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개관. 2021년부터 건물 수리를 위해 휴관하여 2023년 1월에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개관. 인접 부지의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부산시 문화재 자료)를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으로 조성하는 공사 진행 중

2. 수리공사의 특징

1) 시대별 내부공간 경험을 위한 2층 슬래브의 일부 절개

- 건물 전면의 대형 홀은 신축 당시 하나의 층으로 건설. 미국문화원으로 사용되면서 내부에 2층 슬래브를 증축하여 2개 층으로 변경. 이때 기존 기둥을 절거하지 않고, 기존 기둥에 H빔을 박고 일부 철골 기둥을 추가 설치하여 2층 슬래브를 증축함
- 원형 유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나, 건물 1층 인테리어는 도서 열람실로 활용하기 위해 크게 변경
- 건물 수리공사 시 일제강점기 및 미국문화원 시대의 건물 모습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부의 2층 슬래브를 일부 절개함

2) 시대별 구조의 노출

- (기둥) 신축 당시 설치된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미국문화원 당시 설치된 철골기둥을 노출하고 설명문을 부착함. 이 밖에 3층에 전시실을 조성하면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추가된 기둥까지, 시대별로 설치된 기둥을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구조)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건물 내진성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본 건물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외에 철골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복합적으로 적용됨. 수리공사 시 이러한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조를 노출시키고 전시물을 통해 설명을 제공함
- (건축요소) 배관, 보의 형태 등을 원래 모습으로 보존

3) 원형 유지에 대한 논의

- (심의) 필요시 부산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음. 2층 슬래브 일부 절거에 대해 부산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침. 동양척식주식회사 당시 모습을 건물의 원형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신축 당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절거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었음
 -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검사 및 내진성능검사를 통해 2층 슬래브 일부를 절개해도 구조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함
- (변형) 건물이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과 기둥 등 구조는 원형이지만 내장재는 원형으로 보기 어려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1층은 도서 열람실로 개조



2층 슬래브 일부를 절개한 건물 전면 홀



1929년 신축 당시 설치된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



미국문화원 당시 2층 슬래브
증축을 위해 설치된 철골 기둥

출처: 부산근현대역사관 관계자 자문회의(2023.04.28.)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2023.04.28.)

또한 등록문화재 수리공사의 추진 절차를 공사규모와 유형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 수리는 전면해체 외에도 부분해체 및 경미한 혹은 긴급한 공사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조선식량영단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에서는 활용계획 수립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나,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긴급한 공사에서는 수리업체 주도의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¹⁴⁷⁾ 본 연구에서는 구조보강에 20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조선식량영단을 심층조사 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등록문화재 수리체계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6] 공사 유형별 수리체계 구분 적용(안)

구분	간소화 절차	일반 절차
공사 규모	경미한 공사. 대수선 미만	대수선 이상
공사 범위	필수보존요소 미포함. 외관의 1/4 미만	필수보존요소 포함. 외관의 1/4 이상
공사 목적	긴급보수공사	복원 공사. 활용을 위한 내부 변경 공사

출처: 연구진 작성

□ 실측설계 단계

- 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정되나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진설계 등 현행 구조기준 적용에 따른 건축적 가치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조기술사가 대개 일반적인 구조보강 개념으로 구조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원형을 훼손하는 설계안이 작성되는 것이 현실이다.¹⁴⁸⁾ 따라서 등록문화재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건축법」을 예외 적용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완화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를 박물관, 전시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구조성능에 도달한 경우에 관계법령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⁴⁹⁾ 이를 위해서는 등록

147)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 및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10.10.)을 통해 확인

148)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149) 조선식량영단의 경우에도 현행법을 완화 적용할 수 있었다면, 구조보강을 하되 과도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새로운 구조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¹⁵⁰⁾ 현재 등록문화재 수리와 관련하여 검증된 공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¹⁵¹⁾ 근현대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구조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도출해내는 연구의 선행이 필요할 것이다.¹⁵²⁾



[그림 4-24] 내진보강 수리보고서의 사례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2020). 서울시립대학교 자작마루 미래유산 내진보강 수리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2021). 서울시립대학교 경농관 및 박물관 내진보강 수리 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건축법」과의 관계 설정이 증장기적 개선 방향이라면, 구조설계와 건축설계의 긴밀한 협업을 수리체계의 절차적 개선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조와 건축분야에서는 의견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설계와 건축설계를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문화재를 변형하는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설계 기간 내에 통합된 설계안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문화재 경험이 많은 구조업체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이다.¹⁵³⁾

- 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구조보강 이외에도 현행법 적용에 따라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 등 편의를 위해 외벽을 일부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내외부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어느 정도 가역적인 수리도 있으나, 대부분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원형 변형이 수반된다. 문화재 수리가 오히려 문화재 훼손과 같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적인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¹⁵⁴⁾

150)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15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2.10.)을 통해 확인

152)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8.31.)을 통해 확인

153)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 및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8.31.)을 통해 확인

154)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2.10., 2023.08.26.) 및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표 4-57] 현행법 적용에 따라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형 사례

구분	내용
구조	·철골 구조보강재 설치
설비	·냉난방 설치 위해 벽체, 슬래브에 천공 다수 발생
전기	·냉난방 설치 위해 원형 천정, 마감재 훼손
단열	·단열재 두께만큼 벽체 두꺼워짐 ·두꺼워진 벽체와, 원형 창호의 문틀 구성과의 차이 발생 ·미장 해체시, 재현하는 미장은 원래 미장의 최종 마감과 유사하게 보일 뿐, 미장의 커를 재현하지 못함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 위해 벽체, 천정 천공 ·지하저수조 설치
편의	·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 설치
계단실	·직통계단 설치를 위해 기존 계단실 철거
난간	·난간 높이가 기존 건축물과 부조화

출처: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2.10.)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자문회의(2023.08.02.)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따라서 과도한 구조보강에 대한 개선 방안과 동일하게, 현행법 완화 혹은 예외 적용 및 구조, 설비, 전기, 단열, 소방, 장애인 편의 등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관계기관 및 수리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리 방법, 재료 등을 정리한 사례집 발간의 필요성도 있다.

□ 시공 단계

- 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실측설계 단계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공사가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확정되어 있어 일부 건물성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에 앞서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실측설계·시공 단계

- 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현재 자문단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 조율과 의견 통합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각 단계별, 혹은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들을 서로 조율해주는 역할도 요구된다. 따라서 공사 규모, 유형별로 이에 적합한 책임자문위원 및 코디네이터 등을 각 사업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¹⁵⁵⁾

155)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 구 공업전습소 본관(근대사적) 수리 사례 (설계 단계에서 가설공사 계획 사례)

1. 문화재 개요

- 지정일: 1981.09.25.
- 소유: 교육부, 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특징: 탁지부건축소 설계, 일본인 요시다 겐조(吉田謙造) 시공으로 1908년 건립된 2층 목조건물. 독일식 비늘판벽과 르네상스 양식을 모방한 외형을 갖춘. H자형 평면으로 중앙부 현관 위치하며 현관 상부에 탑과 반원구 돔을 얹음
- 국고보조사업: 2019년부터 2층 세미나실 원형복원을 위한 사전설계 실시. 이후 설계변경 추진하여 2023년 착공



[전경 및 2층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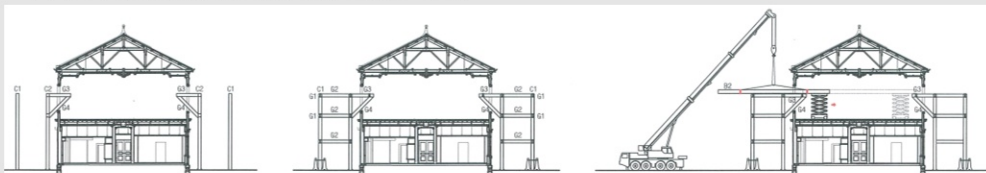
2. 세미나실 원형복원 보수공사의 특징

1) 주요 내용

- (천장) 현재 원형이 잘 남아 있는 물딩은 주요 보존요소로서, 원형을 그대로 남기기로 결정. 최근 문화재 수리에서 신축 당시 물딩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 부분침하가 발생하고 노후화한 천장면만 철거 후 복원
- (벽체) 외벽 내부의 마감재 및 내벽(칸막이벽) 철거로 원형 복원
- (바닥) 원래 마루는 남기고 보강해서 수리
-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수. 기와 제작 및 설치

2) 가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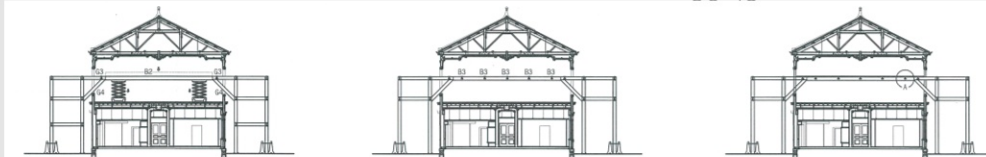
- (배경) 천장 드잡이 공사를 위해 2층 바닥에 자키 설치 필요. 이로 인한 과도한 하중 발생으로 건물 목구조의 안전성 확보 어려움 예상됨
- 건물 구조체의 침하를 방지하고 2층 바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사 하중을 받치는 철골 구조물(내부 수평비계)의 가설 결정
- (내용) 가설공사는 본 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복잡한 가설구조 설계 및 시공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했으나, 문화재 보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문화재 전후면으로 철골기둥 설치, 철골기둥 하단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하여 전복 방지,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건축물 단면을 가로지르는 H형강을 건물 전후면 철골기둥 상부에 조립



(1단계)외부구조물 기둥 세우기

(2단계)설치된 기둥에 보를 연결하여 외부구조물 완성. 전복 방지용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3단계)외부구조물 상부에 강관파이브를 놓고 크레인·고소작업대 이용, 발판 지지용 H형강 이동



(4단계)고소작업대 높이 조정

(5단계)고장력볼트 조립

(6단계)철골구조물 상부에 안전발판 설치

[가설공사(내부 수평비계 설치) 순서]

출처: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자문회의(2023.02.02.)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ccbaCpno=1331102790000 (검색일: 2023.01.31.); 이소건축사사무소(주) 내부자료 및 연구진 촬영 (2023.02.02.)

또한 자문위원 중 구조 분야 전공자 및 실무경험을 갖춘 경우가 소수임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자가 자문위원으로 적극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이 감소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가 인력 양성도 요구된다.¹⁵⁶⁾

• 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전통건축 중심으로 양성되어 왔기 때문에,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수기술자는 실측설계기술자와는 달리 자격요건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자 자격취득 방법을 개선하고, 기존 기술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요구된다.¹⁵⁷⁾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설계, 시공, 감리 경험을 보유한 업체 혹은 해당 경험을 수행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¹⁵⁸⁾

한편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실측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격 제한이 부재하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를 준용하나, 이에 대한 법적 해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측에서는 문화재 수리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활용을 전제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건축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표 4-58] 등록문화재 수리 자격 제한에 대한 문화재수리업자 의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제한	내용
실측설계 A	필요	일반 건축사·기술사는 노후 부재 중 중요 부재를 선별하고, 의도된 과거의 흔적을 구별하는 안목이 부족함
실측설계 B	불필요	등록문화재는 활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의 창의적인 설계도 필요할 수 있음
보수 C	필요	일반 건설업체가 더 많은 기술력과 경험을 가질 수는 있으나, 문화재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는 것이 타당함
보수 D	필요	일반 건설업체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과 보존철학이 부재함

출처: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서면자문 및 자문회의(2023.02.10., 2023.03.31., 2023.04.07., 2023.10.09.)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156)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157)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158)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10.09.)을 통해 확인

- 특허 적용의 배제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재 수리에서 특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문화재 수리 기술의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특허의 경우에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¹⁵⁹⁾

- 적은 이윤에 따른 수리업체 사명감 부족

현재 문화재 수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윤이 적어, 수리업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리업체가 의욕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체계적인 수리체계가 마련되어도 업체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좋은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비 등 용역비 현실화를 통해 독려할 필요가 있다.¹⁶⁰⁾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배제

현재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 유형과는 별개로, 수리에 있어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등록문화재가 「문화재수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로, 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⁶¹⁾

②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 실측설계 단계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설계승인 관련 심사와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2020년에 조직되었다. 하지만 문화재 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재료, 기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보다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수리 표준시방서의 조속한 수립도 요구된다.¹⁶²⁾

15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160)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161)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162)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나아가 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합동위원회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서 반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수리에 대한 논의가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및 수리기술과로 위원회 운영의 주체가 이분되어 있어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술적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을 보유한 기술자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인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¹⁶³⁾

③ 국가등록·지정문화재 공통의 수리체계 쟁점과 개선 방향

□ 실측설계 단계

• 과업 범위의 확장

설계비 변동 없이 과업 범위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설계도면을 근거로 시공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이는 기본이 된다.¹⁶⁴⁾ 하지만 현재는 설계 과업범위에 기록화, 정밀안전진단 등이 포함되며 각 용역비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실시설계 전 기본설계의 과정을 거쳐, 기본설계에서 도출된 지침과 예산을 근거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¹⁶⁵⁾

□ 시공 단계

•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빈번한 발생

정밀안전진단 등 조사 및 설계의 결과와 문화재 현황과의 큰 차이가 있어, 시공 단계에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¹⁶⁶⁾ 따라서 기획 단계를 보다 강화하여 설계변경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¹⁶⁷⁾

163)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 및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서면자문(2023.08.24., 2023.08.26.)을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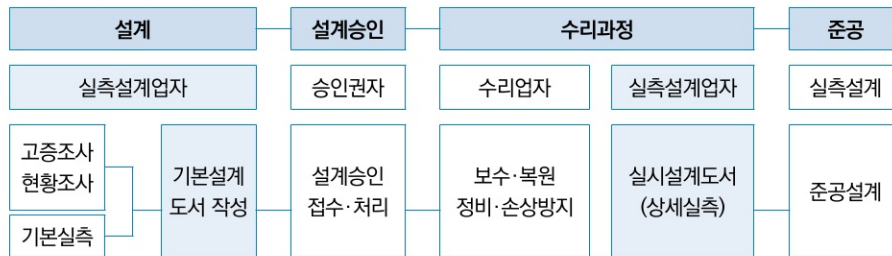
164)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 자문단 자문회의(2023.08.11.)를 통해 확인

16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166)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비해체 정밀안전진단 자료는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밀안전진단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구조적 다양성을 반영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원래 구조와 추가된 구조를 명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해체 후 재진단의 과정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8.26.)을 통해 확인)

또한 실측설계 단계에서 문화재를 부분해체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바닥, 벽체, 천정 등이 마감재로 쌓여 있어 설계 시 구조 파악을 위해 부분해체를 통해 마감재 안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체작업은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고 안전문제 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¹⁶⁸⁾

한편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는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을 위해 책임설계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도 제1차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사·연구, 실측설계 및 기록화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인 「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기본계획(안)」이 보고되었다. 이 중에 실측설계 단계의 개선안으로 제시된 것이 책임설계제도이다. 이는 실측설계업자가 수리 및 준공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수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실측설계와 수리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안으로 확인·작성 가능한 부분을 기본설계도서로 작성해 설계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시공 단계에서 확인한 부분을 실시설계도서로 작성·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본계획(안)은 1단계(202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2024-202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결과를 분석하고, 3단계(2026년)에 제도를 개선하는 4개년 계획으로, 향후 원 실측설계업자가 수리공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는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는 배제된 상황이다.¹⁶⁹⁾



[그림 4-25] 책임설계제도의 개념도

출처: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분과 위원 자문회의(2023.04.27.)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이밖에 시공 단계에서 공사 범위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예상하지 못한

167)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168)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8.26.)을 통해 확인

169)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2023). 202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근현대분과위원회 회의록.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pp.48-50.;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분과 위원 자문회의(2023.04.27.)를 통해 확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수리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공사예산에서 변동 가능한 범위 및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¹⁷⁰⁾

- 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

체계적인 수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공방법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전 과정이 가감 없이 수록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일부의 내용만 수리보고서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자세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¹⁷¹⁾

또한 수리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각 현장에서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¹⁷²⁾ 따라서 해당 문화재의 재수리 및 관련 문화재의 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황도면, 설계도면, 준공도면 등 수리 전후의 도면과 수리보고서가 체계적으로 관리·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필수보존요소 중심의 이력관리도 요구된다.¹⁷³⁾

- 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자를 찾아내고, 과거의 재료를 현대에 생산해내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문화재에 사용된 재료와 공법 및 현재까지 문화재 수리에 적용된 재료와 공법의 전반적인 조사 및 재료의 생산·확보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현대적 재료와 공법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체 재료 및 기술로서 보급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청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관련 재료의 생산업체를 관리할 필요도 요구된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급 방안이 반영된 설계도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¹⁷⁴⁾

170)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171) 수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 대상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172)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2.10.)을 통해 확인

173)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8.26.)을 통해 확인

174)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서면자문(2023.09.27., 2023.10.09., 2023.10.10.)을 통해 확인

[표 4-59]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재료 및 기술 관련 의견

문화재수리기술자 의견	
보수 A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재료의 공급이다. 흔히 벽돌같지만 제작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다. 타일, 철물, 유리, 마감재, 가구도 마찬가지다. 재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만드는 기술도 사라졌으며 몇 개를 대표로 만든다고 해도 완전한 복원이 할 수 없다. 이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 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이면 외국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재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싶다.”
실측설계 B	“건립 당시 사용되었던 재료, 기술이 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의 재료, 기술을 우선 적용해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리 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되지 않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재료와 기술의 한계가 있는 현 문화재 수리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현재까지의 수리 방법, 재료 등 적용 현황을 건축 유형에 따라 분류·정리하고 그 기술적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옛 기술의 적용이 어렵다면 적용 가능한 검증된 현대 기술을 적용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현장에도 도입 가능한지 검증을 진행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료(타일, 철물, 전등, 벽난로 등)는 국내의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성재 또는 대체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 서면자문(2023.10.09., 2023.10.10.)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

2010년에 수립된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는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이 지니는 다양한 구조, 양식, 재료, 규모 등에 대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의 역량에 따라 수리의 품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품셈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문화재 표준품셈」을 따르고 있으나 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이러한 표준품셈에 없는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견적서로 대체하는 상황으로서 시공 품질과 금액 적정성의 파악이 어렵다.¹⁷⁵⁾ 따라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에 적합한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발간이 요구된다.

□ 실측설계·시공 단계

• 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부재

현재 문화재 수리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원칙이 부재하다.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외관 면적의 1/4 이상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내부 변형이 포함되기도 하며,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근대사적에 있어서도 현재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175)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2.10., 2023.10.10.)을 통해 확인

원형이 유지되거나 혹은 원형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¹⁷⁶⁾ 그러므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수리의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¹⁷⁷⁾

따라서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통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건축요소와 변형이 가능한 건축요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지정·등록 시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 내 외부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¹⁷⁸⁾ 문화재 가치 평가 시 건축요소별로 보존의 수준을 등급화하여 제시할 필요도 있다.¹⁷⁹⁾ 필수보존요소는 반드시 보존해야 하고, 이외에는 보존의 수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는 등 분명한 수리의 원칙하에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소유자 판단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원형보존 예시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구 백제병원(창비부산))

• 소유자의 원형유지에 대한 원칙

-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문화재라는 자부심이 있고 건물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형 유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창비부산 수리공사 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함

• 내부 현황

- 1972년 화재로 인해 생긴 부재를 교체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가 자문, 보조금 지급 없이 원형을 유지함
- (벽면) 2층이 오래 방치되어 있어 벽면을 만지면 시멘트가 흘러내릴 정도였음.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페인트를 7차례 정도 칠함. 벽체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였기 때문에 페인트가 고르게 칠해지지 못함. 벽체 원형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시공에 우호적이었음
- (화재 - 중앙홀 기둥) 1972년 화재 이후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내부에 기둥이 설치됨. 창비부산 입주 시 공간 활용 면에서 중앙홀 가운데 2개의 기둥이 거슬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기둥을 가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전공간을 만들
- (화재 - 목재 보) 1972년 화재로 천장의 보가 탔으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건물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 창비부산 입주 시에도 추가 천장 공사를 하지 않음. 기존 상태 그대로 천장을 노출시킴. 구조 성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에어컨)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 천장구조가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이에 따라 건물주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안전하다는 공사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함. 배관을 위해 벽체에 구멍을 뚫기까지 건물주와의 지난한 협의를 거쳐야 했음
- (건물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 벽체 훼손을 막기 위해 불박이가 아닌 이동식 가구를 제작함. 바닥은 목재로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고 삐걱대는 소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소리 흡수를 위해 카펫을 깔음

출처: 창비부산 대표 자문회의(2023.04.27.)를 통해 확인

176) 국가등록문화재여도 보존·복원이 우선시될 수 있으며, 근대사적이라 하더라도 발주처나 건축주의 의도가 우선할 경우 변형이 가해질 수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02.10.)을 통해 확인)

177) 예를 들어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구 동래역사 수리에서는, 목재 트러스구조의 원형이 잘 남아있어 이를 노출하도록 천정을 철거하자는 내용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천정 철거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문화재청 수리기술과가 문화재 수리 점검을 시행하면서 사진자료 상에 보이는 천정 졸대가 현장에서 남아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했다. 수리기술과에서는 근대문화재과의, 근대문화재과는 동래구청의 관리감독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자문회의가 다시 이루어져 천정 졸대를 다시 복원하고 일부만 열어서 목재 트러스구조가 보이도록 하는 절충안이 되어버렸다. 활용을 전제로 하는 등록문화재이지만 어디까지 변형을 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사실상 부재하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2023.08.22.)를 통해 확인)

178) 기록화조사보고서, 등록조사보고서 등에서 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 가치의 서술을 살펴보면, 그 세부내용이 미비하여 설계 시 보존과 활용의 대상·범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하기 어렵다.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서면자문(2023.10.10.)을 통해 확인)

17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서면자문(2023.08.24.)을 통해 확인

2)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주요 과제의 선정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및 구 군산세관 본관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 및 문화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단계별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지정문화재 수리체계를 따르는 근대사적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에 비해 도출된 쟁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리체계 개선의 주된 대상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관리, 가치요소별 평가 등급화, 내진설계 등 현행법 적용에 대한 기준 마련, 근대건축 재료·기술 연구 및 진흥, 업무절차와 내용 숙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과제를 향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앞서 관련 연구의 선행이 요구되는 중장기적 과제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정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을 5장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4-60] 수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안)

개선 방향	관련 쟁점	추진 과제(안)			
		내용	시행 주체	유형	단기 중장기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❶ 불명확한 추진 절차 기준 ❸ 문화재수리기술포럼 심의대상에서 배제	-국가유산수리법, 근현대 문화유산법 등에서 등록문 화유산 수리 규정 마련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 제정	문화재청	제도	● ○
필수보존요소 지정· 관리	② 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필수보존요소 지정·관리 방안 마련	문화재청	연구 제도	○
	⑦ 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 의 인식 부재	-필수보존요소의 구체적 명 시 및 관리방안 점검	문화재청·공무원 설계·시공업체 자문위원	절차	○
가치요소별 평가 등급화	⑦ 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 의 인식 부재	-가치요소별 원형보존(필 수보존요소), 원형복원, 형 태복원 등 보존수준 등급 화 방안	문화재청	연구	○
내진설계 등 현행법 적	② 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별도의 기준 마련	문화재청	연구	○

개선 방향	관련 쟁점	추진 과제(안)			
		내용	시행 주체	유형	단기 중장기
용에 대한 기준 마련	구조보강	-현행법 예외 적용에 대한 성능보완대책 마련		제도	
	③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수리 사례 조사 및 공유 -관계법령과의 관계 설정			
근대건축 재료·기술 연구 및 진흥	①특허 적용의 배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내 기술 관련 부서 설치	문화재청	연구 정책 절차	○
	③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문화재청 인정 특허의 적극 적용 방안 마련			
	②문화재수리기술포럼의 모호한 역할	-수리 표준시방서 수립	문화재청	연구	○
업무절차와 내용 숙지 방안 마련	④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				
	⑩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이해도 저하	-공사유형별 업무절차체계화 -사업 전 세부 업무지침 공시, 공무원 교육 등 실시	문화재청	연구 정책	● ○
	⑪불명확한 추진 절차 기준				

※ 관련 쟁점의 번호 표기는 [표 4-55]의 번호를 따름

※ ○ 번호 표기: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11개 쟁점

※ ● 번호 표기: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6개 쟁점

※ ■ 번호 표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도출한 3개 쟁점

출처: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진 작성

□ 수리체계 단계별 주요 과제의 선정

국가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수리체계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선 방향을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 단계’에서는 조사 및 계획 단계 의무화, 공사유형별 추진절차 구분 적용,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의 전문성(책임) 강화,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의 전문성(책임) 강화, ‘실측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수리기술포럼 역할의 확장과 강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각 개선 방향은 앞서 논의한 여러 쟁점과 복합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수리체계의 단계별 개선 방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선행, 수리체계 단계에서의 절차적 보완, 정책의 실시, 제도의 개선 등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절차적 보완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5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4-61] 수리체계 단계별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안)

단계	개선 방향	관련 쟁점	추진 과제(안)			
			내용	시행 주체	유형	단기 중장기
기획	조사 및 계획 단계 의무화	①보존·활용을 위한 장기 계획의 부재 ④⑤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의 빈번한 발생 ⑤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⑥⑥상세한수리보고서의부재 ②적은 이윤에 따른 수리 업체 사명감 부족	-조사 및 계획 단계 도입 -현황조사, 사업 추진방법, 적정 예산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협업 -부분해체를 통한 조사	관련 전문가 집단	절차	●
	공사유형별 추진절차 구분 적용	⑧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①불명확한 추진 절차 기준 ③수리기술위원회 심의대 상에서 배제	-수리체계 구분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공사유형별 책임 자문위원 및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방안	문화재청	연구	○
				문화재청	연구	○
실측 설계	설계의 전문성(책임) 강화	④⑤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의 빈번한 발생 ①과업 범위의 확장 ②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⑨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책임설계제도 도입 -기본-실시설계 분리 -문화재 경험 많은 구조업체, 설계업체의 협업 -전문가 인력 양성	설계업체 구조업체	절차	●
				문화재청	정책	○
시공	수리 이력관리의 체계화	⑥⑥상세한수리보고서의부재 ③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공사도면의 체계적 DB 구축 -필수보존요소 중심의 수리 이력 관리	문화재청·공무원 시공업체	절차	●
				문화재청·공무원	연구	○
	시공의 전문성(책임) 강화	⑨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전문가 인력 양성 -보수기술자의자격요건 강화	문화재청	정책	○
실측 설계·시공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역할의 확장과 강화	⑧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③수리기술위원회 심의대 상에서 배제 ②수리기술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기술사 등 현장 전문가초빙 -수리기술위원회가 기술적 자문 실시 -문화재위원회, 수리기술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분리 -합동위원회 운영	문화재청 수리기술위원회 전문가	절차	●
				문화재청 각 위원회	제도	○

※ 관련 쟁점의 번호 표기는 [표 4-55]의 번호를 따름

※ ○ 번호 표기: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11개 쟁점

※ ● 번호 표기: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한 6개 쟁점

※ ■ 번호 표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도출한 3개 쟁점

출처: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진 작성

제5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방안
-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①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경과

- 문화재 보호법제의 정비 논의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줄곧 단일법 체제로 이어져 왔다. 2000년대까지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계속 추가되면서, 문화재 보호법제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관련 논의로 2004년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을 통해 「문화재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매장문화재, 문화재보존기금, 해외소재 문화재, 세계유산 등의 개별법을 두는 방향으로 문화재 보호의 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¹⁸⁰⁾ 이러한 개별법 논의에 따라 2010년 「문화재수리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80) 한국법제연구원. (2004).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문화재청, p.146.

- 문화재(문화유산) 기본법의 체계 논의

2015년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문화재기본법」의 구체적인 제정안을 제안했고, 이후 「문화유산기본법」으로 법령명을 바꾸고 그 하위에 부속법, 유형별 보호법, 관계법, 지원법 등의 개별법 체계를 구체화했다.¹⁸¹⁾ 이때의 유형별 보호법에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세계유산 등과 함께 ‘근현대문화유산’을 분리하여 분법하는 방안이 처음 등장했다.



[그림 5-1] 문화유산 법체계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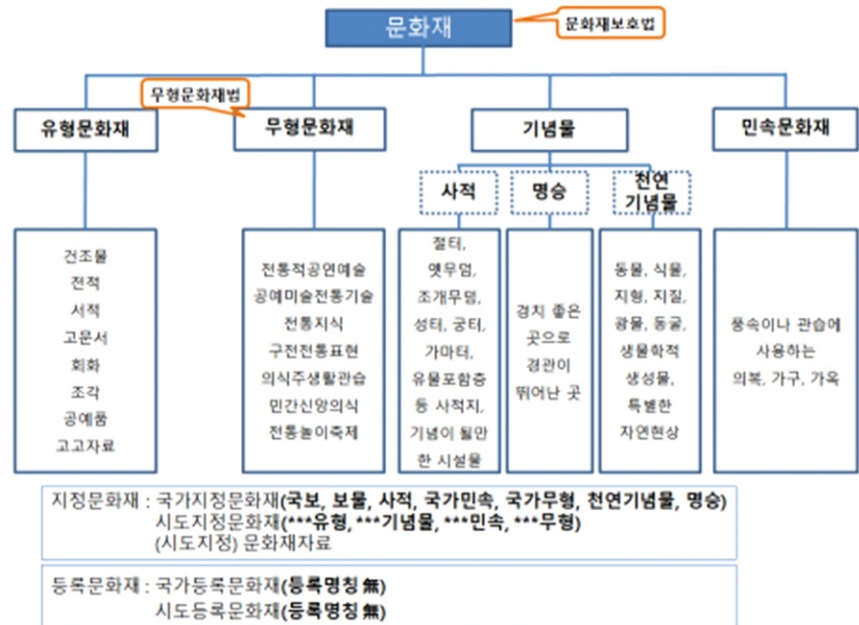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7).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문화재청, p.138의 그림 재인용

- 국가유산 체제 추진

2017년 이후 문화유산 기본법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 4월에 문화재 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금까지의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¹⁸²⁾ 우선 문화재의 명칭을 ‘유산’으로 바꾸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체계를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 세 유형을 포괄하는 명칭으로는 ‘국가유산’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법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81)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5).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연구.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7).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문화재청.

182) 문화재청. (2022).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4월 11일 보도자료.



[그림 5-2] 현행 문화재 체계

출처: 문화재청. (2022).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4월 11일 보도자료의 그림 재인용



[그림 5-3] 개편 예정의 국가유산 체계

출처: 문화재청. (2022).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4월 11일 보도자료의 그림 재인용

- 국가유산 체계의 법령 제·개정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 제정과 기존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2022년 9월 가장 먼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보호법」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¹⁸³⁾ 2023년 3월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을 분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¹⁸⁴⁾ 5월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법 성격을 대체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¹⁸⁵⁾ 8월에는 기본법 조항과 자연유산의 조항을 제외하여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고,¹⁸⁶⁾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했다.¹⁸⁷⁾ 이밖에 문화재 체계의 관련 법령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추어 개정했다.¹⁸⁸⁾

이로써 국가유산 체계의 기본적인 법령 제·개정이 마무리되었고,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에 맞춰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 국가유산 체계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 국가유산 체계의 구성

국가유산 체계는 [그림 5-3]과 같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성되고, 이 연 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문화유산에 해당된다.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며, 문화유산의

183) 2022년 9월 23일 「국가유산기본법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배현진 의원 대표 발의로 입안되었다.

18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51호, 2023.03.21. 제정)

185)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05.16. 제정)

18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0호, 2023.08.08. 일부개정)

18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8호, 2023.08.08. 일부개정)

1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함께 모두 2023년 8월 8일에 개정되었다.

가치 및 보존 수준에 따라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¹⁸⁹⁾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개편을 계획할 때에는 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유산법」으로 분법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동산문화재와 건축문화재 중심으로 운영되던 등록문화재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¹⁹⁰⁾ 국가유산 체계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서 근현대유산을 모두 분리하여 「근현대유산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제정하여 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범위로 한정했다. 향후 문화재청에서 추가 개정을 통해 등록문화유산을 자연유산이나 무형유산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던 등록문화재를 분법하여 「근현대문화유산법」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변화이다.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위상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지정문화유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사적'으로 지정되고 있고,¹⁹¹⁾ 지자체 단위에서는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직까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으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는 없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기준인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있어 시대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¹⁹²⁾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사적으로 지정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근현대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대부분은 근현대의 건축문화유산이 차지하고 있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의 하위에 놓인 근현대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상위의 지정문화유산에서는 낮은 등급의 시도지정문화유산에 대체로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5월 17일 이전까지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관리한다. 또한 후술하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되면, 등록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관리된다.

190) [그림 5-3] 하단의 국가등록유산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까지 확대하여 표기되어 있다.

191)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근대의 시점을 1876년 개항으로 간주하고 있어, 시기로만 한정하면 민속문화유산 중에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민속마을과 고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재료와 구법 등에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포함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속문화유산은 다루지 않았다.

19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되어 있다. 사적에 비해 보물의 가치 수준이 높고, 보물에 비해 국보의 가치 수준이 높다.

②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의 분법 제안

문화재청에서는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의 개별법으로 등록문화재를 분법하고, 50년 이하의 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재로 관리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¹⁹³⁾ 이후 2018년에는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2020년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제안되었다.

-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의 동산과 부동산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던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이 밀집된 지역을 관리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50년 이하의 현대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예비문화재 등을 제도화하는 법률로 제안되었다.

이 법이 문화재청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근현대의 건축을 활용하는 ‘건축자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옥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문화재가 아닌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와 건축자산 제도의 관계,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가 필요했고 관련 연구도 수행되었다.¹⁹⁴⁾

건축자산과 예비문화재의 중복 문제, 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의 특례 중복, 진흥구역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중첩 등에 대해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이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2023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제정되어 2024년 9월부터 시행된다.¹⁹⁵⁾

193)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7).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문화재청.

194)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규철 외. (2022).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9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고, 2023년 9월에 법령명을 수정하여 「근현대문화유산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동안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법안은

[표 5-1] 「근현대문화유산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조 (목적)	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2조 (정의)	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제3조 (기본원칙)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4장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39조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7조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40조 (시·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제41조 (경비부담)
제9조 (등록증의 발급)	제42조 (보고 등)
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43조 (준용 규정)
제11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45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48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49조 (준용 규정)
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18조 (현상변경 허가)	제50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보존)
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5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20조 (행정명령)	제52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정기조사)	제53조 (전문인력 양성)
제22조 (긴급조사)	제54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23조 (가치재평가)	제7장 보칙
제24조 (수리기준의 결정·보급)	제55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5조 (등록의 말소)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제57조 (청문)
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8장 벌칙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
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31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62조 (과태료)
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출처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를 분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이 먼저 개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분법이 되었다. 따라서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등록문화재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근현대문화유산법」과 수리체계

• 「근현대문화유산법」의 대상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했다.¹⁹⁶⁾ 19세기 말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산과 부동산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정의했지만, 법률의 내용에는 등록문화유산과 예비문화유산만이 포함되어 있다. 지정문화유산은 여전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사적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현대문화유산’ 보다는 현행 ‘등록문화재’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 할 수 있다.

•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부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정문화유산의 수리, 실측, 설계, 감리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고,¹⁹⁷⁾ 「국가유산수리법」에서는 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천연기념물)의 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⁹⁸⁾ 지정문화재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사적과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수리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고,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도 특별히 수리체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수리 등을 다른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도 없고, 근현대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재의 수리를 규정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에서 수리 관련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41조(경비부담),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수리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근현대의 건축문화유산 중에서 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수리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제2조(정의)

19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9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1호, 2023.08.08.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관리는 이 법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리체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적 제도로써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최종적으로는 법령의 조항으로 시행되겠지만,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 기술개발과 검증, 문화유산의 체계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여건이 구축되어야 하고 협력과 시행착오의 경험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현장 심층조사를 통해 확인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와 관련된 쟁점은 여러 기반여건이 함께 갖추어지고 개선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우선 중장기적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구축해야 할 기반여건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법체계 재검토

□ 문화유산의 분류체계

2023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될 예정이다.¹⁹⁹⁾

문화유산은 보존의 가치와 수준에 따라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은 국가와 시도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유산의 분야 또는 특성으로 분류하여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건축문화유산은 이 세 가지 유형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유형에서 유형문화유산은 국보와 보물, 기념물은 사적, 민속문화유산은 국가민속유산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문화유산 분류체계는 보존관리의 수준, 유형, 등급 등을 혼용하여 구분하고 있어서, [표 5-2]의 모든 등급에 건축문화유산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현대의 건축문화유산으로 시대를 한정하면, 최상위의 국보와 보물은 제외된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분류체계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관리뿐 아니라 전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의 각종 의사결정을 심의하는

199)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하의 문화유산 분류는 이 법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유산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같은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구성도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 궁능문화재 등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체계가 부족한 모습이다.²⁰⁰⁾ 분류 대상의 양적 균형보다는 동산과 부동산 등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분류의 검토가 필요하다.²⁰¹⁾

[표 5-2] 문화유산의 유형과 등급

보존관리의 수준		유형	등급	
지정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국보)	(보물)
		기념물	사적	
		민속문화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	시도등록문화유산	

※ ()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이 지정·등록되지 않은 등급

출처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근현대문화유산’의 분법 재검토

문화유산의 분류에서 ‘근현대’ 시기가 추가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 중 시대를 근현대로 한정된 법률이지만, 실제 내용은 보존관리의 수준을 등록문화유산인 대상으로 한정된 것이다. 문화유산에서 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데, 법령명에 ‘근현대’로 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더구나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까지 확대하여 「근현대유산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현재보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근현대의 시기구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1876년 개항을 기준으로 했는데, 학술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한 구분이지만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서 이 시기를 경계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현대 시기에 재료나 기술이 크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특정 연대로 문화유산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동산과 부동산,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등 다른 구분보다 우선하여 별도의 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근현대의 시기로 구분한 법률이 근현대의 문화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00)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3317호, 2023.03.07. 일부개정) 제5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201)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몇몇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지만, 국가유산 체계의 개편만 진행되고 있고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6).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문화재청.;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7).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② 국가유산의 통합적인 수리체계 구축

□ 국가유산 유지관리체계 검토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문화재수리법」이 「국가유산수리법」으로 개정되었다. 명칭으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괄하는 전체 국가유산의 수리체계에 대한 법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유산의 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천연기념물 등을 대상으로 보수, 복원, 정비, 손상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된다.²⁰²⁾ 자연유산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기 전에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이 포함된 문화재의 수리법에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가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의 등록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은 제외되어 있다.

자연유산이나 무형유산에 ‘수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각 특성에 맞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적절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수리체계, 자연유산의 보전체계, 무형유산의 전승체계 등 국가유산의 유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통합적인 틀 속에서 제도적 공백 없이 국가유산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구축

문화유산의 수리체계는 현황 조사, 수리 방법 검토, 수리 계획 수립, 수리 인력 및 비용 산정, 수리의 실행, 수리의 검수,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유산수리법」과 관련 규정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등록문화유산이 수리체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의 수리체계가 전통문화유산의 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근현대의 문화유산이 주된 대상인 등록문화유산에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리체계는 제도적 절차로서 기술적 방법론과는 구분해야 한다. 문화유산 수리의 기술적 방법론은 재료, 구법, 규모, 시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재료와 기술 개발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수리가 가능하다. 문화유산의 수리체계는 전통과 근현대의 시대나 지정과 등록의 가치 수준과는 관계없이 제도적 절차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수준, 시대, 재료, 구법 등에 따라 수리의 대상, 보존 수준, 방법론 등이 기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수리체계는 법률적 제도로 정립되어야 하고, 기술적 방법론은 지침,

20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1호, 2023.08.08. 일부개정) 제2조(정의)

가이드라인 등으로 수준을 달리하여 제시될 수 있다.

□ 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범위 검토

2023년 9월에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법적 특례가 이전 등록문화유산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우수건축자산, 한옥,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적용하는 특례를 모두 수용하여,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문화재의 「건축법」 적용 예외에 준하는 수준으로 등록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특례는 등록문화유산의 주요 가치에 대해서는 보존하되, 주요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현재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진행된 몇몇 등록문화재 개선 연구에서 필수보존요소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번 제정 법률에 선택사항으로 반영되었다. 등록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심의에서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하고 이 필수보존요소에 대해서만 보존의 의무와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에서는 필수보존요소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보존의 수준을 원형 보존, 원형 복원, 형태 복원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²⁰³⁾

[표 5-3] 건축요소별 보존의 수준 예시

구분	내용
원형 보존	준공 이후 현재까지 변형 혹은 훼손되지 않은 것
원형 복원	준공 이후 변형 혹은 훼손되었으나 다양한 자료로 충분한 고증을 통해 원형으로 복원 가능한 것
형태 복원	현재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리할 경우, 대상물이 가지는 형태적 진성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

출처: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p.195의 표 재인용

203)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문화재청, pp. 266-271.

③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기술 연구

□ 한국 근현대 건축의 기술사 연구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근현대의 시점을 개항으로 보았지만, 개항 이후 한국 근현대 건축에 대한 기술사(技術史) 연구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시기와 건축유형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근현대를 통시적으로 기술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꾸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근현대 건축의 재료와 기법 중심으로 기술사 연구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시대별, 유형별 시방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건축 관련 교재, 카탈로그 등과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여 기법을 정리하고 사례를 수집하는 연구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수리표준 시방서, 표준품셈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복원을 위한 R&D 연구

현재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은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법령에 기술지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원형의 가치 판단, 성능 개선의 표준 방안, 원형 보존과 성능 개선의 우위 판단, 보존 및 복원의 기술과 검증 등에 대해 기술적 경험과 지식이 매우 빈약하다. 근현대 건축유산의 재료와 구법을 정리하고, 보존의 수준에 따라 수리의 방법론을 정립하는 R&D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건축 요소의 형태, 재료, 기능 등의 보존과 복원, 원형 보존을 고려한 단열, 내진, BF 등의 성능 개선 등에 대한 기술 R&D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R&D 연구와 함께 현장에 수리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양성 제도, 근현대 건축유산 수리의 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방안

4.3절에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표 4-60], [표 4-61]과 같이 도출했다. 이들 개선과제의 대부분은 5.1절에서 확인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법체계 재검토, 국가유산의 통합적인 수리체계 구축,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기술 연구 등 국가유산과 문화유산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한 단기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등록문화유산의 법제화, 그리고 수리체계 절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법제도에서는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중에서 등록문화유산은 법적으로 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리체계의 단계별로는 기획, 실측설계, 시공의 단계에서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현행 문화재 수리에서 실측설계 단계에 포함되어 있던 조사 및 계획을 기획 단계로 구분하여 의무화하는 과제를 비롯하여,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 시공 단계에서는 수리 이력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과제, 실측설계·시공 단계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표 5-4]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개선 방향

구분	개선 방향	추진 과제
법제도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
기획 단계	조사 및 계획 의무화	수리체계의 기획(조사 및 계획) 단계 도입
실측설계 단계	설계의 전문성 강화	계획설계와 구조설계의 협업 제도화 책임설계제도 도입
시공 단계	수리 이력관리의 체계화	공사 도면 및 보고서의 DB 구축
실측설계·시공 단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역할의 강화	수리기술위원회의 설계 승인 대상 확대 수리기술위원회의 기술전문가 구성 확대

출처: 연구진 작성

1)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

지정문화유산의 수리체계는 「국가유산수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문화유산은 「국가유산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에 새로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수리체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수리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수리체계의 제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 법제화는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대안 1)과 새로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체계의 규정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대안 2)이다. 또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대안 3)도 고려할 수 있다.²⁰⁴⁾

세 가지 대안 모두 단기간에 완전한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유산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기술의 수리업,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업종과 업무범위에 대응하는 근현대기술의 업종과 업무범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리기술 연구와 근현대 수리기술에 대한 인력 및 업종의 자격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 법제화는 중장기적으로 근현대의 수리업과 수리인력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의 등록문화유산의 수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했다.

[표 5-5]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 방안

구분	대안 1: 「국가유산수리법」	대안 2: 「근현대문화유산법」	대안 3: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
제정·개정 방법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 포함 개정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 규정 포함 개정	독립된 근현대문화유산의 수리체계 법령 제정
적용대상	국가유산(지정, 등록)	등록	지정(근대사적), 등록
장점	국가유산 수리체계의 통합관리 가능	현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서 실현 가능	근현대의 수리공사 공종과 기술 규정으로 특화
단점	지정(보존중심)과 등록(활용중심)의 수리체계 통합관리의 어려움	근현대의 공종과 기술 규정을 포함하기 어려운 한시적 방안	국가유산 체계에서 지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이원화(전통/근현대)
예상 적용시기	단기/중기	단기	장기
대안 우선순위	최적 대안	단기 임시방안 가능	실현가능성 부족

출처 : 연구진 작성

첫 번째 대안인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은 「국가유산수리법」 법령명에 걸맞게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을 포괄하여 국가유산의 수

204) 선행연구에서도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을 위해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수리법」, 「근현대문화유산법(안)」,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의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선행연구는 이 연구와 달리 수리업, 기기술자, 기능인 등 업종과 관련 자격면허 등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검토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령 제정을 최종 제안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2018).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건축물 문화재 및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pp.133-137.)

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존 중심의 지정문화유산과 활용 중심의 등록문화유산을 하나의 수리체계에서 통합해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전체 국가유산 수리체계의 틀과 절차를 규정하고, 보존 중심의 지정문화유산과 활용 중심의 등록문화유산의 차이는 세부적 지침에서 수리의 방법과 수준을 달리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내부 조직에서 「국가유산수리법」을 담당하는 수리기술과와 등록문화재를 담당하는 근대문화재과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은 단기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이다.

두 번째 대안인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 규정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하여 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령으로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법령명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이지만 근현대의 지정문화유산인 사적은 제외되고 등록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다. 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 담당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수리체계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비교적 용이해서 정책적 판단만 이루어지면 단기간에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다루고 있어, 향후 근현대의 수리업, 기술자, 기능인 등 업종과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수리체계 전반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 근현대 기술과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에 대한 절차 규정을 한 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대안 1의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법개정이 문화재청의 여건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시방안으로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인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은 독립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근현대의 지정문화유산인 근대사적과 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으로, 「국가유산수리법」의 전통기술에 대응되는 근현대기술의 수리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근현대 시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수리법으로 의미가 있지만, 지정문화유산의 수리체계가 「국가유산수리법」과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으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 국가유산 체제에서 문화유산은 지정과 등록의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재편되었는데,²⁰⁵⁾ 수리체계 규정은 전통과 근현대의 시기로 구분하게 된다. 문화유산의 관리체계와 수리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각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수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러한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205) 「문화유산법」과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각각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① 대안 1: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 포함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추어 「문화재수리법」을 「국가유산수리법」으로 개정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유형을 포괄할 뿐 아니라, [그림 5-3]과 같이 지정, 등록, 목록의 등급 또는 보존 수준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국가유산수리법」의 법령명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전체의 수리체계를 포괄하는 규정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가유산수리법」에서는 국가유산의 유형 중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국가유산의 등급 중에서는 지정유산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를 법제화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유산수리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유산에 등록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유산수리법」에 국가유산의 수리체계와 관련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현대의 지정문화유산으로 사적이 「국가유산수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가 이미 부분적으로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방안은 국가유산의 수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수리행정, 기술 및 인력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유산 수리체계에서 지정과 등록의 보존수준, 전통과 근현대의 재료 및 기법 등을 규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문화유산을 규정하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법」과 「국가유산수리법」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조항을 검토하고, 「국가유산수리법」의 각 조항에서 등록문화유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 「근현대문화유산법」과 「국가유산수리법」의 관계 설정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를 「국가유산수리법」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문화유산을 규정하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법」과 국가유산의 수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법」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가 「국가유산수리법」과의 관계 설정에 해당된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5조에서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국가유산수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법」의 규정과 같이 수리·실측·설계·감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의

로 수정해야 한다.²⁰⁶⁾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법」에서도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제2조(정의)에서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규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문이다. 현재는 「문화유산법」의 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법」의 천연기념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현대문화유산법」의 등록문화유산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법 전체의 각 규정에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제한하는 조문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문화유산으로 포함하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4조는 국가등록유산의 수리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포함된 규정으로, 등록문화유산이 「국가유산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는 삭제되어야 한다. 「국가유산수리법」의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수리 기준이 결정되고 보급되게 된다.

[표 5-6] 「국가유산수리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6조 (성실의무)
제2조 (정의)	제6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제7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7조의2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제4조의2 (국가유산수리기술회)	제7조의3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 (시·도유산수리기술회)	제7조의4 (전통재료 인증)
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7조의5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5조의2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3조의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8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4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9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14조의3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20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15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16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제17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제23조 (준용)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25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20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0호, 2023.08.08. 일부개정) 제5조제2항

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 (검사 및 인도)
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국가유산수리	
제3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3조의2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35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3조의3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6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3조의4 (허가 등의 의제)	제37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3조의5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7조의2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3조의6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제37조의3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제37조의4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5 (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4절 감리	
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제40조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3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3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2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제45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8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제46조 (시정명령 등)	제49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4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6장 보칙	
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1조 (수수료)	제55조 (청문계)
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3조 (전문교육)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8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59조 (벌칙)	제62조 (과태료)
제60조 (벌칙)	

출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1호, 2023.08.08.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0호, 2023.08.08.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을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 「국가유산수리법」의 등록문화유산 적용 방안 검토

등록문화유산은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²⁰⁷⁾ 등록문화유산이 「국가유산수리법」에 포함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고, 「국가유산수리법」의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되는 것

207)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366호, 2023.04.18. 일부개정) 제2조제4호)

이다. 「국가유산수리법」은 총 7장 6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별로 등록문화유산이 포함될 경우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²⁰⁸⁾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성실의무, 청탁금지 등의 일반사항과 수리기술위원회(제4조의2, 제4조의3), 실측설계 제한(제5조, 제5조의2), 수리기준 및 기술(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와 제4조의3(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는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규정으로, 등록문화유산 수리의 재료, 방법, 기술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규정이다.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은 국가유산수리의 자격을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규정이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많은 공종이 아직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의 종류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²⁰⁹⁾ 따라서 향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공종이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에 포함될 때까지는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해야 한다. 이 예외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근현대의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는 국가유산수리의 전통기술을 보존, 육성, 보급하기 위해 연구, 사업,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다.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이 포함된다면 전통기술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의 기술에 대해서도 보존, 육성, 보급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제3장 제3절 국가유산수리

제3장 제3절 국가유산수리에는 기술자의 배치 및 책임(제33조, 제34조, 제35조), 설계 승인 및 기술지도(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수리현황 보고 및 공개(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8) 제2장, 제3장제1절, 제3장제2절, 제3장제3절의2, 4장, 5장, 6장, 7장은 등록문화유산의 적용을 위해 검토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외한다.

209)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 2(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별표 6(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별표 8(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에서 한식목공사, 한식석공사, 번와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등 전통건축의 수리공사에 대한 자격만 규정되어 있다.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는 지정문화유산에 적용하는 설계승인 절차로서, 등록문화유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설계검토를 받고 있다.²¹⁰⁾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을 포함하여 수리공사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문화재청의 DB로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수리공사보고서가 부실하거나 DB로 구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규정을 통해 등록문화유산의 수리공사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또한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해 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도 현장과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여 점검하고 관련 수리공사에서 참고할 수 있게 된다.

• 제3장 제4절 감리

등록문화유산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규정에 따라 감리가 시행되었는데, 「국가유산기본법」에 등록문화유산이 포함되면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감리를 받게 되고(제38조), 재시행명령(제39조)이나 시정조치(제40조)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근현대문화유산법」과 「국가유산수리법」의 개정안

[표 5-7] 대안 1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근현대문화유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②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실측·설계·감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출처: 연구진 작성

210) 보조금을 받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설계검토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의 V.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p.45.)

[표 5-8] 대안 1의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1. -----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가. ----- -----천연기념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나. ----- -----임시지정명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시등록문화유산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유산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임시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 -----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유산등-----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회) ① ----- -----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 ----- -----명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4조의3(시·도유산수리기술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국	제4조의3(시·도유산수리기술회) ① ----- ----- -----

현행	개정안
가유산수리기술회(이하 “시·도유산수리기술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1. ----- ----- ----- -----시·도자연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등록문화유산----- -----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 ----- 제3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 ----- -----.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 -----국가유산수리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수리공사,----- ----- ----- ----- ----- ----- ----- -----.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①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의2(전통및근현대 기술의 보존·육성·보급) ①-----전통및근현대 기술----- ----- -----.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1. -----전통및근현대 기법 및 전통및근현대 재료-----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2. -----전통및근현대 기법 및 전통및근현대 재료-----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3. -----전통및근현대 기법-----
4.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4. -----전통및근현대 재료----- -----

현행	개정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 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전통및근현대 기술-----

출처: 연구진 작성

② 대안 2: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 규정 추가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여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국가유산의 수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2010년 「문화재수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대사적은 「문화재수리법」의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등록문화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수준에 따라 수리체계를 달리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화재청의 조직에서 문화재보존국의 수리기술과에서 「문화재수리법」을 관리하고, 문화재활용국의 근대문화재과에서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등은 모두 수리기술과와 함께 문화재보존국에서 문화재의 보존을 강조하는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근대문화재과는 문화재활용국에서 문화재의 활용을 강조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이 「국가유산수리법」에 단기간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등록문화유산의 수리 관련 규정을 「근현대문화유산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023년 9월에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는 수리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제정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근현대문화유산법」의 등록문화유산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규정에 따라 수리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근현대기술의 수리 업종과 업무범위 등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이 포함되기 전까지의 임시 방안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규정이 선별되어 「근현대문화유산법」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²¹¹⁾

211)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수리법」에 대응하는 항구적인 방안은 후술하는 대안 3의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이다.

□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수리체계 규정 검토

「근현대문화유산법」에 포함될 수리체계 규정은 「국가유산수리법」의 구성에서 필요한 규정을 선별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수리업,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등과 관련된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수리체계에 포함하기 어렵다. 근현대의 수리공사 공종이 「국가유산수리법」의 수리업,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종류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수리업,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제4조의2, 제4조의3), 수리기준 및 기술 보급(제7조, 제7조의2), 수리 보고서(제36조) 등이다. 이들 규정을 통해 등록문화유산의 수리기준과 수리기술을 연구·사업·교육하여 보급하고, 수리기술 전문가위원회의 기술지도를 제도화하고 수리기록을 DB로 구축할 수 있다.

□ 「근현대문화유산법」의 개정안

[표 5-9] 대안 2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 (생략)	제2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기준및수리기술의 보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하여 재료와 기법의 개발, 시범 적용, 교육 및 전승, 기타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제24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기술위원회를 둔다. 1. 제24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기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등록문화유산 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수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③ 대안 3: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 제정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 규정을 포함하는 대안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근현대의 문화유산에 대한 수리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안 2에서는 등록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대안에서는 지정문화재인 근대사적까지 포함하여 근현대 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규정을 갖추는 것이다. 「국가유산수리법」이 전통기술에 대한 수리법으로 제정된 것을 보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은 근현대의 기술에 대한 수리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문화유산법」과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지정과 등록의 등급에 대한 구분으로 분법이 되었는데, 이들의 수리에 대한 법령을 전통과 근현대의 시대로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은 꽤 무리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근현대 기술의 업종과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면서 별도의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겠지만,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현시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안이다.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을 제정한다면 「국가유산수리법」의 구성에서 전통기술에 해당되는 규정을 근현대 기술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장 총칙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수리기술위원회,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기준 보급 등을 규정하고, 제2장 근현대문화유산 수리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에 근현대기술의 수리업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가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리업 및 기술인력과 관계 설정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²¹²⁾

[표 5-10] 대안 3의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 구성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7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2조 (정의)	제8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제한의 예외)
제3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의 기본원칙)	제9조 (성실의무)
제4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의 계획 수립)	제10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5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기술위원회)	제11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6조 (시·도근현대문화유산 수리기술위원회)	제12조 (근현대기술의 보존·육성·보급)
제2장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제13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기술자의 배치)	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현장의 공개)
제14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의 설계승인)	제22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정보의 공개)
제15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현황의 보고)	제23조 (감리의 시행 등)
제16조 (허가 등의 의제)	제24조 (근현대문화유산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17조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25조 (근현대문화유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8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의 기술지도)	제26조 (감리의 제한)
제19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27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28조 (시정명령 등)
제3장 보칙	
제29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3조 (청문계)
제30조 (수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전문교육)	
제4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8조 (과태료)
제37조 (양벌규정)	

출처 : 연구진 작성

212) 건설업의 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절차 개선

① (기획 단계) 수리공사의 조사 및 계획 단계 의무화

근현대 건축물의 수리는 개별 사례마다 다양한 현황 조건을 갖고 있다. 현황 도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측을 통해 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성능을 파악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수리의 범위, 공사의 방법, 공사 기간과 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대사적과 국가등록문화재의 수리에서 건축물의 연혁과 주요한 가치요소를 확인하고, 구조적 성능과 설비시설의 노후도 등 현황을 조사하는 작업을 실측설계 단계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현황조사 단계와 설계 단계가 하나의 용역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구조와 설비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해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견되어 수시로 설계 변경의 사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공사의 조사 및 계획 단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공공건축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²¹³⁾ 수리공사의 범위, 방법, 기간, 비용 등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와 계획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도 제6조(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 제7조(실측전조사), 제8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제9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와 검토는 설계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전체 수리공사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현황조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 현황조사에는 필요하다면 부분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조와 설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황조사와 함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프로그램에 따라 수리의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조사와 활용계획을 근거로 수리공사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조 보강, 설비 성능 개선, 공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등을 포함한 수리공사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리공사의 기획을 통해 이후 설계와 시공의 과업내용서가 작성될 수 있고, 전반적인 수리공사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의 절차

2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9046호, 2022.11.15. 일부개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에서 수리공사의 기획을 확인할 수도 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서는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데,²¹⁴⁾ 수리공사의 기획이 이러한 현상변경의 계획에 해당된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기획단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에서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리공사의 기획이 충실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설계와 시공 단계의 시행착오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수리공사의 기획 단계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6조-제9조의 내용을 “제2장 문화재 수리공사 기획”으로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설계 단계) 설계의 전문성 강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공사는 대부분 노후화된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공사로서,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기본적인 구조 성능 조사가 수행되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도 구조설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설계에서 구조설계는 계획설계가 끝난 후에 시공 가능한 기술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공사에서 구조설계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최우선의 작업이고,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사용 기능의 범위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구조설계는 계획설계 못지않게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구조설계와 계획설계의 협업도 중요하다. 따라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구조설계에 충분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리공사에는 구조설계와 계획설계를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제3장 실측설계”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수리공사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설계 단계는 설계승인을 받고 최종 납품을 하게 되는데, 설계승인에 대한 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근대사적은 「국가유산수리법」에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²¹⁵⁾ 수리기술과의 판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국고보조를 받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

21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11.21. 일부개정) [별지 제19호서식]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15) 「국가유산수리법」(법률 제19591호, 2023.08.08. 일부개정)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²¹⁶⁾ 근대문화재과에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를 심의하는 것처럼, 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서 설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설계의 승인 이후에는 시공업체가 시공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공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사안은 감리를 통해 품질 관리가 되겠지만, 설계 변경에 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기술지도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설계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용과 함께 설계수정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원설계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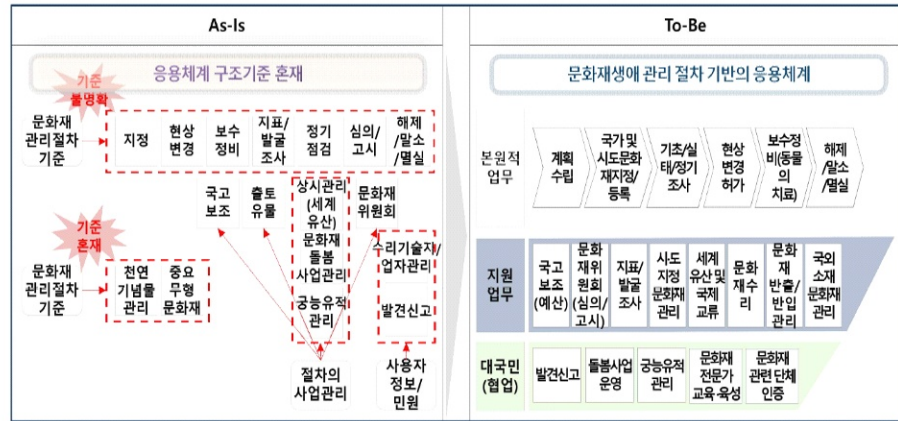
③ (시공 단계) 수리이력 관리의 체계화

근현대의 수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와 개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리공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수리이력 DB의 구축도 필요하다. 수리공사가 종료되면 공사보고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수리공사마다 보고서의 내용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크다. 수리보고서에 충분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고, 수리보고서 작성 지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문화재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실명제 정보 등과 함께 수리보고서와 설계도면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수리실명제 정보에서는 설계승인,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의 각 주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수리공사의 주기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 조사, 활용계획, 수리계획 등의 보고서, 설계 단계에서 설계승인 도서, 시공 단계에서 공사기록보고서 등이 함께 관리되고 공유되는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관리 업무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물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개별 문화재를 관리하는 다양한 주체가 생산하는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문화재 기록 관리의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²¹⁷⁾ 문화재청의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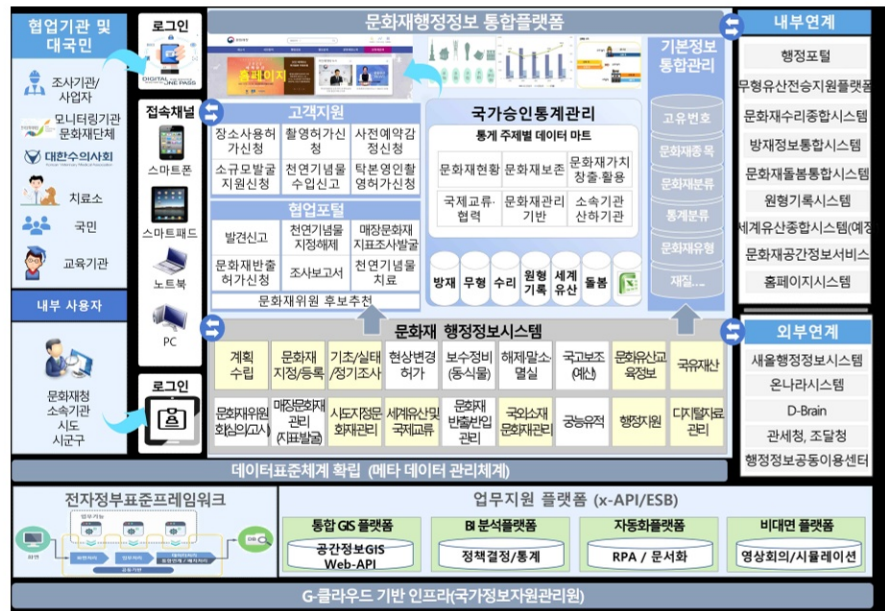
216)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의 “V.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지침” 제3호(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p.45.)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수리이력 정보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림 5-4] 문화재관리 시스템 개편

출처: 문화재청. (2022).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PMO 용역 제안요청서. 문화재청, p.11의 그림 재인용



[그림 5-5] 문화재 행정 목표시스템

출처: 문화재청. (2022).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PMO 용역 제안요청서. 문화재청, p.9의 그림 재인용

217) (재)한해리티지센터. 2019.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문화재기록물의 관리·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pp.284-290.

④ (설계·시공 단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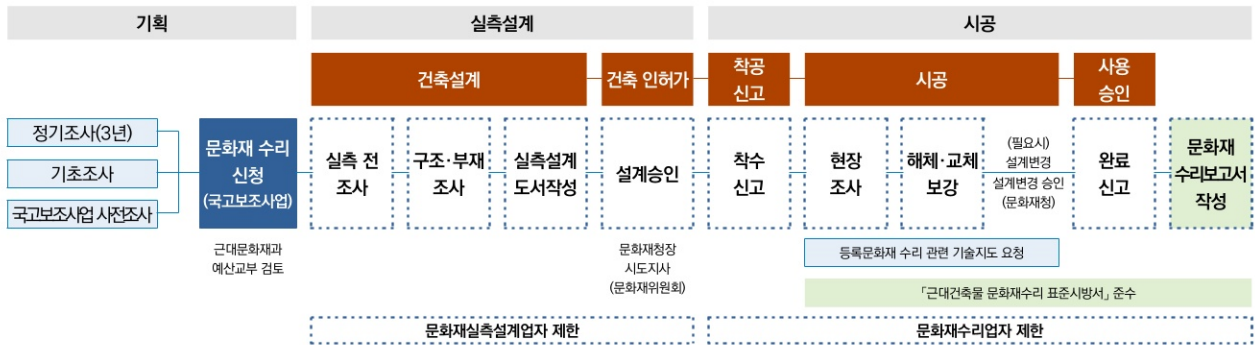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기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의 수리기술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합리적으로 검증하며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수리법」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근현대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⁸⁾ 현재 이들의 인적 구성은 근현대 수리기술 전문가의 수가 매우 적고 분야도 한정적이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수리기술 전문가를 대폭 보강하여 기술적 검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허가의 심의를 담당하듯이,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설계승인의 심의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기술지도를 통해 설계변경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유산수리법」 제4조의2의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해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및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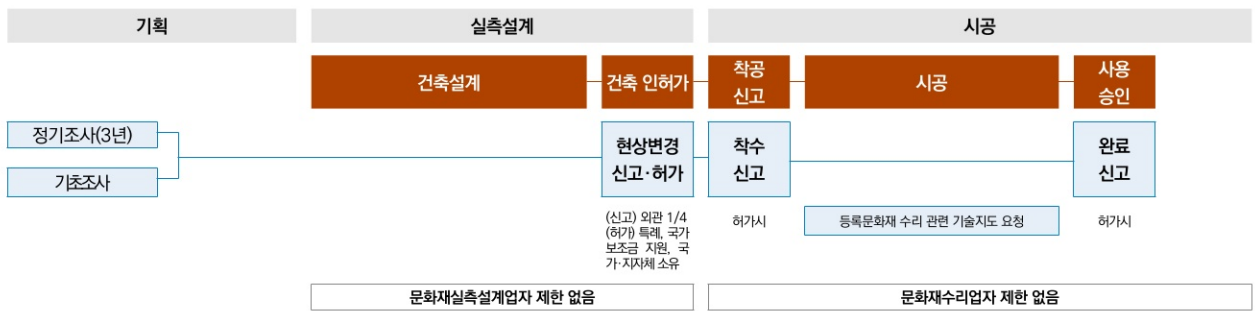
근대사적이나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장에서 수시로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설계승인과 설계변경, 기술지도의 형식을 통해 단순 자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18) 「문화재수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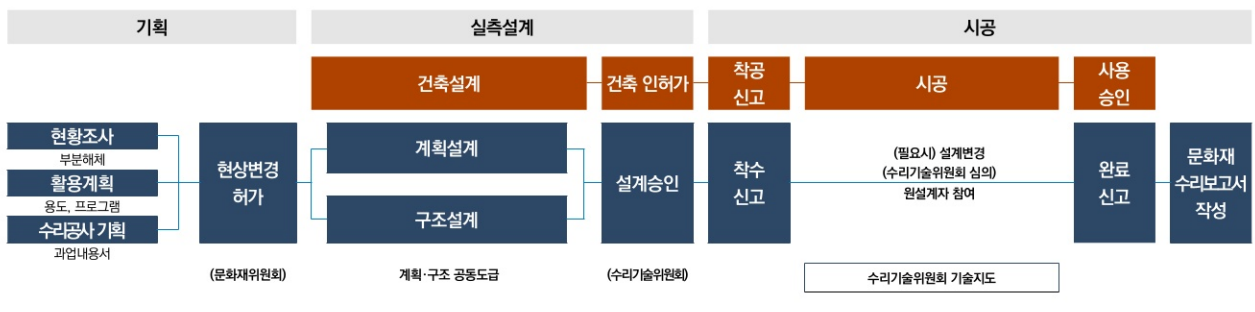


②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이외) 현황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업무지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준용 국고보조사업 지침, 수리 표준시방서

③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선안



[그림 5-6] 단계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안

출처: 연구진 작성

제6장 결론

- 1. 연구의 성과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 연구의 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정체성 형성과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수리 과정에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 및 적극적 활용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관리와 수리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지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수리체계는 미흡한 것이다.

기존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환되는 현재 상황에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적합한 수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수리체계의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리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 파악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구체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기술개발, 성능기준 등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방향 연구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는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한정하며, 보수, 복원, 정비, 손상 방지 등 문화재 수리 행위의 전체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서 ‘수리체계’를 정의했다. 그리고 수리체계의 각 단계별로 참여 주체, 수행 업무, 수행 방법, 근거 기준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미비나

적용의 배제로 발생하는 쟁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가치’는 해당 건축물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구조, 재료, 의장 등 건축요소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우선 지정문화재와의 비교를 통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수리체계를 기획, 실측설계, 기획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법」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 등 수립에 의해 그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건축법」 적용 예외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법」에 의한 독자적인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하에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국가등록문화재는 활용을 전제로 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보존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수리체계의 미비점이 확인된다. 기획 단계에서는 보존가치의 확인 및 점검의 절차가 미비하며,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으로 물리적 변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존가치가 건축물 내부에 위치하거나 현상변경의 범위가 외관 면적의 1/4 미만인 경우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측설계·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국고보조사업 이외 수리의 관리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근대사적과 국가등록문화재 등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대해 특화된 수리기술 연구가 미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와 비교하여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와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영국의 등재건축물 수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제도는 등록서류에 기재된 가치요소가 변경되는 것을 현상변경의 기준에 포함하며, 영국의 등재건축물 제도는 등재 시 인정받은 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는지의 여부로 현상변경의 승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등록·등재 단계에서부터 보존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보존관리, 환경보전, 방재방법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이 가지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해당 건축문화유산이 건축물로서 활용되며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리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와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을 심층조사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수리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보존·활용을 위한 장기계획의 부재, 실측설계 단계에서는 내진설계에 따른 과도한 구조보강, 현행법 적용에 따른

원형 훼손,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빈번한 발생, 한정된 공사비에 따른 성능 포기, 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라는 쟁점을 도출했다. 또한 실측설계·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보존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부재, 자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역량 부족과 자격요건 부재, 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이해도 저하, 특히 적용의 배제라는 총 11개의 쟁점을 확인했다. 또한 구 군산세관 본관의 수리에서는 실측설계 단계에서 과업 범위 확장, 수리기술위원회의 모호한 역할, 시공 단계에서는 기능자 및 재료 수급의 어려움, 표준시방서 적용의 어려움을 주요 쟁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공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설계변경의 발생, 상세한 수리보고서의 부재라는 쟁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두 사례의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문화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근현대 건축 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단계별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 도입되는 국가유산 체제하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국가유산수리법」에 등록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대안 1), 새로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수리체계의 규정을 포함하는 법개정 방안(대안 2), 근현대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대안 3)을 검토하여 제정 및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으로서 「국가유산수리법」의 개정을 채택했다. 또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절차적 개선 방안으로는 기획 단계에서 수리공사의 조사 및 계획 단계 의무화, 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전문성 강화, 시공 단계에서 수리이력 관리의 체계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원인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현행 수리체계의 쟁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수리체계의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의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폭넓게 조사·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범위를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한정하여 시·도지정·등록문화재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 및 심층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과 문제점을 상세히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내진보강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두 건의 사례로 심층조사의 대상을 정함에 따라,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근대한옥 등 규모가 작은 수리에서의 쟁점을 두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쟁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 기술개발과 검증, 문화유산의 체계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여건이 구축되어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제안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향후에는 이 연구의 4장에서 제안한 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건축물이 아닌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같은 면적(面的) 보존과 수리 방안, 건축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보존·활용의 다양한 유형 제안 등 심화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 (사)도코모모코리아. (2006) 등록문화재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도코모모코리아. (2013) 등록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 보고서.
-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21) 국가등록문화재(교육시설 분야) 보존·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5)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활용·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6) 근대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6).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문화재청.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7).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 (재)한해리티지센터. (2019).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문화재기록물의 관리·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gosims.go.kr> (검색일: 2023.09.15.)
- 건축문화자산센터. (2023). 건축자산 보존·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건축문화자산센터 내부자료.
-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2021). 구 군산세관 본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군산시.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콘텐츠 기획소재 연구용역.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 국립문화재연구원. (2023). 2022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유산 정기조사(국보·보물) 1 서울 인천 경기. 국립문화재연구원.
- 군산시. (2019).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 군산시. (202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외부보수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 김재길. (2020).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제도 2020년 문화재보수 설계도서 검토 실무 과정(1기) 교육자료.
- 도시건축사사무소. (2016).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군산시.
- 문화재위원회. (2014).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2017).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2019).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자료.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ccbaCpno=1331102790000 (검색일: 2023.01.3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20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청. (2008). 근대문화유산을 지키는 당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0).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 (2010). 근대건축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수리사례집 발간. 12월 23일 보도자료.

문화재청. (2010).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 (2018).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9). 2019년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분야).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0).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 분야) 정기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1). 2021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 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1).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 (2021.07.31.).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근대 사적 지정 현황 (2021.07.31.).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5369&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a%b7%bc%eb%8c%80+%ec%82%ac%ec%a0%81&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6.21.)

문화재청. (2022). 2022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 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2).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2022.06.30.).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3829&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b%93%b1%eb%a1%9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2.03.)

문화재청. (2022).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4월 11일 보도자료.

문화재청. (202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2).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PMO 용역 제안요청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2023.06.30.). 문화재청 행정자료.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6256&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b%93%b1%eb%a1%9d%eb%ac%b8%ed%99%94%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3_09_01 (검색일: 2023.07.06.)

문화재청. (2023). 국가등록문화재(건조물)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업내용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3).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실명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vnmnctrdlist01.jsp&mn=NS_03_05_01 (검색일: 2023.07.12.)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실명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vnmnctrdlist01.jsp&mn=NS_03_05_01 (검색일: 2023.06.21.)

문화재청. 문화재청 소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introduce/organization_info.jsp&mn=NS_05_05_01 (검색일: 2023.03.03.)

문화재청.(2022).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선포식 개최. 12월 20일 보도자료.

문화재청.(2022).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심화 연구. 문화재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3.02.13.)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2020). 서울시립대학교 자작마루 미래유산 내진보강 수리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2021). 서울시립대학교 경농관 및 박물관 내진보강 수리 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일반) 세부사업 지침. <https://opengov.seoul.go.kr> (검색일: 2023.09.18.)

서울특별시. (2023).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추진 지침 알림,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7827685> (검색일: 2023.06.19.)

신용주, 이상선 (2014). 근대건축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6(1), p.119.

심경미, 차주영, 임유경, 허윤아.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 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이규철, 이민경. (2017).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 진태승, 권영란. (2022).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규철, 손은신, 박일향, 김수빈.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리기술 법령·지침·기준. <https://www.kofta.org/technique/laws.jsp> (검색일: 2023.02.06.)

주식회사 솔종합건설. (2022).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군산시.

(주)한국건축안전센터. (2022). 2022년 국가등록문화재(시설물분야) 및 근대사적 정기조사 권 5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서(제328호~제369호). 문화재청.

(주)화정엔지니어링. (2020). 구 군산세관 본관 종합정비계획, 군산시.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2018).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건축물 문화재 및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5).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연구.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7).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문화재청.

한국법제연구원. (2004).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문화재청.

building. <https://www.building.co.uk/focus/york-art-gallery-show-time/5076607.article> (검색일: 2023.04.25.)

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https://www.archaeologyuk.org> (검색일: 2023.04.14.)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6). Planning and access for disabled people: a good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GOV.UK. Guidance: Historic Environment. <https://www.gov.uk/guidance/conserving-and-enhancing-the-historic-environment> (검색일: 2023.04.12.)

HISTORIC BUILDING & PLACES. <https://hbap.org.uk> (검색일: 2023.04.14.)

Historic England. (2011). Stopping the Rot: A Guide to Enforcement Action to Save Historic Buildings – Summary. Historic England.

Historic England. (2016). Making Changes to Heritage Assets: Historic England Advice Note 2. Historic England.

Historic England. (2021). Listed Building Consent: Historic England Advice Note 16. Historic England.

Historic England. “Equality of Access Works to Listed Buildings and Other Heritage Asset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compliantworks/equalityofaccess> (검색일: 2023.04.27.)

Historic England. “Listed Buildings – What can I do with my listed building?”, <https://historicengland.org.uk/listing/what-is-designation/listed-buildings> (검색일: 2023.4.14.)

Historic England. Building Regulations, Approved Documents and Historic Building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regulations> (검색일: 2023.04.24.)

Historic England. Current Guidance and Advice.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find/a-z-publications> (검색일: 2023.05.01.)

Historic England.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har/urgentworks> (검색일: 2023.4.16.)

Historic England.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s/principles-of-repair-for-historic-buildings> (검색일: 2023.05.04.)

Historic England. Legal Requirements for Listed Building and Other Consents: Language difference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decisionmaking/legalrequirements> (검색일: 2023.04.18.)

Joint Committee of the National Amenity Societies. <https://www.jcnas.org.uk> (검색일: 2023.04.15.)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0/9/contents> (검색일: 2023.04.14.)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section/4> (검색일: 2023.04.27.)

legislation.gov.uk. 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0/9/contents> (검색일: 2023.04.10.)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5). Arrangements for

Handling Heritage Applications – Notification to Historic England and National Amenity Societies and the Secretary of State (England) Direction 2015.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0). Manual to the Building Regulations: A code of practice for use in England.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MUSEUMS+HERITAGE ADVISOR. <https://advisor.museumsandheritage.com/features/york-art-gallery-reopens-following-8m-redevelopment> (검색일: 2023.04.25.)

RIBA. (2019). Design Matters: Conservation, Modernisation & Adaptation of Existing Buildings. RIBA, p.7; Historic England. Principles of Repair for Historic Buildings. <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technical-advice/buildings/principles-of-repair-for-historic-buildings> (검색일: 2023.04.25.)

S·P·A·B. <https://www.spab.org.uk> (검색일: 2023.04.14.)

THE GEORGIAN GROUP. <https://georgiangroup.org.uk> (검색일: 2023.04.14.)

THE VICTORIAN SOCIETY. <https://www.victoriansociety.org.uk> (검색일: 2023.04.14.)

Twentieth Century Society. <https://c20society.org.uk> (검색일: 2023.04.14.)

UK Parliament. (2022). Reviewing the National Heritage Act 1983.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reviewing-the-national-heritage-act-1983> (검색일: 2023.04.10.)

York Art Gallery. Redevelopment 2015. <https://www.yorkartgallery.org.uk/redevelopment-2015> (검색일: 2023.04.25.)

York Museum Trust. <https://www.yorkmuseumtrust.org.uk/news-media/latest-news/york-art-gallery-redevelopment-progress-in-pictures> (검색일: 2023.04.25.)

京都市. (2019). 歴史的な価値を有する建築物を安全に保存し、活用することで、次世代へ継承する制度 ―京都市歴史的建築物の保存及び活用に関する条例, 京都市都市計画局建築指導部建築指導課. 京都市.

京都市. (2021). 保存建築物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指針(非木造建築物版). 京都市.

国土交通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別冊事例集).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普及版).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2018). 歴史的建築物活用に向けた条例整備ガイドライン(本文). 国土交通省.

文化遺産オンライン. <https://bunka.nii.ac.jp/heritages/detail/285410> (검색일: 2023.07.10.)

文化遺産オンライン. <https://bunka.nii.ac.jp/heritages/search> (검색일: 2023.05.10.)

文化庁. (2021). NPO 等による文化財建造物管理活用の手引き(手引書). 文化庁.

文化庁. (2021). 建物を地域と文化に―登録有形文化財登録建造物制度の御案内. 文化庁.

文化庁. (2021).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の手引 1. 文化庁.

文化庁. (2021). 登録有形文化財 (建造物) の手引 2. 文化庁.

文化庁. (2022). 登録有形文化財 (建造物) の手引 3. 文化庁.

文化庁.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yukei_kenzobutsu/massho/index.html (검색일: 2023.06.21.)

政策研究大学院大学・建築研究所. (2022). 歴史的建築物の活用と防火対策(資料). 政策研究大学院大学・建築研究所.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366호, 2023.04.18. 일부개정)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9046호, 2022.11.15. 일부개정)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05.16. 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1호, 2023.08.08.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문화재청훈령 제516호, 2019.12.17.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정)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8호, 2023.08.08.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4호, 2023.09.14. 일부개정)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문화재청예규 제600호, 2022. 4. 20., 일부개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고시 제2010-130호, 2010.12.22. 제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훈령 제530호, 2020.01.22. 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11.21.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8호, 2023.09.08. 타법개정)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2021.07.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18호, 2023.03.0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0호, 2020.06.09.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9호, 2010.02.04.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제260호, 2023.01.0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 제2023-76호, 2023.06.21. 일부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51호, 2023.03.21. 제정)

Measures of Improving the Repair System for Value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SUMMARY

Park, Ilhyang
Lee, Geauchul
Bang, Boram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having high utilization value has been increasingly remodeled and utilized as a means of shaping and promoting local identity. However, the value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amaged during the repair process that is necessary for their utilization. While the conservation and active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as cultural heritage are essential aspects that must be addressed in both management and repair, an effective repair system has yet to be established.

Given the transi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system into a national heritage system, this study acknowledges the lack of a proper repair system for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and seeks to propose solution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an assessment of its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rious issues that arise during repair, identify their causes, and devise effective measures. While the increase in demand for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has led to a growing need for specific guidelines,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related material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erformance standards. As such, policy studies that set the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 should be conducted before embarking on related development research.

Through a comparison with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repair system for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From studying the repair system in terms of planning, on-site survey, and construction phases, it was revealed that the basis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tems from the Act on Repair of Cultural Heritage and related regul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and repair work is carried out under a distinct repair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Repair of Cultural Heritage, with exceptions applied from the Building Act. Meanwhile, the repair system for stat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reflects the unique nature of th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for which utilization is a premise. This means that heritage value may be affected by the repair process itself. The planning phase lacks procedures for the confirmation and inspection of conservation value, while the on-site survey phase not only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physical alterat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Act and other relevant laws, but also lacks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event damage when the conservation value is located outside the building or when the scope of alteration is less than $\frac{1}{4}$ of the exterior area. Furthermore, with the exception of national subsidy programs, measures for repair management are lacking throughout the on-site survey and construction phases. Also noted was the lack of specialized repair technology research for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al and stat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By comparing Korea's repair system for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to Japan's system for registered tangible cultural heritage (structures) and historic buildings (conserved buildings) and the UK repair system for registered buildings, this study derived three main implications. First, in Japan, the system for registered tangible cultural heritage (structures) includes changes in value elements specified in the registration documents as criteria for alterations. In the UK, the registered building system follows an approval process for alterations based on whether or not the value of the recognized building has been compromised, thereby verifying and managing the preservation value from the registration stage. Second, in Japan, specific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s cover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must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projects, and this lays the foundation for continuou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value held by buildings. Third, various repair guidelines are available for architectural heritage to be utilized and maintained as buildings.

To identify specific issues arising at repair sit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pair personnel of the former Gunsan branch of Korean Food Corporation and the main building of Gunsan Customs. The former Gunsan Branch of Korean Food Corporation underwent repairs in two stages from 2015 to 2020, and falls under one of the early cases of seismic reinforcement for cultural heritage. The main building of Gunsan Customs was repaired from 2021 to 2022, and holds significance as the first heritage reviewed by the Cultural Heritage Repair Technology Committee.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repair of the former Gunsan branch of Korean Food Corporation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ere the lack of long-term planning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during the planning phase, excessive structural reinforcement and damage to the original structure as a result of observing existing laws during the on-site survey phase, and frequent design changes and additional construction, compromise in performance due to budget constraints, and lack of detailed repair reports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Eleven key issues were identified throughout the on-site survey and construction phases, including a lack of common understanding regarding the scope of conservation, difficulties in running advisory meetings and making decisions, shortage of qualified experts and lack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poor job understanding due to work shifts, and exclusion from patent applications. In the case of the repair of the Gunsan Customs main building, the primary issues in the on-site survey phase were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work and ambiguous role of the Repair Technology Committee in the on-site survey phase. In the construction phase, there were difficulties in procuring skilled workers and materials, as well as challenges in applying standard guidelines. Common issues for both the former Gunsan branch of Korean Food Corporation and Gunsan Customs were the occurrence of design changes and the absence of detailed repair reports.

Based on the discussions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repair personnel in both cases, and after consulting with members of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Subcommitte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cultural heritage repair engineers, this study identified major issues for each stage of the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repair system, and selected key tasks to der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repair system,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opose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repair system of stat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designating and managing essential conservation elements, evaluating and grading value elements, establishing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seismic design and existing laws, conducting

research on modern architectural materials and technology, and devising measure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work procedures. These are considered long-term challenges that require research to be conducted before policy implementation and system improvement. The major tasks identified at each phase of the repair system were mandating investigation/planning and applying different procedures for each construction type in the planning phase, enhancing design professionalism (responsibility) in the on-site survey phase, enhancing construction professionalism (responsibility) in the construction phase,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Repair Technology Committee in the on-site survey and construction phases. The task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reliminary research, procedural improvements during the repair process, policy implementation, and system improvement, and the major tasks were those that can be implemented through short-term procedural improvements.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repair system for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under the national heritage system,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next year. First, for legalization of the repair system for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were suggested: 1) Amendment of the Act on Repair of National Heritage to includ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2) Amendment of the newly enacted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to include regulations for the repair system, and 3) Enactment of the Act on Repair of Modern Cultural Heritage for modern cultural heritag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pproach were compared,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on Repair of National Heritage was adopted as the optimal solution. In addition, the proposed procedural improvements for the repair system were mandating investigation/planning in the planning phase, enhancing design professionalism in the on-site survey phase, systematizing the management of repair history in the construction phase, and reinforcing the role of the Cultural Heritage Repair Technology Committee in the on-site survey and construction phases.

Keywords :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Modern Historic Sit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the Repair System